

2011년도 정기세미나

#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방안

- ① 현행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위치 분석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 ②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 ③ 종합토론 및 총평

PAC

# 현행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 위치 분석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김정탁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신문방송학전공 교수

## I. 들어가는 말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 3. 31. 출범하였으니, 올해로 서른 살을 맞이한 셈이다. 1980. 12. 31. 제정된 언론기본법이 모태가 됐던 언론중재위원회는, 1987년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언론기본법이 출생 동기의 불순함을 지적받아 폐지되면서 존폐(存廢)의 기로에 서기도 했다.<sup>1)</sup> 다행히 그동안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1987. 11. 28. 제정된 정간물법으로 설치근거를 옮기고 계속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5. 1. 27.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함)로 등지를 틀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정간물법, 방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에 산재해있던 언론피해구제 관련 규정들을 총망라해 언론중재법이라는 단일법

을 제정한 것은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굳게 뿌리내렸다.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언론계에 정확하고 균형 있는 보도 지향에도 많은 자극을 주었다. 나아가 분쟁당사자들이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면서 사회통합 기능도 훌륭하게 수행해 조정과 중재의 가치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덕분에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율(被害救濟率)<sup>2)</sup>은 해마다 상승하여 2010년도에는 79.2%를 기록했다.<sup>3)</sup> 역대 최고 기록이다. 또 언론중재위원회를 경험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언론중재위원회 및 조정·중재 제도

1) 양심승 (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005년 봄호, 4쪽

2)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사건에서 각각,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그리고 취하되었으나 피해구제가 된 경우를 합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피해구제율은 모두 조정사건에 관한 것으로 중재사건에 관한 피해구제율은 〈각주 14〉에서 별도로 정리한다.

3) 2008년을 기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율은 70%를 넘어서게 된다. 연도별 피해구제율 현황을 보면 2007년에는 64.6%, 2008년에는 72.9%, 2009년에는 73.9%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 2009 연간보고서』, 25쪽)

8 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청인들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도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데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피해구제율이나 이용만족도(利用滿足度) 등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부응하도록 잘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그동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조정·중재 실무에 참여하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사회적 소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목도하였기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순기능에 대해 역설해왔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호적(友好的) 통계수치들을 그대로 맹신할 수 없다는 사실도 다년간의 조정 및 중재 실무를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 즉, 통계상 드러나는 수치와 언론피해자인 신청인들의 피해회복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괴리를 조금이나마 상쇄하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논문을 준비했다. 이번 기회에서 언론보도 피해자(신청인)와 언론사(피신청인)의 역학관계,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현황, 피해구제보도문의 보도 행태를 짚어 본 후, 언론보도 피해자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작성과 이행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II.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중재 ◎◎

### 1. 조정·중재 현장에 대한 이해

#### 가. 조정사건 처리 현황

‘조정(mediation)’이란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재판에 의하지 않고 해결하는 절차임에 반해, ‘중재(arbitration)’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권위 있는 제3자의 판단에 따르기로 서로 사전에 합의하고 개시되는 절차로서 제3자의 결정에 따라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sup>5)</sup>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조정과 중재의 과정에서 제3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언론보도 피해자인 신청인보다는 언론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어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가능해진다.

첫째, 신청인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인다. 언론보도 피해자인 신청인은 거대한 언론사를 상대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조정이나 중재과정에서 강하게 자기요구를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6)</sup> 그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처음부터 기대치(期待值)를 낮추고 조정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

4) 언론중재위원회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도 이용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이 평가한 종합만족도는 80.8점, 피신청인이었던 언론사가 평가한 종합만족도는 75.4점을 기록했다.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5쪽』)

5) 김정탁 (2010). 중재사례 확대 방안. 『언론중재위원회 2010 중재위원 연수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언론중재제도 운영상의 몇 가지 쟁점』, 41쪽

6) 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 중에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는 2008년 54.8%(전체 신청사건 954건 중 523건), 2009년 53.8%(전체 신청사건 1,573건 중 847건), 2010년 56.1%(전체 신청사건 2,205건 중 1,284건)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의 경우는 개인보다 더 언론의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기업체가 신청한 사건만 해도 2008년 11.9%(114건), 2009년 10.9%(171건), 2010년 14.9%(329건)로 나타나 이런 수치까지 합산하면 언론을 어려워하는 신청인 비율은 더욱 늘어난다. (『언론중재위원회 2010 연간보고서, 24쪽』)

“조정과정에서 분쟁의 양 당사자는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언론보도 피해자인 신청인보다는 언론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니 훨씬 유리한 조정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너 무도 쉽게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하거나 포기하게 된다.

실제로 ‘힘의 불균형(不均衡)’ 때문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2010년 3월 모 지방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하고도 정작 합의는 반론보도로 했던 정부부처 행정사무관은 조정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면서도 “언론을 상대로 그 정도면……”이란 말을 덧붙였다. 사실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은 위에 언급된 행정사무관뿐만이 아니다. 신청인으로 왔던 상당수가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뒤에는 앞서 언급한 꺼림칙한 여운을 남긴다.<sup>7)</sup>

둘째, 언론사가 조정절차를 잘 알고 있다. 기껏해야 일생에 한두 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절차를 밟게 되는 신청인에 비해 언론사는 수시로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경험한다.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대해 훤히 꿰고 있어 자신들에게 불리할만한 상황이 예견되면 적당한 타협안으로 이를 무마하려 하는데, 조정절차에 어두운 신청인은 언론사의 제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언론중재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보도 피해자의 피해회복(被害回復)을 위

한 조치<sup>8)</sup>가 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고 민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언론보도 피해와 관련해 법적 조치가 마련되었음에도 언론사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느슨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언론사들의 이러한 태도는 언론조정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러한 무지는 곧 견히게 될 것이고, 이는 언론에 대한 큰 위협으로 등장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언론사들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언론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움이 되도록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독자들에게 실제적 진실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이행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중국적으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들이 쉽게 합의를 도출하려 한다. 조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양 당사자간 의견합치를 유도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힘의 불균형 때문에 당사자 협상과정에서 언론사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 이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중간자로서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sup>9)</sup>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를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중재위원들은 정정보도문 등의 피해구제보도문을 신청인보다는 언론사의 구미에 맞도록 작성하기도 하고,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합의를 권유할 때 가능한 액수를 줄이거나 손해배상을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sup>10)</sup>

7) 어경택 (2011). 정정보도문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및 관련 사례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2011 중재위원 연수-언론피해구제 및 조정·중재 제도의 실효성 제고」, 41쪽

8)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회복조치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제17조는 추후보도청구에 대해, 제18조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9) 언론중재법 제9조 제5항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10) 2005. 7. 28.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언론조정 대상이 아니었기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로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데에 역점을 두어왔던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중재위원의 그러한 권유로 신청인과 언론사가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그러한 업무진행에 대해 마냥 폄훼의 시선을 보낼 수는 없다.

이는 중재위원들이 조정성립에 큰 의미를 둔 탓도 있겠지만, 쉽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편의추구(便宜追求) 업무방식에서 기인(起因)한 바가 크다.

## 2. 언론조정 · 중재 현황 및 처리결과

### 가. 조정사건 처리 현황

지난 10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사건은 소소한 증감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낸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계기를 맞아 조정신청 건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5. 7. 단일법으로 통합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배상(損害賠償)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신문사에도 피신청인 자격을 부여하여 신청대상 매체가 양적으로 늘어나게 됨으로써 조정신청 사건이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2009. 8. 개정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들이 피신청인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종전에는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언론사

가 피신청인 자격을 부여받게 되면서<sup>11)</sup> 조정신청 사건이 또 한 번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 나. 중재사건 처리 현황

언론중재제도는 2005. 7. 처음 도입되었다.<sup>12)</sup> 처음에는 중재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청구 건이 전혀 없었다가, 2006년도는 7건, 2007년도는 14건, 2008년도는 10건 등 3년간 총 31건(연평균 10.3건)이 접수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09년부터 중재제도의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면서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등을 손질했다. 그러면서 중재신청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2009년과 2010년의 중재신청 건수는 각각 111건과 77건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7월말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중재신청사건은 모두 94건인데 이를 1년간으로 환산하면 2011년에는 총 161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돼 점차 중재제도가 안착단계(安着段階)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표 1〉 10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사건 현황

(2001. 1. 1. ~ 2010. 12. 31.)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정 건수	659	511	724	759	883	1,087	1,043	954	1,573	2,205

〈표 2〉 언론중재법 시행 후 중재사건 현황

(2005. 7. 28. ~ 2011. 7. 31.)

연도	2005(7.28~12.3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1~7.31.)
중재 건수	-	7	14	10	111	77	94

11)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을 신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도록 하고, 신문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과 '지속성'을 인터넷신문의 요건으로 삼았다.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으로는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일 것과 지속성으로는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소위 언론사닷컴들은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를 넘기지 못해 법상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 8.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로 뉴스를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도 인터넷신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12) 언론중재위원회는 초창기부터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지만 그 실질적 기능은 조정이었다.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조정과 중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신청인이 각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13)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서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중재사건의 경우 누락된 데이터가 적어 언론중재법 시행일인 2005. 7. 28.부터 2011. 7. 31.까지의 처리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하 적용되는 중재 관련 통계는 마찬가지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타 매체에 비해 매체영향력이 월등한 신문과 방송의 피해구제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다.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이 꾸준한 성장지표(成長指標)를 보이면서 2010년에는 무려 79.2%에 달하는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sup>14)</sup>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양적으로 엄청난 성과(成果)를 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러한 양적인 성과에 비례해 질적인 성과도 함께 빛을 발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3〉을 보면, 전통적 언론매체로 평가받고 있는 신문의 경우 오히려 피해구제율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막강한 매체영향력을 지닌 방송의 경우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는 있으나 피해구제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피해구제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도, 타 매체에 비해 매체영향력이 월등한 신문과 방송의 피해구제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역대 최고의 피해구제율을 자랑하는 2010년

도의 경우 신문과 방송의 피해구제율은 각각 70.9%와 60.9%로 집계됐다. 특히 방송의 경우는 60%를 겨우 넘긴 수준이어서 10건의 신청사건 중 4건은 피해구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sup>15)</sup>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포털이 각각 80.0%, 80.7%, 88.7%의 피해구제율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조정신청사건이 취하된 경우와 취하사건이 피해구제로 이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8년에는 전체 조정사건 954건의 36.7%인 350건이, 2009년에는 1,573건의 36.6%인 575건이, 그리고 2010년에는 2,205건의 51.3%인 1,131건이 취하가 되었다. 신청인은 언론사로부터 압력을 받고 취하하기도 하고, 잘못된 조정신청을 했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하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언론사가 일정부분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약속해<sup>16)</sup> 취하를 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취하된 사건은 모두 2,056건이었고, 이중 1,489건에 대해 피해구제보도문이 이행되었다. 취하된 사건의 약 72.4%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척상이 아닌 장외(場外)에서 당사자끼리 해결했다는 것이다.<sup>17)</sup> 조정의 원칙 상대방 합의가 그 무엇보다 앞선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조정의 일방이 개인이나 기업체이고 조정의 타방이 언론사라면, 그리고 조정의 일방이 조력자(助力者)도 없이 언론사 조직과 장외에서 협상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과연 동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가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14)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2011. 7. 31.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중재사건은 모두 310건으로 취하와 기각이 각각 3건, 1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신청취지를 일정부분 인용하는 중재결정으로 처리됐다. 역대 중재사건의 피해구제율은 98.7%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거의 모두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재사건 관련 피해구제율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15) 어경택, 앞의 글, 38~39쪽

16) 인터넷 매체 등의 뉴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피해구제 방법은 정정보도문 등의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는 전통적 방식과 함께 문제가 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피해확산을 막는 현실적 방식도 병행하여 운용되고 있다.

17) 조정심리척상에서 언론사의 보도를 약속받고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므로 통계에서는 무시하였다. 실무적으로 언론사가 보도의향이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된다.

〈표 3〉 매체유형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현황<sup>18)</sup>

( )은 피해구제보도문 이행 구분

구분 연도	매체유형	조정 사건 건수	처리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결정						
2008	신문	554	241	22	7		69	[3]	5		210	[145]	74.9
	방송	189	77	2	5		35		9		61	[27]	58.9
	잡지	12	5		1		2				4	[1]	50.0
	뉴스통신	33	15	1	2						15	[15]	93.9
	인터넷신문	157	62	8	2		17		5	4	59	[49]	80.4
	기타	9	2	2			2		2		1		57.1
	계	954	402	35	17		125	[3]	21	4	350	[237]	72.9
2009	신문	632	253	40	24		50		11	3	251	[150]	71.7
	방송	459	89	5	7		20		230	3	105	[46]	61.9
	잡지	27	18				2				7	[7]	92.6
	뉴스통신	38	12	2					4		20	[18]	94.1
	인터넷신문	233	118	3	5		14		6		87	[58]	78.9
	인터넷뉴스서비스	181	47	16	3		2		6	4	103	[82]	84.8
	기타	3	1								2		33.3
	계	1,573	538	66	39		88		257	10	575	[361]	73.9
2010	신문	540	261	15	14		64	[2]	25		161	[87]	70.9
	방송	189	84	10	6		41		14	1	33	[12]	60.9
	잡지	24	8	3			10	[1]			3		50.0
	뉴스통신	42	10						7		25	[18]	80.0
	인터넷신문	567	190	12	14		29	[2]	43		279	[219]	80.7
	인터넷뉴스서비스	841	77	69	6	[2]	13		48		628	[555]	88.7
	기타	2									2		0.0
	계	2,205	630	109	40	[2]	157	[5]	137	1	1,131	[891]	79.2

18) 『언론중재위원회 2008 연간보고서』, 24~25쪽; 『언론중재위원회 2009 연간보고서』, 27~28쪽; 『언론중재위원회 2010 연간보고서』, 30~31쪽

### Ⅲ. 피해구제보도에 관한 검토 ○○○

#### 1. 관련 법 조항 및 적용현실

언론중재법 제14조와 제15조는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제16조는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5조 제6항에서는 피해를 발생시켰던 보도에 대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할 것을 명시<sup>19)</sup>하면서 구체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구제보도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면서 청구의 행사 등에 관해서는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는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해 법원에 소제가 가능함을 밝히고 법원이 원고(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동일효과발생원칙(同一效果發生原則)에 따라 보도하도록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20)</sup> 이처럼 언론중재법에서는 일관되게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보도가 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효과발생원칙에 따라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요구하는 법조문(法條文)과 조정절차를 거쳐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피해구제보도에 대한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조정을 권유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내용, 크기, 게재 위치 등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sup>21)</sup>을 정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당사자는 상호간 세부 조율을 통해 합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편,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로 밝혀진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추후보도다. 이러한 추후보도의 경우 보도피해자의 무죄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다수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 2. 피해구제보도 행태 및 문제점

##### 가. 조정합의서의 문제점

최근 3년간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 조정사건 중 당사자가 조정성립을 통해 마무리한 경우는 전체사건의 33.2%<sup>22)</sup>에 달했다. 많은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래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합의서에 자주 등장하는 피해보도구제문의 이행방법을 살펴보자.

가장 자주 눈에 띄는 표현은 “제목 및 본문의 활자는 피신청인이 정정보도할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크기로 한다”, “제목 및 내용의 활자 크기는 피신청인이 통상 보도하는 정정보도문의 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는 ○○일보의 통상적인 정정 및 반론보도 형식에 따르도록 한다” 등이 있다.

19)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 “언론사 등이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지파(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21) 언론중재위원회는 2011. 7. 1부터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들을 위원으로 하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도내용 및 매체특성 등을 고려해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보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최대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명제를 안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22)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청구건수는 총 4,832건이었고, 이중 1,570건이 조정성립되었다.

“통상 보도하는 정정보도문”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활자크기”는 어떤 크기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니 기사크기는 대부분 1단 기사였고 제목은 작은 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sup>23)</sup> 결국 ‘통상적인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크기 = 1단 크기’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조정합의서에 ‘통상적인 정정보도 크기’와 ‘1단 크기’라는 표현이 유의미(有意味)한 차이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같더라도 ‘통상적인 보도 크기’라는 표현과 비록 1단이라 하더라도 그 단수를 지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의 크기가 1단 기사여야 한다는 인식을 깰 필요가 있다. 오탈자의 수정이나 아주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1단 크기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가 적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항상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만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복잡한 내용일수록 오보(誤報)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당사자의 반론이 제기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정정이나 반론보도 = 1단 크기’라는 인식은 부당하고 정의 관념에도 배치된다. 두 번째 이유는 조정합의서에 나타난 ‘통상적인’의 표현은 보도 크기에 대한 결정권이 언론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1단 크기’라는 표현은 신청인이 보도 크기에 대해 일정 부분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신청인으로서 자신의 피해구제보도문의 이행방식에 대해 자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나. 피해구제보도문 제목의 문제점

### 1) 피해구제보도문 제목 유형화(類型化)

현재 신문은 물론이거니와 방송<sup>25)</sup>에서도 피해구제 보도문의 제목이 유형화되어 있다. 정정형(訂正形) 제목, 반론형(反論形) 제목, 그리고 정정과 반론의 중간 형태인 알림형 제목이 그것이다. 정정형 제목으로는 ‘바로잡습니다’, ‘정정보도’ 등이 사용되고, 반론형 제목으로는 ‘밝혀왔습니다’, ‘알려왔습니다’, ‘반론 보도’ 등이 사용되며, 알림형 제목으로는 ‘알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밝힙니다’, ‘알림’, ‘고침’<sup>26)</sup> 등이 주로 사용된다.

조정 실무를 경험해보니 정정형 제목으로는 ‘바로잡습니다’, 반론형 제목으로는 ‘밝혀왔습니다’, 알림형 제목으로는 ‘알립니다’가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사가 2면을 고침기사 고정란으로 운용하며 정정보도 등의 제목이 조금씩 유형화되기 시작했다. 피신청인들은 정정보도 등을 이행해야 될 경우 2면에 유형화된 제목으로 보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사정을 모르는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정방식이 수년간 반복돼 제목 유형화가 공고하게 된 것이다.

### 2) 언론사의 피해구제보도 이행 경위(經緯)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 등의 피해구제보도를

23) 2009서울조정57; 2009서울조정110; 2009서울조정122; 2010서울중재45·46; 2010서울조정1120·1121; 2010서울조정1143; 2010서울조정1626; 2011서울조정358·359

24) 어경택은 조정합의서에 ‘1단 크기’를 명시하는 것은 “조정합의를 이끄는 주체가 언론중재위원회임을 분명히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조정합의의 주체는 당연히 분쟁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일 수밖에 없고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25) 방송에서의 보도제목은 화면 자막으로 시청자의 주목도를 높이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기사검색하거나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26) ‘고침’은 언뜻 보면 정정형 제목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정은 사실관계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는 형식임에 비해 고침은 단순 오탈자를 바로잡는 수준이어서 정정과 반론의 중간형태인 알림형 제목으로 분류를 하였다. 그러나, 언론사에 따라서는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 등이 틀렸을 경우에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정보도문의 크기는 대부분 1단 기사였고 제목은 작은 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결국 ‘통상적인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크기 = 1단 크기’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버린 것이다.”

이행하는 것은 자체 판단에 의해 보도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절차를 통해 보도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도이행 판결을 받고 보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가) 언론사 스스로 이행하는 피해구제보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오보를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실어주는 경우다. 대부분 명백한 오보이거나 혹은 특정한 또는 단체의 이름이나 경력 등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대해 짚막하게 정정이나 반론 기사를 내보낸다. 이때 제목으로는 거의 대부분 ‘바로잡습니다’ 또는 ‘알립니다’가 사용된다.

#### (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보도

언론사가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이행하는 사유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경우다.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조정절차를 통해 오보로 판명된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사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이행한다. 언론사 스스로 이행하는 정정이나 반론보도에 비해 크기나 제목이 다양한 편이다. 그렇더라도 정정보도의 제

목으로는 ‘바로잡습니다’가, 반론보도의 제목으로는 ‘알려왔습니다’와 ‘밝혀왔습니다’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 (다) 법원 판결에 의한 피해구제보도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으로 위의 두 경우에 비해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크기가 언론사 자체보도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 보도에 비해 비교적 크고, 제목도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방식인 ‘정정보도문’<sup>27)</sup>, ‘~에 대한 정정보도문’<sup>28)</sup>, ‘정정 및 반론보도문’<sup>29)</sup>, ‘반론보도문’<sup>30)</sup> 등이 일반적이다.

기사의 제목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제목은 기사내용을 단적으로 압축해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기사에 대한 독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제목이 완결성을 갖춘 기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는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이 유형화되고 있는 근래의 언론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필자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이 유형화되는 현상에 긍정적이지 않은 시선을 보내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다. 첫째, 획일화(劃一化)된 제목은 주목도(注目度)가 약해 그만큼 피해구제기능이 떨어진다. 둘째, 제목 획일화는 통상 피신청인 요구로 이루어지기 십상인데, 신청인으로서 합의 주체로서 주도권이 없다는 느낌을 가져 조정에 대한 만족감이 낮아진다. 셋째,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필요한 상황은 다양한데 이를 유형화된 제목으로 맞추려 하면 제목과 기사본문 사이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sup>31)</sup> 넷째, 제목의 획일화는 언론 소비자들의 구미에도 맞지 않아 결국 매체에 대한 호감도(好

27) 서울남부지법, 2010. 5. 11. 선고, 2009가합122946

28) 서울중앙지법, 2010. 10. 6. 선고, 2010가합33656; 서울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134892

29) 서울중앙지법, 2010. 12. 15. 선고, 2010가합19209

30) 서울고법, 2010. 1. 13. 선고, 2009나28082

感度)가 낮아질 수 있다. 다섯째, 피해구제보도문에 대한 언론사의 보도태도 획일화는 언론의 다양성(多様性) 추구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피해구제보도문의 획일화 현상을 지양해야 한다.

#### 다. 피해구제보도 본문의 문제점

피해구제보도문을 작성하는 주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여야 한다. 그러나 언론매체에 보도될 문안이라는 점 때문에 피해구제보도문 도출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sup>32)</sup> 신청인이 피해구제보도문 작성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다보니 피해구제보도문은 자연스럽게 피신청인의 구미에 맞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과정에 참석한 피신청인들은 예외 없이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를 줄이려 한다. 그러다보니 전달할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壓縮)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까지 생략(省略)해 이를 접한 독자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동아일보 2011. 5. 3.자 A30면에 「알려왔습니다」란 제목으로 게재된 반론보도문<sup>33)</sup>을 살펴보자.

3월 22일자 A30면에 실린 '1만원 아끼려다... 출신원 경품 4억 날려'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제주 모 골프장에서 출신원을 기록한 손모 씨는 "경품 행사가 적용되는 티박스가 아니었고, 골프장 측에서 경품행사 사실을 제대로 알려지도 않았다. 1만원이 아까워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 보는 독자라면 '알려왔습니다'라는 제목과 기사의 앞뒤정황으로 '누군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구나' 정도로 넘겨짚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형식의 피해구제보도문으로는 사건의 전후사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오로지 당사자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는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sup>34)</sup>을 피신청인이 과도하게 생략하고 압축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였다. 이렇게 당사자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문(暗號文)같은 피해구제보도문이라면 굳이 신문의 지면을 통해 보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이와 같이 당사자만 이해할 수 있는 피해구제보도문의 대표적 사례로 한겨레신문이 2010. 6. 28.자 1면에 게재한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sup>35)</sup>를 들 수 있다.

지난 5월 10일자 4면에 게재된 「요셉의 지도력」 제목의 목회자 칼럼 필자는 '곽○○ 목사'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31) 2011서울조정469·470 사건의 피해구제보도문 제목은 '바로잡습니다'임에도 기사본문은 전형적 반론보도인 '~고 밝혀와 이를 알려드립니다'로 되어 있어 제목과 기사본문이 엇박자를 보이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010서울조정1395·1396 사건의 경우,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은 '○○○○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기사본문을 분석해보면 총 7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6문장이 '밝혀왔다', '~라는 것이다', '~고 밝혔다', '~고 반박했다', '~고 밝혔다', '반론을 제기했다'로 마무리하고 있고, 오직 1문장만 '~로 밝혀져 바로잡는다'로 하였다.이외에도 2009서울조정20, 2009서울조정148, 2009서울조정443, 2010서울조정80·81, 2010서울조정865·866, 2010서울조정1399·1400, 2011서울조정46, 2011서울조정97, 2011서울조정376·377 등의 사건이 유형화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기사본문과 제목이 맞지 않는 경우다.

32) 언론중재위원회가 심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권유하면, 피신청인은 그 조정안을 자신의 틀에 맞춰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해 주고 신청인이 이에 첨삭의견을 더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피해구제보도문의 작성에서 피신청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얼마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신청인의 권리회복 수준도 달라진다.

33) 2011서울조정393·394

34) 이 사건은 서울제4중재부에서 진행했던 조정사건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다기보다는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여 법률상 화해가 된 것인데,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나 직권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는 법률적 효력 등 그 실질에 있어 차이가 없기에 당사자 합의의 표현을 사용했다.

35) 2010서울조정909·910, 서울제7중재부가 진행했던 조정사건으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종결이 되었다. 신청인은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를 통해 피신청인이 손해배상액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는 최소한으로 이행하기로 해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졌다.

“언론사들이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를 줄이려다 보니 전달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거나 꼭 필요한 사항까지 생략해 이를 접한 독자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정보도문도 분명히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보도문을 보고 알 수 있는 사항은 칼럼이 나간 것은 사실인데 칼럼 필자는 꺾○○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그 칼럼은 누가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독자들은 필자가 없는 칼럼을 읽은 셈이 된다.<sup>36)</sup> 이러한 정정보도문을 읽은 독자들은 마치 뒷간에서 일을 보다 만 듯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사를 읽은 독자라면 당연히 불만을 느낄 것이고 심한 경우는 불쾌감까지 느낄 수도 있다. 피해구제보도문이 기본적으로 언론피해자를 위해 게재되는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신문에 실린 이상 다수의 독자들도 이를 보게 된다. 당연히 독자들도 고려해 피해구제보도문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문같은 피해구제보도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압축과 생략으로 기사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경우 외에도 문장이 너무 길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 또한 피신청인이 기사크기를 줄이기 위해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기사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줄이다보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예로 조선일보 2010. 6. 7.자 B4면에 게재된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sup>37)</sup>를 들 수 있다.

본지 4월 13일자 B4면 “허위·과장 분양에 또 속았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서울 구로동 N쇼핑몰측은 2009년 1월 분양분부터 2년간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였고, 실제로 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면세점 허가와 관련해 당초 구로 세무서로부터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반론보도문을 접한 일반 독자들이 그 내용을 선뜻 이해하기는 힘들다. 전체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은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잘 전달되지도 않는다. 신문사에 처음 들어온 수습기자들에게 선배들이 강조하는 글쓰기의 제1법칙은 ‘문장을 짧게 쓰라’는 것이다.<sup>38)</sup> 필자는 위 피해구제보도문이 기사문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정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조정과정에서 언론사들은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를 최대한 줄이는 것을 지상과제(至上課題)로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구제보도문은 원 기사의 문제된 내용을 언급하고, 이를 바로잡거나 이에 대한 반박사항을 언급하는 형태로 작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피신청인들 대부분은 원 기사에서 문제된 내용은 이미 보도가 되었으므로 원 기사만 특정<sup>39)</sup>한 후 정정이나 반론사항을 보도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 주장을 수궁하기 힘든 경우가 더 많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피신청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사례로 중앙일보 2011. 2. 25.자 2면의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sup>40)</sup>를 살펴보자.

36) 어경택, 앞의 글, 52~53쪽

37) 2010서울조정912

38) 어경택, 앞의 글, 53쪽

39) 원 기사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보도일과 지면, 제목을 적시한다.

40) 2011서울조정80·81

본지 2월 15일자 8면 ‘한때 입시 포기했던 △△이, ○○일보 공신 덕에 □□대 붙었어요’ 기사와 관련해 △△양은 “단 한순간도 입시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대 사회과학부가 아닌 인문학부에 진학한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피신청인은 원 기사의 보도일과 지면, 그리고 제목을 언급한 후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함께 실었다. 그런데 제목을 통해 원 기사의 내용이 잘 압축돼 있어 굳이 보도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제목만으로 원 기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면 원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 언급하는 과정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반면,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하기 힘든 사례로 위클리경향 2010. 3. 8.자 ‘△△전자, “우리는 노조가 없다”’ 제하의 기사<sup>41)</sup>를 들 수 있다.

본보 <[2010 연중기획]비정규직 근로자는 ‘21세기 전태일’> (2010년 1월 19일, 859호) 제하 기사와 관련, △△전자측은 “현재 사내에는 노조가 없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노사 간 고충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있다. ‘△△전자 노조원’이라고 언급된 근로자는 △△전자 소속이 아니라 타회사에 소속된 파견직원으로 신분상 우리 회사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혀왔다.

이 반론보도문을 보는 원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독자는 △△전자 소속이 아닌 직원을 △△전자 노조원이라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전자 노조’ 문

는 한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치쟁점화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다. △△전자의 시각에서는 노조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자신들은 △△전자 노조원이라고 주장하는 파견직원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런 사건이라면 원 기사 내용이 무엇이든 간략하게라도 언급하고 △△전자의 반론을 실었다라면 독자들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라. 피해구제보도문 크기와 지면의 문제점

언론중재위원회는 2009년과 2010년에 중앙종합일간지를 피신청인으로 한 조정사건에서 이행된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와 위치를 조사·분석했다.<sup>42)</sup>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사·분석한 원 기사 대비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비율은 2009년 15.4%, 2010년 20.1%로 나타났다. 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과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sup>43)</sup> 대부분의 중앙일간지들이 피해구제보도문을 1단이나 2단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러한 통계수치를 벗어 날 수가 없을 것이다. 한정된 지면에 많은 기사를 싣고자 기사크기를 줄이려 하는 언론사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오히려 부적절한 피해구제보도문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양보다는 질이라는 금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조사에서 피해구제보도문이 원 기사가 실린 지면과 동일한 지면에 실린 경우는

41) 2010서울조정511

42) 2010서울조정511 조정사건 중 당사자 합의, 또는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해 피해구제보도문이 이행된 경우만을 표본으로 삼았으며, 조사대상기간은 각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리본부 조사팀,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및 위치 분석’, 2010. 11.)

43) 원 기사 중 문제된 부분 대비 피해구제보도문 크기의 비율은 2009년 95.9%, 2010년 97.5%로 조사됐다.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 기사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야 하므로 기사에서 문제된 부분만을 고려해 비율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원 기사의 크기에 따라 독자들의 주목도가 다르고 그 피해 수준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원 기사 전체 크기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중앙일간지들은 신청인과 보도이행에 대해 합의를 할 때 최소한 ‘둘에 하나’는 2면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종합일간지들이 2면을 고침기사 고정란(固定欄)으로 운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2009년 26.3%, 2010년 40.5%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리고 2면에 게재된 경우는 2009년 66.7%, 2010년 50.0%였고, 기타 면에 게재된 경우는 2009년 7.0%, 2010년 9.5%로 집계됐다. 이 통계를 통해 중앙일간지들은 신청인과 보도이행에 대해 합의를 할 때 최소한 ‘둘에 하나’는 2면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종합일간지들이 2면을 고침기사 고정란(固定欄)으로 운용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조정석상에서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해야 할 경우 언론사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2면을 고집한다. 언론보도 시스템에 어두운 신청인들은 평소에 눈에 익었던 고침기사 고정란을 통해서만 정정보도 등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선뜻 피신청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조정절차의 보조자인 중재위원들은 당사자합의 우선원칙에 따라 양자의 거래에 대해 별다른 제동을 걸지도 않는다. 그렇게 수년간 반복된 신청인-피신청인-중재위원간 언론조정사건 처리방식이 이제는 통계수치(統計數値)로써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상의 통계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언론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피해구제보도가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사회공기(社會公器)를 자임하는 언론이라면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양당사자의 조정자인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을 새로이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 3. 피해구제보도에 대한 개선책

언론중재법은 동일효과발생원칙에 따라 피해구제보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언론현장에서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유 등에 대해 알아봤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적극적 개입

피해구제보도에 소극적인 언론사들의 자세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하면 언론사들이 정정보도 등을 대하는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지기는 했으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언론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언론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를 기약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제3자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sup>44)</sup>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안을 준비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조정안 마련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sup>45)</sup>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나. 조정합의서상 이행방법 구체화

조정합의서를 작성할 때 ‘통상적인~’이라는 표현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제목이나 본문의 활자크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보도문의 크기를 지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표현으로 그 이행방법을 확정

44) 언론중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설득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조정합의의 주체는 양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조정절차의 주체는 여전히 양 당사자라 할 수 있다.

45) 2011. 7. 1. 발족한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소위원회’는 그 운용목적이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보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기구다.

하도록 한다.<sup>46)</sup> ‘통상적인 정정이나 반론보도 = 1단 크기’라는 기존의 인식을 타파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보도 이행에 신청인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유형화된 제목 사용 지양

‘바로잡습니다’, ‘밝혀왔습니다’, ‘알립니다’ 등 유형화된 피해구제보도문의 제목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독자들에게 기사내용을 명쾌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제목을 뽑아 기사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도록 한다. 유형화된 제목을 탈피함으로써 다양성 추구에 일조(一助)함은 물론, 매체에 대한 독자 호감도 높일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실제 조정과정에서 합의된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유형화된 제목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피해구제보도문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① 일반기사와 마찬가지로 제목을 뽑는다. 피해구제보도문도 하나의 완결된 기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걸맞게 제목을 달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정보도<sup>47)</sup>

△△△ 전 청장, 박연차 사건과 무관(○○경제TV) / △△단체 회장 공금횡령, 사실과 달라(○○○○신문) / ‘△△고 영양교사 식단표도 작성 못해’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일보) / “△△군 새농촌육성기금 38억 행방모연” 사실과 달라(○○일

보) / △△대 직원 공금횡령 무혐의(○○뉴스) / △△경찰서 경장 직무유기 등 ‘무혐의’(○○○신문)<sup>48)</sup>

#### 반론보도<sup>49)</sup>

“SEED(뇌기반인성교육) 프로그램, 미신 프로젝트 아니다”(○○일보) / 환경부,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재검토 의견 사실과 달라”(○○○) / KBL, “구단들과 유기적인 소통 노력”(○○일보) / “△△△△활성화운동본부, 상품권 판매 앞장 재래시장 사수”(○○○) / △△전자, “우리는 노조가 없다”(○○○○○) / UDT 동지회, “故 한 준위, 합수에서 사망”(○○TV) / △△△ 기자, ‘아리랑’ 관련 막말 사실 아냐(○○신문)

② 유형화된 제목을 사용해야 할 경우 보다 구체화하도록 한다.

유형화된 제목 사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관행에 의해 언론사는 ‘바로잡습니다’ 등의 표현을 고집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정보도문]~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문]~기사 관련, 알려드립니다(밝혀왔습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sup>50)</sup>

#### 정정보도<sup>51)</sup>

[바로잡습니다] 국민의례 거부…노동研 또 노사 갈등(○○경제신문) / △△△△중앙회 관련기사 바로잡습니다(○○시사) / [정정보도문] 유아영어교재 ‘△△△’ 관련 기사 정정합니다(인터넷 ○○일보) / ‘이사장 공석중 정관변경’ 관련 정정보도

46) “피신청인은 ○○○○년 ○○월 ○○일까지 자신이 발행하는 ○○일보 ○면에 위 정정보도문을 2단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도록 한다.”가 좋은 예다.

47) 2009서울조정211 / 2010서울조정409·410 / 2010서울조정1538·1539 / 2011서울조정97 / 2010서울조정498·497 / 2010서울조정1278

48) △△대 직원과 △△경찰서 경장 건은 추후보도에 대한 것이나 제목 유형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서 정정보도 제목 사례에 포함하였다.

49) 2009서울조정96, 2009서울조정97 / 2009서울조정232 / 2010서울조정174, 2010서울조정175, 2010서울조정176 / 2009서울조정511 / 2010서울조정841 / 2011서울조정862

50) 그런데, 이러한 형식의 제목은 너무 길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인쇄매체보다는 인터넷매체에 권장할 만하다. 필자가 조사한 사례도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51) 2009서울조정356 / 2010서울조정1395·1394 / 2010서울조정1468·1469 / 2010서울조정1603·1604 / 2011서울조정458 / 2011서울조정735

문 (○○일보) / [정정보도] “E사 UPS LT TMS 도입 실패?” 3월 7일자 정정보도 (○○뉴스) / ‘황△△ 용인 연구실 땅 보증금 분쟁’ 관련 정정보도 (○○닷컴)

#### 반론보도<sup>52)</sup>

[반론] 용산참사 관련 기사에 대한 남대문서 입장 (○○뉴스) / 사당동 CES사업 보도에 대한 △△△의 반론보도문 (○○뉴스) / [알려드립니다] 3월 4일자 “대학병원 교수 자살 놓고 의료계 ‘술렁’” 기사 (○○닷컴) / <알려드립니다> ‘103년 전통 단성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뉴스) / [알려왔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 ‘△△대 학원갈등 “이제 그만” 제하의 기사 (○○일보) / [알려왔습니다] ‘△△대병원 노조’ 반론보도문

③ 유형화된 제목을 사용하되 반드시 부제목을 일반기사처럼 뽑는다. 위에서 제시한 ①과 ②를 혼합한 형태로서 유형화된 제목을 사용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보도내용도 함께 제시하는 방법이다.

#### 정정보도<sup>53)</sup>

제목 : <바로잡습니다>

부제목 : ‘○○○ 장로, 교회 재정 횡령으로 형사처벌’ 사실과 달라

#### 반론보도<sup>54)</sup>

제목 : 알려드립니다

부제목 : “동선3구역 재개발 계속 추진”

#### 혼합형<sup>55)</sup>

제목 : <정정·반론보도>

부제목 : ‘○○고 영양사 놓고먹는다’ 사실과 달라

#### 라. 피해구제보도문 구성의 원칙 마련

피해구제보도문은 반드시 두 문장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언론사는 피해구제보도문을 작성할 때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한 문장으로 뭉뚱그려 놓으려 하고, 신문 제작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언론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독자들은 이해하기 힘든 암호문 같은 피해구제보도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내용이 충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피해구제보도문은 최소한 두 문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앞 문장에서는 원 기사의 문제된 부분을 언급하고 뒤 문장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이나 신청인의 반론을 신도록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은 두 문장 이상으로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이를 언론사들에게 주지(周知)시킬 필요가 있다.

#### 마. 피해구제보도문 크기 확대 및 게재 위치 조정

앞에서 필자가 제시한 ‘유형화된 제목 사용 지양’ 과 ‘두 문장 이상으로 피해구제보도문 구성’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기존에 1단으로 처리되던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리라. 그러

52) 2009서울조정372 / 2010서울조정151 · 152 / 2010서울조정674 · 675 / 2010서울조정875 / 2010서울조정1394 / 2011서울조정9 · 20

53) 2009서울조정794

54) 2009서울조정258

55) 2010서울조정1538 · 1539

나 그보다는 언론사가 피해구제보도문도 독립된 기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완결성 있는 기사를 위해 전달해야 할 내용을 지나치게 압축하거나 생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피해구제보도문이 2면에 게재됨으로써 얻는 이점(利點)<sup>56)</sup>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 유형화된 형태로 실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 기사가 게재된 지면에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기사크기는 2면에 실리던 틀보다는 커져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원 기사와 같은 지면에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원 기사와 같은 지면에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는 것이 법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언론사가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바. 기타 의견

언론사가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할 경우 그 이행경위(履行經緯)를 설명하도록 한다. 언론사가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하게 되는 원인 세 가지 중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통상 1~2단으로 피해구제보도가 이뤄지다보니 독자들의 주목도를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달력도 미미하다. 이러한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지게 된 저간의 사정을 짚막하게나마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낮은 피해구제보도문에 대해 느끼는 심적(心的) 저항(抵抗)을 낮춰야 한다. 이는 신청인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대한 배려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제목 앞이나 본문 뒤에 사건번호를 넣거나<sup>57)</sup> 문장으로 그 사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크게 기사의 상단에 넣는 방법과 기사의 하단부에 넣는 방법으로 나뉜다. 기사 상단에 넣는 사례로 '언론중재위원회 합의문'이란 표현이 사용됐으며,<sup>58)</sup> 기사 하단부에 넣는 방법으로는 '이 기사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른 정정보도문이 있습니다'는 표현이 사용됐다.<sup>59)</sup> 피해구제보도문의 이행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언론현실에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 IV. 맺는 말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책임(公的責任)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피해자의 인격권 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 3. 31. 출범한 이래로 언론보도 피해자들의 권리회복(權利回復)을 위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그리고 손해배상 등을 피해구제 수단으로 확대해 왔다. 이렇게 확대된 피해구제 수단을 바탕으로 언론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원만한 분쟁해결로 사회통합기능(社會統合機能)이라는 조정과 중

56) 독자들의 지면에 대한 주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57) 그 형식은 [정정보도문: 2011서울조정○○○], [반론보도문: 2011서울조정○○○] 등과 같다.(어경택, 앞의 글, 46쪽)

58) 동아일보, 2007. 8. 31.자 2면; 한국일보, 2007. 9. 15.자 2면

59) 인터넷한겨레, 2010. 7. 12. 「근현대미술 대가 작품 일색 '복고 장터'-(바로잡습니다)」 또한, 경남도민일보 2007. 7. 2.자 7면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말미에는 "위정정 및 반론보도문은... 합의에 따라 게재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할 경우 제목, 보도문안, 보도 크기, 게재 지면 등이 원 기사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피해구제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조정·중재에 의한 것이라는 표시가 필요하다.”

재의 가치를 드높였다고 할 수 있다. 피해구제율 79.2%,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평가한 종합만족도 80.3점과 75.4점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수치들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순기능에 대해 이론(異論)을 제기하기가 힘들 정도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우호적 통계수치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피해구제보도문을 이행할 경우 제목, 보도문안, 보도 크기, 게재 지면 등이 원 기사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피해구제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조정·중재에 의한 것이라는 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필자는 실제 게재된 피해구제보도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언론중재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효과발생원칙에 따라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피해구제보도문과 관련해 노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도출할 필요성을 느꼈다.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와 위치 등 현황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점검하고, 피해구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적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소견(所見)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피해구제보도에 대해 인색한 자세를 보이는

언론사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다. 피해구제보도 역시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로서의 완결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언론중재위원회가 적극적 조정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언론사와 신청인 사이에 적극 개입하여 형평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조정합의서를 작성할 때 언론사의 편의를 앞세우기보다 신청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한다. 특히 ‘통상적인~’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한다.

넷째, 피해구제보도에서 유형화된 제목 사용을 지양한다. 그래야 독자의 주목도를 높여 피해구제효과도 높일 수 있고, 보도문의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다.

다섯째, 피해구제보도문은 반드시 두 문장 이상으로 구성한다. 앞 문장은 원 기사를 요약하고, 뒤 문장은 정정사항이나 반론사항을 적시한다.

여섯째, ‘피해구제보도문 = 1단 크기’라는 등식은 떨쳐버려야 한다. 원 기사의 크기라든지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피해구제보도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기사와 같은 지면에 게재한다. 동일효과발생원칙은 언론중재법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덟째, 피해구제보도문의 이행경위를 부가한다. 독자들에게 피해구제보도문이 이행되는 저간의 사정을 설명함으로써 심적 저항감을 낮춰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일방에게 유리한 조정의 진행은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아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조정이야말로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서비스’인 것이다. 양 당사자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이용만족도 점수가 결코 허수(虛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는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의 이번 제언(提言)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노력하고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1주제 지정토론 및 답변

### ■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2면 애독자입니다. 신문은 사회의 거울이듯, 2면은 신문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는 자의에 의해, 혹은 타율로 언론의 반성문이 쓰여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근래의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보면 ‘저런 내용이 어떻게 버젓이 신문에 게재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사례를 보기도 합니다. ‘데스크는 무엇을 했을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송고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팩트에 죽고 팩트에 산다는 기자의식이 약해진 게 아닌가,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역량이 달리는 게 아닌가 염려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데스크가 연소화되면서 악역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자들을 훈련시키는 일환으로 데스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사들이 다듬어지고 걸러졌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점점 데스크의 연조가 짧아지면서 스크린 능력도 떨어지고, 젊은 기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흐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언론현실을 반영해 반성문을 쓰려고 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취약한 시스템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정탁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고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발표자가 신청인의 입장을 강조하는 대신 피신청인인 언론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어서 갑자

기 방어기제가 발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발제문의 방향과 다른 부분을 토론하겠습니다.

발제문을 보면 언론중재에서 작년의 피해구제율이 79.2%로 나왔습니다. 신청인의 만족도 역시 80.8%로 오히려 피신청인의 75.4%보다 높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언론피해구제제도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호적 통계수치를 맹신할 수 없다’, ‘현실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주관적 판단 사이의 괴리,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문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랜 중재실무 경험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를 불편한 갑을관계로 파악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학자로서의 오랜 경륜에 의해서 데이터가 보강되지 않더라도 ‘이게 하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신뢰합니다.

거기에도 쟁점과 대안 부분에 개인적인 아이디어 한두가지를 보태고자 합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동일효과발생원칙,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위치, 문장 세 요소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효과발생원칙은 법의 이상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나 훈시규정이 아닌 것 같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가령 무기대등의 원칙, 이익의 균형 존중 이런 정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훌륭한 법이 현실에서는 실현되거나 적용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과 규범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효과발생원칙에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무적인 측면에서 꼭 동일 지면에 실어야 동일 효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가령 1면 톱의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피해구제보도문을 1면 톱 자리에 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카다피 체포’라는 중요기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정정보도가 나가는 것이 독자에게도 이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굳이 같은 면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규범적인 측면에서 언론행위를 너무 단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닌가, 언론의 사회적·제도적 의미를 경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검찰과 비교했을 때 검찰이 수사와 기소과정을 거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도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불가피한 오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오보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이고, 다만 거기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권 행사가 계속되는 것이 법의 정신이지요. 마찬가지로 언론도 일부 오보가 있더라도 언론자유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활동이 법률의 위임은 아니지만은 역사의 위임임이 분명하거든요.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우리가 쟁취한 언론자유 정신이고 우리 공동체의 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위치, 그리고 문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데이터가 동원됐는데 2면 게재율이 50.0%로 나와 있습

니다. 그러니까 둘의 하나는 2면이라는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크기는 원기사 대비 20.1%, 원 기사 중 문제된 부분 대비해서는 97.5%가 같은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신청인의 만족도 80.8%는 당사자 간 합의의 결과라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습디만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를 했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집중 포화를 맞은 2면을 한 번 보지요. 언론현업에서 2면은 버린 자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면은 종합면이고 스트레이트면입니다. 물론 편집회의를 할 때 판단하기에 애매한 것을 2면으로 돌리거나, 다른 신문의 단독 기사를 받을 때도 2면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임팩트 강한 기사를 2면에 배치해서 2면의 사각지대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2면의 뉴스성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거지요. 따라서 1면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다른 면에 실리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주목도가 높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이것이 2면에 대한 폼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2면이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은폐하거나 숨기기 위한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면 논쟁을 포함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많은 독자들이 이미 2면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고정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2면을 ‘상설 고해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2면을 언론들이 고해할 수 있는 곳으로 고정시켜 버리면 오히려 2면의 힘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일지면에 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면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른

증면이나 감면에 따라 계속 이동을 합니다. 사회면이 몇면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경제면, 체육면, 문화면 등이 늘 바뀝니다. 그렇게 때문에 오히려 2면의 고정성을 이용하면 오히려 정정과 반론의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해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정 합의서의 전달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매뉴얼에서의 제목, 본문, 이행경위 부분 또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들어가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진정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 네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피해구제보도문과 관련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들었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분량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원기사가 게재될 면, 단수, 기사량을 고려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양을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성격에 따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오보가 보도자료를나 통신문을 인용하는 등의 객관적이고 소극적인 오보일 경우와 독자적인 기획 취재나 주관적이고 적극적인 오보일 경우를 나누어 매뉴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셋째, 보도과정, 즉 오보에 이르는 과정을 파악해서 취재자나 편집자의 고의나 과실의 경중을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보도에 의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자는 것입니다. 일본TV가 김정은 사진을 오보했다면 실질적인 피해를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자는 것이지요.

이 정도를 반영한 매뉴얼을 만들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두루뭉술하게 합의할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선택하게 해서 합의에 이르게 하면 피해구제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도 인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사의 엄정함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점점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숨기고 감추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털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기자들과 데스크들이 합심해 오보를 줄이면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도록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 권 일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지난 6월 언론중재위원회 연수회 때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신 어경택 중재위원께서 ‘정정보도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셨는데 많은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었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김정탁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피해구제보도문의 효율화가 한층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김정탁 교수님은 신문기자로 언론 현장을 경험하시고 언론학계에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다 최근까지 언론중재위원으로 참여하신 바가 있어서 김정탁 교수님의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전이나 토론이라기보다는 보충적인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문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내용, 크기, 게재 위치 등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을 정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면, 이를 검토한 당사자는 상호간 세부 조율을 통해 합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오늘 김정탁 교수님이 발제하신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재위가 이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에 들어갔고,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소위원회에 참여해 보니까 표준화된 보도문의 원칙이나 기준을 정형화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법관들이

‘민·형사 막론하고 이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는데 언론에서는 걸핏하면 같은 사건에 다른 판결이라고 비난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보도의 피해사건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안을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매체별로 크게 구분을 해서 큰 틀, 즉 기본원칙만 제시해주고 각 중재부에서 심리과정에서 이를 응용하고 활용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추후보도에 대한 규정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언론중재법 제17조 4항에 보면, ‘추후 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별개라는 뜻이고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청구했더라도 추후보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죄나 무혐의로 밝혀진 피해자 구제에 중점을 뒤서 이중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에서는 추후보도에 대해 피해당사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언론사측에서는 당장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대응하기 일췌입니다. 또 추후보도는 보도된 지 몇 달 후나 몇 년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뒤늦게 잊혀져가는 아픈 상처를 건드리나 하는 생각때문인지 유아무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다면 접수과정에서 반론, 정정청구뿐만 아니라 추후보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밖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정합의문에 ‘통상적인~’이라는 말이 남발되고 있다든지, 제목이 정형화된다는지, 본문의 내용이 두 문장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은 전적으로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밀히 말해서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는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다른 기사들을 보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의 핵심내용을 제목으로 뽑습니다. 그렇다면 정정이나 반론보도도 내용의 핵심을 가지고 제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에 ‘바로잡습니다’, ‘알려왔습니다’를 제목으로 본다면, 다른 기사의 제목들은 ‘해설 기사입니다’, ‘뉴스기사입니다’를 제목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면에 정정·반론기사가 집중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절반이상이 2면에 실린다고 말씀하시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이에 대해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2면에 피해구제보도문이 실리는 것이 꼭 나쁘지는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피해구제 보도문이 같은 채널, 같은 지면, 위치에서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효율성 면에서 2면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에서는 2면을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 있는 면으로 보기 때문에 몇 년전까지는 사실을 모두 2면에 싣기도 했습니다. 2면의 열독률이 웬만한 다른 면들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제의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면 정정란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독자들에게 익숙해지고 접근성도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들이 2면을 정정란으로 정해 놓고 있다면 신문사의 제작 원칙이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원기사의 위치를 고집한다든지, 피해구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1주제 발제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교수)

동일효과발생원칙에 대해 제가 조금 엄격하게 썼던 이유는 제가 중재위원을 할 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만두고 나니까 아쉬움이 더 커져서 혹시 기회가 또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지켜야 하겠다는 제 반성문이라 그렇습니다. 동일효과발생원칙이 실질적 원칙주의가 되어야지 형식적 원칙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주위를 환기시켜 신청인의 권리를 어떻게 좀 더 보호해줄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또 손수호 위원님께서 객관적 수치로는 신청인의 만족도가 높는데 왜 그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점을 도출했느냐 하고 지적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경험 격차입니다. 중재위원이나 언론인들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입장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도 첫 경험이다 보니까 그 정도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런 상황들을 다 알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걸' 하면서 만족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수치상 만족도와 저희가 보는 만족도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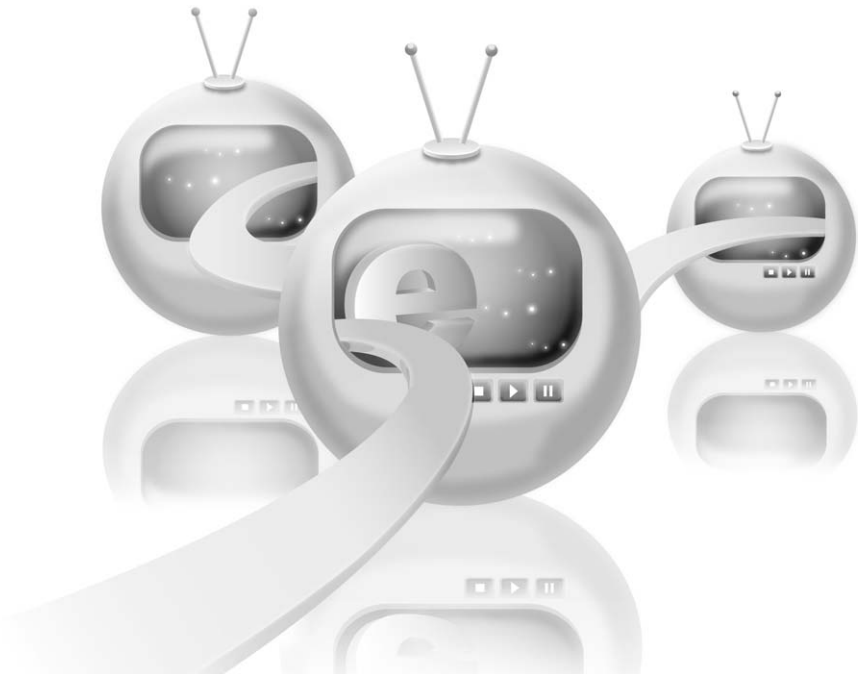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언론'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보도'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다 우리는 기관입니다. 기관에 있다고 하면 대단히 힘을 가진 사람인데, 한국은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언론이 굉장히 목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의 인권 중에서 원래 시작된 것은 언론자유가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이 났을 때 처음으로 'right to

communicate(커뮤니케이션할 권리)'가 먼저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넘어서서 언론자유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헌법을 제정할 때의 초기상황이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를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쓰다보니까 우리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매체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권리', '알 권리', '침묵할 권리', '알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침묵할 권리', '알지 않을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아도 개인의 의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으니까 국가는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보장해왔고,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니까 대항자로서 언론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의 근거가 대단히 약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 중 표현할 권리는 100% 시민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알 권리는 시민의 권리이자 언론사가 비즈니스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은 자꾸만 알 권리를 얘기하지만, 시민의 자유에 보다 입각한 권리는 표현할 권리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알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표현할 권리와 직결되어 있으며, 표현할 권리가 개인의 인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 자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표현할 권리를 감안하면서 언론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 손해배상조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박중순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 I. 서론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을 활성화 하면 장차 언론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의 사건 감소와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에 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 기관(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분쟁에 관한 법적 해결은 국가, 즉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법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또 복잡한 분쟁을 법원이 모두 떠맡아서 처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사법적 분쟁해결수단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이다. 지난 30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제공하였다. 확실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는 소송에 비해 시간이 훨씬 덜 들고 비용 또한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해준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중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손해배상의 인정과 손해배상액의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언론중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는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예컨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손해배상 조정액도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하여 볼 때 턱없이 낮았다. 짧은 기간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이런 이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성립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손해배상 조정액도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하여 볼 때 턱없이 낮았다. 짧은 기간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로 지금 당장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에 관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 제도가 도입된 경위를 보고 이어 최근 위원회에서 처리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을 살펴본 다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손해배상사건 조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과 관련한 몇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글을 마치고자 한다.

## II. 손해배상사건 조정제도의 도입 과정



### 1. 언론중재법의 제정 경위

먼저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 제도가 도입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위원회에 의한 언론중재 등이 시행되었

다. 물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방송법<sup>1)</sup>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sup>2)</sup>에 언론중재위원회 및 언론중재제도 규정이 있었다.

언론중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서다. 이 법에는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이 있었다.<sup>3)</sup> 그러나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무렵 이 제도를 이해하는 국민이 많지 않았고, 또 이 제도의 근거 법률인 언론기본법이 언론통제법이라는 좋지 않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국민들 사이에는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중재제도를 통해 언론에 관한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자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고, 다만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각기 언론중재제도를 계속 존치시켰다. 그 후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단일법 제정의 요구가 높아지자 2005년 드디어 지금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언론중재법은 피해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2. 언론중재법 상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중재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중재법을 제정할 당시 손해배상사건을 조정·중재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다. 찬성 의견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는 반론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었다.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87. 11. 28. 법률 제3979호)에는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었다.

3) 구병삭(1983). 『중보 헌법학 I』, 서울: 박영사, 542쪽.

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이중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부여된 고유의 권리로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미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이를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의 논거는 언론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짧은 조정 기간 내에 이런 문제를 검토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예컨대 언론보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문제, 과실상계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등은 위원회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것이었다.<sup>5)</sup>

어쨌든 이러한 찬성과 반대의 논의를 거쳐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조정·중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 “피해자는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 등

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 제24조에 손해배상에 관한 중재 신청 규정을 두고 있다.

### Ⅲ.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에 관한 처리 현황

○○○

앞에서 손해배상사건의 조정제도가 도입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지난 3년간 손해배상사건의 조정 현황 및 처리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sup>6)</sup>

#### 1. 신청 현황

2010년에 접수된 손해배상 조정사건은 773건으로서 2009년보다 74건이 증가하였다.

#### 2. 처리 결과

2010년에는 조정성립 28.2%, 조정을 갈음하는 결

〈표 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비율

연도	구분	전체 조정사건	손해배상사건	비율(%)
2008		954	324	34.0
2009		1,573	699	44.4
2010		2,205	773	35.1

4) 양경승 (2004).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 14~15쪽; 김서중 (2005). 중재절차의 변화에 따른 법적 고찰.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21쪽.

5) 김창숙 (2011). 전문인들이 바라본 언론조정·중재제도 30년. 『언론중재』, 2011년 봄호, 36쪽; 양삼승 (2007). 「언론관계 소송의 제문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 및 인격권 침해의 구제 수단 및 절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131쪽; 한위수 (2006). 새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개선점 『언론중재』, 2006년 겨울호, 8쪽; 한편 손해배상사건 조정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으로서, 이 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조정단계에서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위원회는 배상액에 관하여 강제조정을 행하거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중재결정을 내리는 권한도 갖게 되므로 그것은 법원에 준하는 자격과 독립성을 위한 신분보장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언론중재법에는 그러한 요건 규정이 없고,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한 산정기준을 벗어난다면 위원회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한다. 박용성 (2007). 「언론관계 소송의 제문제: 신문관계법의 주요 쟁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256쪽.

6) 이하 내용과 표는 『2010년 연간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37쪽 이하에서 인용하였다.

정 5.4%, 조정불성립 결정 7.2%, 기각 4.9%, 취하 54.2%이다. 취하율이 54.2%로 높은 것은 정정보도 청구나 반론보도청구와 함께 병합 청구된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합의되면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 비해 3.5% 높아진 28.2%이고,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피해구제율은

2009년에 비해 13% 높은 80.0%이다.

### 3. 청구액 및 조정액

2010년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6,600만 원으로 다른 해에 비해 낮아졌다. 조정액은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조정액 평균

〈표 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 처리 결과

연도	구분 사건수	처리 결과							피해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08	324 (100)	115 (35.5)	11 (3.4)	7 (2.2)	51[2] (15.7)	4 (1.2)	2 (0.6)	134[101] (41.4)	72.0
2009	699 (100)	172 (24.7)	16 (2.1)	13 (1.7)	33 (4.7)	232 (33.2)	6 (0.9)	227[121] (32.3)	67.0
2010	773 (100)	218 (28.2)	24 (3.1)	18[1] (2.3)	56[1] (7.2)	38 (4.9)		419[344] (54.2)	80.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 ( )안의 숫자는 %

\*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조정건수

〈표 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단위: 원)

연도	구분	평균액	중앙액	최저액	최고액
2008		185,920,574	20,000,000	110,000	10,000,000,000
2009		221,393,861	20,000,000	100	50,000,000,000
2010		65,993,749	20,000,000	100	10,000,000,000

\* 중앙액이란 사례를 순서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두 개 값의 평균액을 말한다.

〈표 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단위: 원)

연도	구분	평균액	중앙액	최저액	최고액
2008		3,331,250	2,750,000	300,000	10,000,000
2009		3,594,103	2,000,000	120,000	30,000,000
2010		1,832,759	1,000,000	150,000	15,000,000

은 183만 원, 중앙액은 100만 원으로 평균액과 중앙액 모두 작년보다 50% 정도 낮아졌다. 최빈액<sup>7)</sup>은 100만 원(10회)이었고, 이어 50만 원(4회), 200만 원 및 15만 원(각 3회) 등이었다.

손해배상액인 최빈액은 1,000만원이었다. 위자료 인 용 최고액은 1억 원이었다.<sup>9)</sup>

다. 인용액의 분포를 보면 5백만 원 이하가 3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백만 원을 초과하되 1천 만 원 이내인 경우가 24.2%이었다.

#### IV. 2010년 법원 판결의 인용액과 위원회 조정액의 비교<sup>8)</sup>



#### 2.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 비교

##### 1. 법원 판결의 현황

가. 2010년 1년간 손해배상청구사건 123건 중 원고 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사건은 33건으로 원고승소 율은 26.8%이었다. 청구액 평균액은 4억 2,133만 원, 중앙액은 5,000만 원, 최빈액은 3,000만 원, 최저액은 250만 원이었다. 1억 원 이상인 억대의 청구가 전체 손해배상청구 123건 중 58건(47.2%)을 차지하였고, 최고 청구액은 200억 원이었다.

2010년도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비 교한 바, 위원회 조정액의 평균액은 법원에 비해 약 1/13 수준이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같은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한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분석해야 하나, 이번 분석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청구사건을 각 자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 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일률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나. 한편,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 루어진 33건에 대해 인용액을 살펴보면, 평균액은 2,424만 원, 중앙액은 1,000만 원으로 평균액이 중앙 액의 2.4배 정도였다.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참고로 2008년의 경우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333 만 원,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2,340만 원(약 1/7)이었 고, 2009년의 경우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359만 원,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2,348만 원(약 1/6.5)이었다.<sup>10)</sup>

〈표 5〉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단위: 원)

구분	빈도(건)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000	150,000	15,000,000
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 조정액 빈도 30은 2010년에 손해배상지급 결정된 건수를 말함

\* 2010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증거가 2건에 불과하여, 액수 비교표에 반영하지 않음

7)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말한다.

8)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10년, 언론중재위원회, 40쪽 이하에서 인용하였다.

9) 약간 오래된 자료이지만 2000년 한해 언론사건의 평균 인용금액은 3,800만 원(평균 청구금액이 2억 9,000만 원이므로 청구금액 대비 13% 정도 수준임)정도이고, 공인 이 제기한 언론사건의 평균 인용금액은 3,500만 원(평균 청구금액이 4억 6,500만 원임)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법원이 인용한 제일 큰 금액은 1억 원이라고 한다. 함석천 (2005).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봄호에서 인용하였다.

10)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본부 교육팀(2011.7. 미발간 자료임)에서 인용하였다.

“지난 3년간 통계에 의하면 비록 동일한 사건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2010년 위원회의 최고액이나 평균액, 중앙액 모두 같은 기간의 법원의 판결보다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위원회의 조정액 중 평균액과 중앙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3. 동일 사건에서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판결인 용액의 비교

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되어 법원에 자동으 로 소 제기된 사건을<sup>11)</sup> 기준으로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을 비교한 바, 10건 중 5건의 금액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위원회가 내린 결정액을 존중하고 이를 판결에 적극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자동 소 제기된 사건은 소송에서 조정, 화해, 취하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판결로 선고된 사안은 많지 않았다.<sup>12)</sup>

나.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 인용액이 위원회의 조정액보다 오히려 적은 사례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위원회와 다른 경우이거나 언론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경우 등이었다.

## V. 통계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원인



### 1. 문제점

손해배상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위원회의 조정·중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 통계에 의하면 비록 동일한 사건을 비교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보다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2010년 위원회의 최고액이나 평균액, 중앙액 모두 같은 기간의 법원의 판결보다 낮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면 위원회의 조정액 중 평균액과 중앙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더욱이 위원회의 조정액은 신청인의 청구액과 비교해볼 때 너무 낮다.

한편 피해구제율은 2010년의 경우 80%이지만 조정 성립율이 28.2%이고 취하율이 54.2%이므로 높은 피해구제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즉 2010년 위원회에서 실제로 손해배상 지급 결정을 한 건수는 32건으로 4.1% (773건 중 32건)에 불과하였다. 이는 2008년의 12.7%(324건 중 41건), 2009년의 7.2%(699건 중 50건)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반하여 법원의 경우 2010년도에 인용한 건수는 전체 건수 123건 중 33건으로 26.8%였고 2008년에는 52.1%(96건 중 50건)였으며 2009년에는 47%(115건 중 54건)였다.<sup>13)</sup>

11) 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위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① 2008년도의 경우 6건을 비교하였다. 그 중 2건(100만 원 1건, 1,000만 원 1건)은 위원회의 조정액과 법원의 인용액이 동일하였고, 3건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액 700만 원이 법원의 인용액 600만 원으로, 위원회의 1,000만 원이 법원의 300만 원으로, 위원회의 1,500만 원이 법원의 1,000만 원으로 각 감소하였고, 1건(위원회 결정액 100만 원)은 기각되었다. ② 2009년도의 경우 1건(500만 원)이었는데 위원회와 법원의 금액이 동일하였다. ③ 2010년도의 경우 2건(각 100만 원, 1,000만 원)이 위원회와 법원의 금액이 동일하였고, 1건(300만 원)은 기각되었다.

13) 앞의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에서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이 낮은 원인 그리고 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보다 낮은 원인은 각각 어디에 있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중재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이고 손해배상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생각,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설령 손해배상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엄격한 증거에 의한 배상이 아니라는 생각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둘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손해배상은 거의 대부분 위자료이다. 그래서 조정에서의 주된 쟁점도 위자료 산정이다.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리 산정 기준이 없다. 통상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sup>14)</sup> 그러다 보니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양보를 통해 위자료를 낮게 정하게 된다. 여기에는 위자료를 낮게 정함으로써 언론사의 동의를 쉽게 받으려는 생각도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조정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직권조정결정의 경우 21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는 생각, 조정·중재는 소송과는 달리 신속한 구제에 그 취지가 있다는 생각 등으로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하기 위한 조정액으로 진행하여 조정액이 낮아지게 된다.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손해배상은 거의 대부분 위자료이다. 그래서 조정에서의 주된 쟁점도 위자료 산정이다.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리 산정 기준이 없다. 통상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넷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때까지의 증거 등 제반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의 성립을 인정하기가 애매하지만 손해배상을 기각하면 신청인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때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고 피신청인과의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언론사는 조정과정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대체로 수용하려는 자세이지만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언론사의 이미지, 책임 소재 등의 문제 때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대체로 만족하고 설령 조정액이 삭감되더라도 대부분 수용하기 때문에 조정액이 낮아지게 된다.

여섯째, 중재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중재위원 대부분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기준이나 산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그런 상황에서 예컨대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가 받아들여져 손해배상에 대하여 크게 집착하지 않고, 피신청인도 손해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면 취하 또는 낮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14) 박윤직(2005). 『제6판 채권각론』, 박영사, 466쪽; 한편, 언론중재법 제30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재산상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VI. 손해배상 조정의 활성화 방안



앞에서 각종 통계와 문제점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이 매우 낮고, 또 위원회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액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 아래에서 몇 가지를 제시해 본다.

### 1. 실질적인 손해배상 조정 비율 제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2010년도에는 4.1%, 그리고 2008년에는 12.7%, 2009년도에는 7.2%로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율이 매우 낮다. 특히 2011년 6. 30. 현재 위 비율은 2.9%(417건 중 12건)로서 매우 낮다.<sup>15)</sup> 다만 통계상 피해구제율이 높은 것은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에 관하여 조정을 할 때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취하하게 하는데 이 경우를 피해구제율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치상의 피해구제율을 높이는 것을 지양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가능한 병합된 정정보도청구 등 다른 청구의 인용을 고려하지 말고 손해배상청구만 놓고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철저한 증거조사

증거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6)</sup>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는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직권조정결정시에는 21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증거조사가 어렵다. 위 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정확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언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또 위 기간을 연장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 인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반면에 사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언론중재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역시 문제다.

따라서 가능한 위 기간 중에 증거조사<sup>17)</sup>를 하여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건이 접수되면 제1회 심리기일전이라도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유해 볼 만하다. 신청인에게는 보충자료나 증거의 제출을, 피신청인에게는 답변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심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쟁점이 많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심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 3.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

지금까지는 직권조정결정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직권조정결정이 강제성을 띠고 있어 위원

15) 앞의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에서 인용하였다.

16) 장현우 (2011).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및 관련 사례 검토」, 2011년도 중재위원연수 자료, 32쪽.

17) 언론중재법 제20조에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언론조정중재규칙에는 제17조에 서증조사, 검증 등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에 275회에 걸쳐 증거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한 것이 108건이었다(언론조정 실무가이드, 언론중재위원회 (2009), 155쪽에서 인용하였다).

회의 기능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 즉 위원회의 사건은 가능하면 당사자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합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굳이 강제로 직권조정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에게 위원회의 사건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여 주어 합의를 유도하고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한 내용에 맞게 과감히 조정금액을 정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 손해배상액을 낮게 결정하는 사례도 있다. 그 이유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법원으로 기록이 송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적 부담, 즉 법원에서 기각된 다거나 아니면 조정액이 삭감된다는 부담(위원회와 제1심 법원은 별개의 기관이지만 마치 위원회가 제1심 법원의 하급심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임)으로 인해 대체로 신청인의 금액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조정 금액을 결정한다.

또 신청인이 소송의지가 약하고 언론사가 소액의 손해배상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매우 낮은 금액으로 조정 금액을 결정하기도 한다. 신청인이 소송의지가 약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심적 부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증거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감하게 조정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

“언론사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용기 있는 자세로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시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언론에 대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언론인론증재법 제4조 제2항은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는 언제든지 잘못된 보도를 통하여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사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용기 있는 자세로 침해사실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sup>18)</sup>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 경우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사는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은 조정 과정에서 언론사를 설득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sup>19)</sup>

#### 5. 신청인의 요구와 법원의 인용액을 반영한 조정액 산정

2010년 위원회의 조정액 중 최저액은 15만 원인데

18)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점이 있다. 즉 개인의 명예 등이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衡量하여 그 규제와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자칫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언론의 위촉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7257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한편 언론증재법도 제1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 장현우, 앞의 논문, 35쪽.

비해 법원의 인용액 중 최저액은 100만 원으로서 조정액이 인용액보다 매우 낮다. 또 지난 3년간 위원회의 조정액 중 최저액을 보면 1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체로 낮다. 이처럼 조정액의 최저액을 낮게 정하면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해 줄 수 없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정액을 정할 때 신청인의 청구 금액과 유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인용액을 모두 참고하여 피해자가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VII.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 1. 언론의 피해 범위와 관련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보도 등에 의한 피해”라 함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손해”를 말한다.<sup>20)</sup> 이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sup>21)</sup> 이 주장

에 의하면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저작권 등 그 성질상 보도의 진실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는 조정 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의 침해도 그것이 진실한 보도에 의한 것이라면 위원회가 조정할 수 없으며, 설령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22)</sup>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손해배상에 대한 조정 신청의 규정을 둔 취지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것이므로 그 피해의 범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sup>23)</sup> 또한 언론중재법 제5조에 의하면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조정 신청은 위 구제 중에 하나이므로 손해배상의 조정 신청 대상에 인격권 침해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前者)의 견해에 찬성한다. 실무도 전자에 따르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자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념을 명백히 할 필요는 있다.

### 2.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

언론보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조정 신청을 하여 그 손해배상이 인

20) 윤 경 (2005).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005년 여름호, 37쪽.

21) 한위수, 앞의 논문, 16쪽; 장호순 (2008). 위원회 조정 사례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본 보도의 문제점과 피해 구제. 『언론중재』, 2008년 봄호, 16쪽.

22) 한위수, 앞의 논문, 17쪽.

23)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조정 신청한 경우는 물론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조정 신청의 경우에도 조정을 하고 있다. 김동하 (2007).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 8쪽 이하 참조.

정되려면,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취재기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이루어졌다는 것, 언론보도가 위법하다는 것, 언론보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 언론보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sup>24)</sup>

그런데 입증과 관련하여 언론소송은 다른 소송에는 없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즉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와 판례와 학설이 위 요건에 추가하여 인정하는 “허위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그것이다.<sup>25)</sup> 예컨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언론 등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에 있다.<sup>26)</sup>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이므로 조정 절차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 3. 조정 기간의 연장과 관련

언론중재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22조 제1항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조정 신청 사건의 경우 위 조정기간이 짧아 문제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려면 인과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위 조정기간 안에 절차를 모두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기간 연장에 대한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 조정기간을 혼시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에는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또는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시규정이라는 주장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 VIII. 결론



예로부터 “소송은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 “나쁜 화해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러”라는 말이 있듯이 “일도양단(一刀兩斷)”인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대화와 양보 그리고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대법원도 지난 2009년 서울 등지에 상설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언론 분쟁에 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는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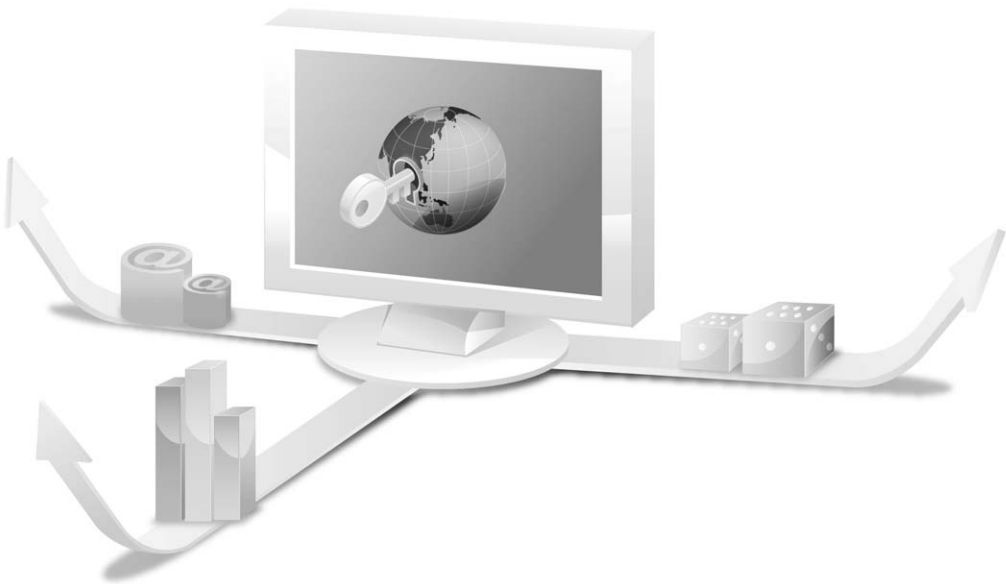
24) 『언론법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2011), 41쪽; 이광범 외(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 199쪽.

25)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28365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권윤식, 앞의 책, 401쪽; 윤경, 앞의 논문, 38쪽; 『언론법연구』, 45쪽; 이광범 외, 앞의 책, 199쪽; 이은영(2007), 『제5판 채권각론』, 박영사, 977쪽, 980쪽; 그런데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에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판례의 입장을 실정법에 도입하였다.

26) 윤경, 앞의 논문, 39쪽; 이광범 외, 앞의 책, 200쪽.

각광받는 대체적 분쟁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하면 국민들은 소송이 아닌 조정·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이 활성화되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즉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고 또 그들에게 분쟁에서 해방시켜 주는 역할을 함은 물론 법원에게는 사건 감소와 업무부담의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제2주제 지정토론 및 답변

### ■ 신경민(MBC 논설위원)

사회부에서 일할 당시 후배기자들이 쓴 기사와 관련해 회사를 대표해 중재위원회에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임무는 취재와 보도에서 법률적으로 '상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 설명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상권 사안에서는 대부분 지고, 명예훼손의 사안에서는 진실성, 상당성을 다투면 저희가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0년대 이후 10년씩 나누어 보면 언론중재와 소송면에서 비약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지요. 그만큼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결국 '위축효과'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좋아지는 방향인지, 나빠지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발제문의 지적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0년 123건 중 원고 승소한 33건을 가지고 위원회의 조정액과 판결 인용액을 분석한 대목에서는 질적 분석이 절대로 필요해 보입니다. 박 변호사께서도 원고와 발표에서 이미 한계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통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십니다. 33건을 가지고 액수와 승소율을 단순 비교하는 접근은 전혀 의미가 없는 시도는 아니

지만, 질적인 분석이 따라줘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성격을 지닌 신청 사건들이 이 숫자에 들어가 있어 이런 양적 분석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중재의 시일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무적으로 신청인들이 신청한 뒤 언론사에 기일을 지정해 오는 자료를 받았을 시점에 저희들은 자료를 분석할 시간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혹시 사안이 간단할 경우 본인이나 회사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거의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재위의 설립 목적대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정해진 기일 안에 조치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문서를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 자체가 안 된다는 현실은 큰 문제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속'이라는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론사인 피신청인 쪽에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재위원회에 나오는 언론사의 대리인들, 곧 직속상관들이 출석을 통해 느끼는 점은 중재위원들이 이 사안들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회의를 느낄 때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중재위원들도 한 건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건을 다루고 있고 시일도 촉박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언론사가 걸려있는 사건에서 언론사 대리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왔는데, 중재위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임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제1세션에서 '신청인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신청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에 정보가 있어 신청인들이 해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인 중에서 언론에 대해 악의를 갖고 ‘언론사 이놈들, 한번 골탕먹여보겠다’거나 ‘이 기회에 골탕도 먹이고 돈도 한번 챙겨보겠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 악의적인 신청인들이 꽤 있어서 ‘이런 것까지 인정하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중재위원들이 피신청인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무정하다 싶을 정도로 언론사에게 ‘돈을 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는 느낌을 주면서 절차를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션이나 이번 세션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청인은 피해를 받은 선한 사람이고 피신청인은 가해를 한 나쁜 놈이라는 도식이 현실에서는 항상 맞진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잘못했다면 손해배상이든 피해구제보도문이든 다 해야지요. 그러나 위축효과를 주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1원이라도 내서는 안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법률적입니다. 이걸 공적인 일이므로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이 제1의 잣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증거조사나 심리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팩트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능한, 많은 스태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재위로부터 그런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재가 전치주의가 아니고 신청인들이 다음 단계인 소송에서 다투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재위원회가 관대한 자세를 취하건 엄격한 자세를 취하건 간에 문제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재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비난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심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중재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법원도 인용할 수밖에 없는 논리성, 합리성을 갖추고 모

든 당사자로부터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시간도 줄이고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정도의 업적이 쌓여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도 선한 신청인과 악한 언론사의 구도는 좋지 않습니다. 언론사에게도, 중재위원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 윈윈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합리와 논리라는 명성(reputation)’을 쌓아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매체가 다양해진 현대에도 동일효과발생원칙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동일효과발생원칙을 적용할 경우 방송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되는 불행한 사태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각 매체의 사정을 감안하고 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인 신청인 중에는 개인과 기업이 있고, 기업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다양합니다. 또 노무현 정권 이후 새로운 현상으로서 신청인 중에 관과 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과 공을 상대로 다투는 것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앞에 모두 평등하다고 말하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차이를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이를 더 나누고 구체화해서 심의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변호사 발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좋은 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을 더 하자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지적은 사전교육을 충분히 해서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겠지요.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사전교육,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토론자로 참여해달라는 말에 왜 저를 토론자로 섭외했을까 생각하다가 인터넷 언론을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언론을 대변해서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언론과 관련해서 선정성이나 비윤리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언론들도 신문윤리위원회 산하에 인터넷윤리위원회를 최근에 발족했습니다. 저도 1기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 언론 종사자 뿐 아니라 학계, 소비자 단체, 법조계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불과하지만, 심의과정에서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인터넷 언론과 관련해서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송, 신문 등의 기존언론에 비해서 인터넷 언론이 더 선정적이고 더 비윤리적이냐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인터넷 언론도 앞으로 더욱더 언론의 공익성과 관련해서 한사람의 피해자라도 생기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박 변호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조정으로 인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여 피해자를 더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면 활성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인정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지 손해배상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비교해서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등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위의 조정액이 법원의 인용

액보다 적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전제, 다시 말해서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유가 조정액이 법원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문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비율이 높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동기간 중에 법원에서 언론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들이 증가했다는 데이터는 있으신지, 있다면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사 입장에서 손해배상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중재위에서 손해배상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요인의 하나로 언론중재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나 데스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글귀, 위치, 양 등에 신청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언론사의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언론사 데스크들이 피신청인으로 나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것은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언론중재위에서 손배소 사건이 활성화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데스크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법원에 손배소가 제기되면 전적으로 변호사에 위임을 하면 되지만, 언론중재위에서 손배소가 활성화된다면 데스크가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계량화해서 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변호사를 대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정기간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14일이란 기간 동안 사안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

단하고, 방어논리를 세우고, 증거를 찾고 하는 과정이 매우 짧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방어기제를 발동해서 앞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논지에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원소송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언론사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론중재위에서의 손해배상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한, 언론사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지 않고 용기 있는 자세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사전에 기사를 더 엄격하게 스크린하고 교육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다양해지는 매체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침해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언론사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박중순

(제2주제 발제자, 변호사, 서울제3중재부 중재위원)

신경민 위원님께서 통계 수치에 대한 질적 분석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역시 질적 분석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주 12번>에 위원회를 거쳐 가서 법원에서 판결된 사건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도 법원이 상당부분 위원회의 조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위원들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스태프들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재위원들이 사건에 임하기 전에 사건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스태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민 위원님의 지적은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적으로 피신청인은 나쁘고 신청인은 좋다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재부장님이 현직 부장판사님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입장과 피신청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다음 결정하고, 다른 중재위원님들도 공정한 마음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나쁘고 신청인은 좋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에서 발표했듯이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적절치 않고, 조정 시 신청인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1조에도 나와 있듯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책임을 적절히 비교형량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종근 국장님께서 법원에 언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결정과 관련해서 중재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발제문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변호사이지만 위자료 산정액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일정한 기준이 없고 각 사건들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중재부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생각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중재위원님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중재부장님이 현직 판사님이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을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언론사라고 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언론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종합토론 및 총평

### 【종합토론】

#### ■ 박수현 (강원신문 편집국장)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으로 심리에 나갔을 때, 중재부장과 중재위원들이 특정 언론사와 가진 친분을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언론사에 따라 중재위원의 자의적인 결정으로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중재위원들의 자질과 선정 기준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해에 지자체에 대한 기사를 다룬 적이 있는데, 피신청인으로 심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보도를 해주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중재위원들은 현재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반론보도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론, 정정보도를 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와 관련된 공무원과 업자가 구속되는 것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 결국 제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지만 중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 설원태 (경향신문 편집위원)

저는 김정탁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굉장히 수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정정보도가 1단으로 보도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오보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피해자가 언론사에 개인적으로 항의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항의로 인해 나간 것이 1단 기사 정도가 아닌지요? 개인적인 항의를 했지만 보도가 정정되지 않았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억에도 정정보도문 등에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중재에 의한 것’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의 정정보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언론사가 권위적 입장에서 오보를 통해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무마를 하고 가능하면 신문에 활자로 실리는 것을 피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로 잡습니다’ 등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면에 정정보도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지면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2면에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1단짜리 기사를 보면 뭘 잘못했느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 ■ 이종근

### (제2주제 지정 토론자, 데일리안 편집국 국차장)

저희에게 신청인이 반론에 해당하는 칼럼 혹은 논문을 신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와서 중재위의 조정 끝에 그것을 신졌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중재위원님들이 신문지면에 한정된 생각을 가지고, '해당 기사의 연속상에서 그 기사를 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는, 균등하게 노출되는 신문지면과 다르게 인터넷상으로는 한 화면 속에서 노출이 되는 기사의 양이 신문처럼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호의 칼럼 뒤에 반론보도를 실는 것은 도리어 신청인의 입장에서도 불리할 것이다. 반론보도문을 따로 송고하고, 1면에도 한 줄 기사로 기사의 제목을 노출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반론보도문과 원 기사 보도도 서로 링크를 걸어 독자들이 그 기사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링크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문화, 인터넷을 독자가 보는 행위에 걸맞게 링크라는 개념도 받아들여주실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총장)

저희 상담 중에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과 관련해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문을 신는데 인터넷 언론의 경우 한 화면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에 대해 한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들어갔을 때 보이는 것을 첫 화면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마우스를 쭉 내려서 끝까지 보이는 부분까지 그 기준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중에서 첫 화면에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반론이나 정정보도 판결을 받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사 닷컴에서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을 화면의 가장 하단으로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지요? 인터넷 언론시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피해상담을 하다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상담을 해주고 있으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정합의를 하면서 더 이상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피해구제를 충분히 받은 것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소송을 하고 싶는데 조정합의와 더불어서 더 이상 소송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인에게 조정합의와 부제소합의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신청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굳이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셔서 조정절차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

저는 중재위원회의 언론관련 인사들의 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에도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성향의 언론인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출신 기자들이 많았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조중동의 인사들이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균형이 맞춰져야지, 지금 언론사들이 자사이기주의, 보수·진보 성향으로 나뉘어 굉장히 분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언론관련 인사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장선 위에서 단순히 신청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언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언론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져서 뭔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이 단순히 기계적인 잣대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의 얼굴을 한 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소위 힘있는 자들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여 굉장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D수첩이 광우병 보도를 했을 때 외교통상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나 농민과 같이 힘없는 분들에 대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간의 얼굴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감싸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관이나 외교통상부나 힘있는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하여 중재신청을 하는 것은 언론사가 마치 몹쓸 짓을 한 것 마냥 생각되게 만듭니다. 중재위원회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배려를 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길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 안승환(신청인)

저는 쇠파이프로 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현재 정

직 3개월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 2일 KBS, MBC, SBS에서 제가 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더 아프게 때리려고 속치마를 벗게 했다고 보도했고, 이것이 포털사이트에도 퍼졌습니다. 그 뒤에 지인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알게 되었고, 접수 후 약 20일 만에 정정보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사장에 굴러다니는 쇠파이프로 때린 것 같이,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과정에서 한 언론사의 기자분을 빼고는 어떤 기자분도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니다. 어떻게 기자분들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습니까? 앞으로 보도할 때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 강지은(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발제자님 말씀 중에서 정정·반론보도문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근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회에서 포털전담 중재부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 중재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조금 더 실효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 연감이라던지 보도 자료들을 보면 조정신청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처리가 되었다는 측면은 굉장히 부각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이행이 됐는지 질적 분석까지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 이행까지도

국민들이나 다른 중재위원님들께서 많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위원들은 다들 언론계, 법조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굉장히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정기세미나 혹은 연구모임 등을 자주 가지시고, 실제 사례들을 책자나 다양한 형식으로 공유하여 다양한 사례 속에서 기준점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 김정탁

(제1주제발제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교수)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이 된 것이 지금부터 3년 조금 전입니다. 여기 저와 같은 중재부에 속했던 강영수 부장판사님도 계시지만, 언론인 출신들이 언론을 비판하고, 오히려 박종순 변호사와 강영수 부장님이 '어떻게 언론인 출신인데 저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것을 정말 좋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분 좋은 날이 정말 억울한 시민을 우리가 잘 구제했을 때, 학교 가는 길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는 끝나고 양 당사자간의 악수도 시킵니다. 정말 마음속에 화해가 이뤄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한번도 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이 바로 언론인입니다. 물론, 나쁜 신청인도 있고, 이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재판으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텐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왔기 때

문에 약하게 대응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재위원들이 모두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모든 문제를 선한 신청인과 악한 피신청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바마의 연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민주당에는 두 그룹의 애국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전을 찬성했던 애국자이고, 하나는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애국자입니다.'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언론인과 언론중재위원회의 관계는 완전 기사를 향한 동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말하자면 제재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고 완전 기사를 향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도와주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숫자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보도가 완전 기사에 가깝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인이 하나도 없을 때가 언론중재위원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언론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정중재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는 그런 숫자의 함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 권일(지정토론자, 서울제2중재부 중재위원)

박수현 편집국장님께서 지자체 관련하여 추후보도 청구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반론보도청구에 따른 반론보도 게재와 이후 추후보도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 알려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반론을 실어주는 게 보도의 원칙입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먼저, 취재원에 대해서 반론보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보도 게재를 결정한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혐의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론보도 게재해주면 안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 유종현 (MBC부장)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4번째,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텔레비전방송을 개국한 나라입니다. 텔레비전은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인데, 비주얼커뮤니케이션에 맞는 언론중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자초년병 시절, 매일 밤마다 경찰서를 돌면서 잡범들을 촬영해 수감 찬 모습을 방송으로 마구 내보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이런 방송을 하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초상권 침해라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사님은 제소된 사건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내용을 모두 살핀다고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사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했고, 각 방송사에 미리 주의를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5~6년 전, 수사기관 공보관님들, 인권변호사, 각종 시민단체들이 모여 개최된 세미나에서 제가 발제를 하였고, 당시 방송사들의 피의자보도 관행이 초상권 침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잡범들이 사법심리도 들어가기 전인 단순 피의자 신분에서 수감 찬 모습, 이름, 형사의 조서작성 광경 등까지도 촬영 당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지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문제제기에 알권리가 아니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초상권이 알권리입니까? 강력범죄, 마약범죄, 반국가범죄 등이 초상권 침해의 제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권리는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미나에서 이런 문

제제기가 있는 후 방송3사가 방송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시정하였고, OECD 회원국답게 방송을 만들어 내 보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시에 존재했었는데 뭘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언론중재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인 방송에 맞는 방송인·언론인을 위촉해서, 피신청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조정과 중재심리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소송으로 가는 것보단 낫다’며 ‘올며 겨자먹기’식의 수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준이라면, 이것만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김정탁

(제1주제발제자,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전공 교수)

언론중재위원회의 궁극적 수혜자가 언론인이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큰 액수로 언론사에 손해배상액 지급을 결정해도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문 닫게 되는 언론사도 생겨날 것입니다.

문제는 신청인들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재위원들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서 기계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편하지만, 언론사에서는 비명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대단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기사를 향한 동반자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법원에서도 언론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때, 피해자의 구제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공익적 이념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이념을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판결을 하는 부장판사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두 인용액의 차이가 13배가 된다는 사실은 구조적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김정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재부의 중재위원 상당수가 전직 언론인이고, 중재부장이 현직 부장판사인 상황에서, 손해배상 인용액이 법원의 13분의 1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중재부 구성원들이 손해배상 조정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일방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발제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인용액이 현저히 낮아지는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은지도 궁금합니다.

활성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당 중재위원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전직 언론인들이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손해배상액 결정에 있어서는 다소 인색한 듯이 보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일반인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참여하는 법원의 민사조정제도를 반영하여, 손해배상조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중재부의 구성을 분리하는 것은 어떨지 말씀드려 봅니다. 피해구제보도문 사건 담당은 전직 언론인에게 맡기고, 손해배상 조정은 전직 언론인을 배제하는 식으로 중재부의 구성을 달리하는 방법은 활성화방안의 하나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 ■ 이정명 (서울제1중재부 중재위원)

제가 심리를 해온 경험을 말씀드리면, 신청인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병합청구한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하게 되면 신청인이 만족하여 스스로 손해배상청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리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의견이 조정되어 손해배상금액이 당초 신청인이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에 관해 직권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손해배상은 거의 대부분 위자료이다. 그래서 조정에서의 주된 쟁점도 위자료 산정이다. 그런데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달리 산정 기준이 없다.’ 고 지적하시면서 ‘따라서 조정액을 정할 때 신청인의 청구 금액과 유사 사건에 있어 법원의 인용액을 모두 참고하여 피해자가 수급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발제자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둘째, ‘피해자가 수급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를 보다 구체화시켜, 적절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게 하는 산정기준 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박중순

(제2주제 발제자, 변호사, 서울 제3중재부 중재위원)

손해배상 활성화 방안 중에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언론분쟁소송의 경우, 우리 위원회와 법원이 연계

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 언론분쟁관련 소장을 냈을 때,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로 넘겨 미리 조정을 거치는 방안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일정한 민사사건을 먼저 조정으로 회부시킵니다. 변호사들이 그 사건을 맡아서 조정이 성립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 연계하여 언론조정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재위원이 언론 쪽에 우호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중재부 내에 그런 편향성은 존재하지 않고, 사건 그 자체에 대해서만 심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보호를 적정히 형량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이미 발제문에서 밝힌 조정액이 낮은 이유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액이 낮은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사건에 관해 중재부 구성을 달리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2005년 최초로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때, 반대하는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4일 이내에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분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정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법원 내에 위자료에 관해서 산정기준은 없으나 일응의 기준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 신분, 언론보도 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또 그 사람이 공인인지 아닌지가 일응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보도내용이 어느 정도 공익성을 띄고 있는지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권이 침해된 계기의 유형이 일률적이지 않은 만큼 저 역시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법원의 판사님들께서 언론분쟁소송과 관련해 쓰신 논문을 보게 되면, 위자료가 보통 1,000만 원 정도라 밝히고 있고, 평균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판례상으로 축적된 금액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수궁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은 중재위원들도 위자료 산정액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사건을 심리, 결정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산정액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찬성합니다.

## ■ 양종우 (KBS 사내변호사)

현실적으로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도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000만 원이고 억대가 넘는 경우도 많지만, 법원에서는 대부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으로 결정이 납니다. 이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신청인의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정액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직권조정결정을 장려하면서 과감한 조정금액을 정하여 직권조정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 손해배상액을 낮게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직권조정결정을 할 때 과감히 조정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낮게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 장진훈

(서울제2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금 손해배상액 기준 등에 관해 말씀해주셨는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은 5,000만 원이라든지 1억의 금액 등으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정말로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법원 안에서도, 판사들이 다른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형평성을 맞추어 금액을 정할 뿐이어서 일률적인 기준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그 작업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상권, 인격권 등의 유형별이라도 어느 정도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정이 다를 때마다 이를 감안하여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구성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재부가 5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2인의 언론인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참고하게 되고, 이로써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부문에 있어서는 언론인 외에도 법률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게 되고, 중재위원이 언론인 출신이라고 해서 그에 관해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도문 뒤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는 문구를 최근에는 신고 있습니다. 언론기관들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의 중재부 등을 분리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돼야 조정이 되지, ‘이것은 정정보도만 합의하고 손해배상은 나중에 하자’는 식의 결정을 언론기관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분리하여 하나는 조정을 하고 하나는 직권조정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조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정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역시 이 제도는 언론계 쪽에 계신 분들께 유리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패널구성을 고려해 볼 때도 언론계의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 세미나에서도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는 오히려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논리적인 문제라든지 충분히 대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언론 측에 많이 계시는 만큼,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언론계에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와 기관 혹은 정부기관인 경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잘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재제도 안에서도 이 두가지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구제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되기까지는 충분한 구제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밝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총평】

### ■ 권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자리를 지키며 발제를 들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및 위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6월 충남 부여에서 중재위원워크숍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해 계신 어경택 위원께서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정정보도문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또 지난번 워크숍을 마친 뒤에 중재위원 여섯 분을 모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4차례 회의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피해구제보도문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였고, 이미 개략적인 보고서 구성을 마쳤습니다. 한 두 차례 회의를 더 가진다면 보고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좀 더 실효성을 가지도록 실무적인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앞서 언론사 관계자

들이나, 중재위원들의 협조를 구해 그것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먼저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며, 그 이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조만간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하며, 또한 언론인권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사를 압박하여 굳이 손해배상액을 많이 올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배상 금액이 올라가면 그야말로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손해배상 금액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언론사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많이 청구하라고 먼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그 흐름에 맞추어 적절한 균형을 취하기 위해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언론사 관계자들에게서 깊이 이해하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우선 증거조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면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증거조사를 적절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증거방법에 따라 위원회로서는 전문적인 감정을 요하거나 외국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것처럼 불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방법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사태의 진상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권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14일의 조정 처리기간이나 21일 이내로 명시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기간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처리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증거조사는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를 위해 1~2개월을 소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 위원회가 3~4차례 기일을 속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정도의 증거는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몇 주 전에 임병렬 부장판사님께서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거조사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액수 비교가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량적으로만 본다면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액은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원회 증거조사의 결여입니다.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사실을 가지고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는 위원회와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법원에 제소되는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사건입니다. 주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은 법원에 제소되는 중대한 손해배상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사건의 성질이 다름에서 오는 액수의 차이임을 참석자들께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다만, 종전에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도용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

다. 또한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또 신청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상징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0, 15만 원 정도의 액수는 일반 상식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커지고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자고 하는 것이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수를 높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이정명 위원님께서 손해배상액수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위자료에 대한 확정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개는 선례가 기준이 됩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서 선례와 균형이 맞게 손해배상액수를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선례를 조사해서 그 사건과 비교해 경중을 따져 상식선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도 2008년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 팀장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손해배상액산정표'라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1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마다 3~4개의 세목으로 분류하여 각 세목마다 배점을 하고 조사관들로 하여금 채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채점은 곤란하므로 점수부여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미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과제는 조사, 분석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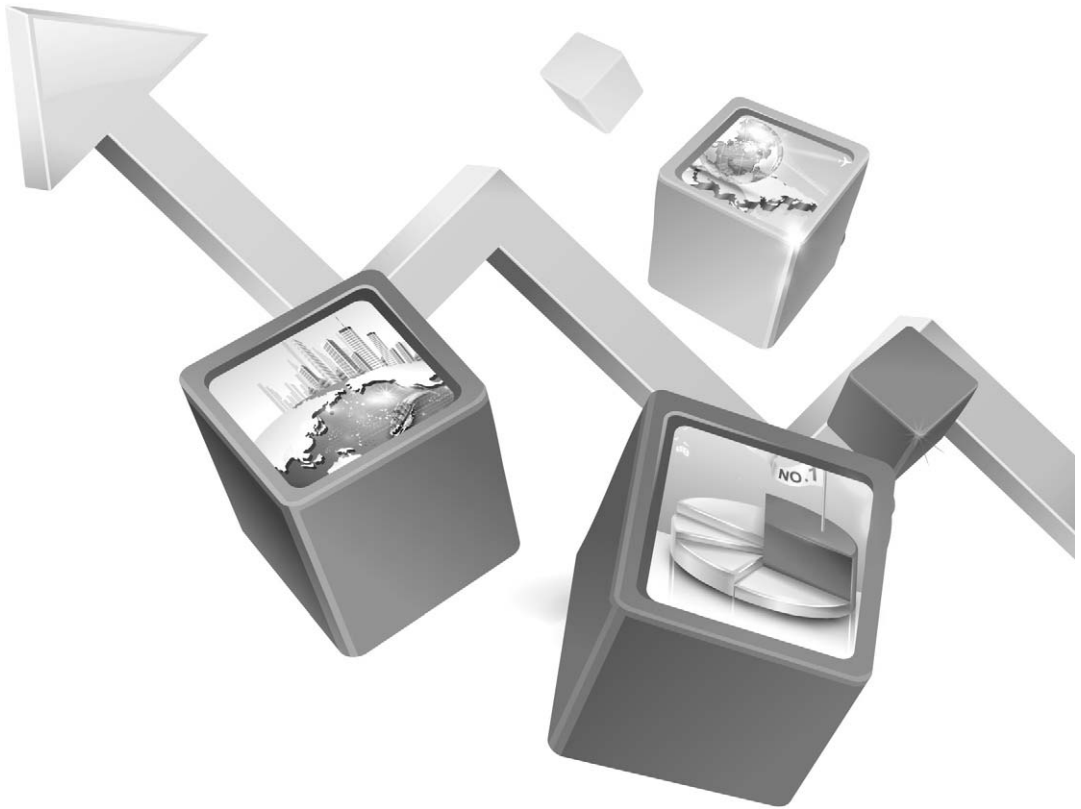
를 기초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어떻게 확정적인 손해 배상 산정표를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산정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고 중재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을 분리해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포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전담부를 운영하는 방안에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이 독립적으로 청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정정이나 반론보도와 연계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만 별도의 사실로 인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이때 문제된 사실을 기초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만을 분리하는 것은 너무나 작위적이므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제도 운영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세계 유일한 제도이며 훌륭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화자찬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미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출범당시 군사정권에서 만든 제도이므로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의심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많은 제도들이 명멸해 갔지만 위원회는 오랜 역사를 갖고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들은 이 제도가 비교적 성공한 제도라고 인식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

조정중재제도는 지난 30년간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왔고, 앞으로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기자협회 우장균 회장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 불신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외부의 압력성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참석자들 모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논문

# 언론중재법 상 '언론' 개념의 새로운 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PAC

## 언론중재법 상 ‘언론’ 개념의 새로운 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변호사

김창숙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연구팀, 언론학 박사

### I. 들어가며:

#### 언론중재법 상 ‘언론’ 개념의 특이성 ①

사람들이 흔히 ‘언론(言論)’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뉴스’ 또는 ‘기사’ 이거나 이것들을 제작·공표하는 주체라 할 수 있는 ‘언론사’ 내지는 ‘언론인’ 일 것이다. 언론법 분야에서 ‘언론분쟁’ ‘언론조정’ ‘언론중재’ ‘언론소송’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언론’ 역시 대체로 ‘기사’와 관련이 있거나 ‘언론사’와 소속 ‘기자’가 당사자로 연루되어 있는 분쟁 등을 의미한다. ‘언론’이라는 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간행하는 책 제목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sup>1)</sup> 언론 개념의 일반적인 용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언론 개념의 일반적인 용례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언론 개념은 서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한다)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론’을 매체 중심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언론”이라 함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언론의 개념은 언론중재법 내에서 ‘언론사’, ‘언론보도’라는 또 다른 개념으로 확장된다.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

“언론보도”라 함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의한 보도를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15호)

이상의 세 규정을 종합해보면, 언론중재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언론’의 개념이 일반적인 용례와 전혀

1)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이라든가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와 같은 간행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은 ‘뉴스’ 또는 ‘기사’도 아니고 ‘언론사’도 아니다. ‘뉴스’ 또는 ‘기사’에 가장 근접한 언론중재법 상의 개념은 ‘언론보도’라 할 수 있다. 또, 언론중재법은 ‘언론’과 ‘언론사’마저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언론사’는 뉴스나 기사를 사업으로서 제작·공표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별도의 용어인 것이다.

한편, 헌법에서 언론은 ‘말하는 것(speech<sup>2)</sup>’, ‘표현행위(expression<sup>3)</sup>’ 등으로 해석하고 있어 보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초점을 두어 정의하고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매체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상 무리가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혹은 ‘말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언론이 독립된 영역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역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온 분야라고 볼 때, 헌법의 정의가 언론 본연의 의미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21조 상의 언론을 출판과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전달하고,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접수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전파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sup>4)</sup>, 구두에 의한 표현을 언론으로, 문자 및 상형에 의한 표현을 출판으로 구분하여 보기도 한다<sup>5)</sup>. 세부적인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정보 전달의 매체로서 이해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표현행위 자체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같은 법적 개념 정의이지만 언론에 대한 헌법적 정의와 언론중재법에서의 정의가 사뭇 다르다. 헌법에서는 언론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반면, 언론중재법에서의 정의는 표현행위를 지향하지 않고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를 내보내는 매체를 나열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박기성(2004)<sup>6)</sup>은 이와 같이 매체 자체를 언론으로 일반화하여 호칭하는 행위는 언론계보를 근거로 했을 때 지나치게 축소지향적 시각이며 재각성을 요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언론중재법은 지난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후 이미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특히, 2009년 2월 6일 개정을 통해서 그 대상 영역에 종전의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외에 흔히 포털뉴스라 부르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의 법률적 명칭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새롭게 추가시켰다. 언론중재법은 환경의 변화를 적극 수용, 발전하고 있

2)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영문법령 사이트(<http://elaw.klri.re.kr>)에 올라와 있는 영문 헌법에 따르면 헌법 제21조 제1항 상의 언론의 자유를 ‘freedom of speech’로 번역하고 있다. 한편, 같은 항에 있는 출판의 자유는 ‘freedom of press’로 번역되어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작한 영문홍보책자 Press Arbitration Commission에서는 언론을 ‘press’로 번역하였다. 언론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번역이라면 전자의 태도가 보다 합당하다 생각한다.

3)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제는 ‘freedom of religion, press, expression’로서 표현의 자유로 번역할 수 있는 문항이 등장한다.

4) 허영 (2005). 한국헌법론. 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543쪽

5) 김철수 (2006). 헌법학신론. 제16전정신판, 서울: 박영사, 525쪽

6) 박기성 (2004). ‘언론출판 개념의 계보와 제도화’, 2004년 한국언론학회 전환기의 한국언론 세미나 발제문, 2004, 7, 15~42쪽

“헌법에서는 언론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는 반면, 언론중재법에서의 정의는 표현행위를 지향하지 않고 언론사의 기사나 뉴스를 내 보내는 매체를 나열하는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는 법이다. 그러나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매체 중심의 언론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가 현실에 적용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가? 특히 매체간 통합(media convergence),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멀티소스 원유즈(multi source one use) 등과 같이 미디어 혹은 콘텐츠 간의 통합과 분리가 매우 유연한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무리 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 또한, 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언론중재법 내부적으로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와 서로 충돌하는 규정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은 기존의 매스미디어 환경 하에서 정립된 언론중재법 상의 개념을 뉴미디어 환경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모순점 등을 탐색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자 함이다. 이런 사항들이 당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미디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뉴미디어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언론조정중재제도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미리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언론중재법 상 ‘언론’ 개념의 문제와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 또한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 II. ‘언론’ 개념의 정의 방식에 대한 연혁적 검토



### 1. 언론기본법 이전 시대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언론기본법에는 현행 언론중재법에 있는 언론에 대한 정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의 규정이 최초로 등장한다. 이 언론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언론매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 등이 있었다.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었다(법 제1조). 이 법률 제2조에서는 일반일간·주간신문, 특수일간·주간신문, 통신 등 다양한 용어의 개념에 대해 정의내리지만 언론에 대한 정의는 없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평론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특수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정치를 제외한다)·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수부문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평론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어일간신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평론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일반주간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평론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

로 매주 1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특수주간신문”이라 함은 산업·과학(정치를 제외한다)·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수부문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평론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매주 1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주2회 또는 월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통신”이라 함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평론 및 여론 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송수신 또는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7.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되 제1호 내지 제6호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그 인쇄책임자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정기간행물에 있어서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인쇄책임자 또는 발행인과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계약을 체결한 인쇄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은 방송법, 언론윤리위원회법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언론이라는 용어가 전면에서 부각되어 있는 언론윤리위원회법<sup>7)</sup>에서조차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다.

비슷한 시기에 제정되었던 이들 세 가지 법률<sup>8)</sup>은 같

은 날짜, 즉 언론기본법의 제정일인 1980년 12월 31일 모두 동시에 폐지되었다.

## 2. 언론기본법 시대

### 가. 언론기본법 제정 배경

언론기본법 제정일인 1980년 12월 31일에 약 두 달 앞선 10월 27일, 제8차 개정 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발효되었다. 이른바 ‘제5공화국헌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 헌법은 과거의 독재주의통치체제를 청산하려는 명분에서 준비되었던만큼 유신헌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가해졌다<sup>9)</sup>.

우선, 전문에서 제5공화국의 출범을 명시하고, 총강에서 전통문화의 창달과 재외국민투표, 국가의 정당보조금 지급, 국군의 사명조향을 신설하였으며, 기본권조항에서는 개별유보조항을 없애고<sup>10)</sup> 대체로 제3공화국시대의 것으로 복귀하였으며, 연좌제금지·사생활비밀·환경권·행복추구권·적정임금보호조항 등을 새로 추가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관해서는 유신헌법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제한하였으며,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7년 단임제로 했다. 국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비례대표의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었다. 그 밖에도 독과점금지·중소기업보호·소비자보호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부칙에서 과도입법기관으로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규정하고 소급적으로

7) 언론윤리위원회법 제1조에서는 해당 법의 목적을 ‘신문방송 등 언론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언론윤리위원회와 언론윤리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언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은 1964년 1월 1일에, 언론윤리위원회법은 같은 해 8월 5일에 각각 제정되었다.

9) 김철수, 앞의 책, 53쪽

10) 1972년 12월 27일 공포·발효된 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에서는 여러 기본권조항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는 식의 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의 제한이 보다 용이했다. 법률유보조항이 없는 기본권조항은 종교, 양심,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정도뿐이었다.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이러한 법률유보조항을 모두 없애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식으로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언론기본법에서 언론은 정기간행물(신문 및 통신), 방송과 같은 하위 개념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에 해당된다.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 이후 다시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하위 개념들에 대해 다시 정의하여 언론매체 각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참정권을 제한하는 특별입법의 근거를 명시했다<sup>11)</sup>.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헌법적 한계규정인 제20조 제2항(현행 헌법 제21조 제4항)이 신설되었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의와 기능에 대해서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적 가치로 보호하면서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자칫 사회통합의 분위기를 해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가 넘어설 수 없는 헌법적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sup>12)</sup>.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억압의 근거로 악용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개정 헌법의 발효와 동시에 구헌법에 의한 국회는 해산되었다. 대신, 새 헌법에 의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할 ‘국가보위입법의회<sup>13)</sup>’, 가 1980년 10월 29일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각종 헌법부속법률<sup>14)</sup> 및 일반 법률에 대한 입법활동에 들어갔다. 언론기본법 역시 국가보위입법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 중 하나로서 같은 해 12월 31일 공포되었고, 곧바로 발효되었다.

## 나. 언론기본법에서의 ‘언론’에 대한 정의 방식과 그 특징

언론기본법이 국가보위입법의회에 의해 제정된, 비민주적 개혁법률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여러 긍정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8조에서 취재원 보호 규정을 둬으로써 기자로 하여금 취재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해당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항이다<sup>15)</sup>.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 또한 언론기본법에 의해 새롭게 시도된 것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언론”이라 함은 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 발행과 방송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여기서 언론은 정기간행물(신문 및 통신), 방송과 같은 하위 개념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에 해당된다. 언론

11) 김철수, 위의 책, 53쪽

12) 허영, 앞의 책, 554쪽

13) 국가보위입법의회는 그 활동 다섯 달 동안 헌법부속법률뿐 아니라 무려 189건의 일반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이때 만들어진 많은 법률들(국가보안법, 언론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은 그 후 인권을 탄압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법률이 개정 내지 폐지되거나 일부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인되어 효력을 정지당했다.

14) 헌법부속법률이란, 헌법시행에 필요한 각종 법률로서 대통령선거법·정당법·국회법 등이 이에 해당된다.

15) 이승선 (2011). 언론조정·중재, 30년간의 전개와 성과. 『언론중재』, 2011년 봄호(통권 118호), 7쪽.

기본법에서는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 이후 다시 신문, 통신, 방송과 같은 하위 개념들에 대해 다시 정의하여 언론매체 각각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언론기본법에서 말하는 ‘언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행위 그 자체가 아닌, 표현행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매체 또는 그 발행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언론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언론기본법에는 이와는 다른 의미로 읽히는 언론 역시 등장한다.

**제2조(언론의 자유 등) ① 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2조 표제에 사용된 언론이라는 용어는 국민 누구나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 지득한 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위 조항 후단에서는 알 권리, 즉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정보의 자유’ 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 내지는 알 권리를 통해서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손에 쥌 수 있을 때에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6)</sup>.

사실 입법기술적인 관점에서 언론기본법이 굳이 언론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었다. 신문이나 통신, 방송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필요했다면 ‘언론사’라고 하면 충분할 일이다. 실제 언론기본법에는 ‘언론사’와 유사한 용어라 할 수 있는 ‘언론기업’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 언론인을 정의하며 직업적으로 보도·논평 기타의 방법으로 언론활동에 참여하여 사상 및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언론기업’의 종사자라 했고, 발행인 역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기업’의 대표자라고 했다(제2조 제9호, 제10호). 제3장의 표제는 아예 「언론기업과 언론인」인데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언론사가 법인의 형태를 취해야 했다<sup>17)</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언론기본법에서의 언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언론기본법에서의 언론에 대한 정의는 헌법상의 언론 개념 및 언론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의 언론 개념과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작위적<sup>18)</sup>이다. 둘째, 입법기술적으로 언론인, 언론기업 등 언론을 기반으로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그 개념을 정의내렸다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sup>19)</sup> ‘언론사’ ‘언론기업’ 등 다른 용어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했다.

16) 허영, 앞의 책, 545쪽

17) 언론기본법 제11조(언론기업의 경영) 법인이 아니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행할 수 없다. 다만, 특수일간신문, 특수주간신문과 신문, 통신이 아닌 정기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 언론기본법이 시행되었던 당시, 정부가 주도한 언론사 통제법과 기사에 대한 검열,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비판적인 기사들에 대한 해고 등 비민주적인 일들이 벌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력의 속성상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기보다 통제하고 검열해야 할 대상이었을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사에 대한 통제에 성공한 당시의 정부가 의도적으로 언론의 의미를 언론사의 그것으로 축소시키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19)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언론의 자유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의 자유에는 언론사가 자유롭게 취재하고 보도할 수 있는 자유도 들어 있다. 그러나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저널리즘의 기본요소』라는 책에서는 ‘저널리즘의 첫째 목적은 시민에게 그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다(빌 코바치·톰 로젠스탈, 이종욱, 27쪽, 한국언론재단, 2003). 저널리즘적 측면에서도 언론사의 자유가 국민의 자유에 기여, 봉사해야 한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 그러므로 언론기본법에서 ‘언론’을 ‘신문, 방송, 통신’과 같은 언론매체로 정의한 것은 그 입법 취지가 무엇이든시간에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법이 제정되었던 당시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으며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는 보장되지 못했다.

“사실 입법기술적인 관점에서 언론기본법이 굳이 언론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는 없었다. 신문이나 통신, 방송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필요했다면 ‘언론사’라고 하면 충분할 일이다.”

### 3.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 언론중재법 제정 이전 시대

1987년 11월 28일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 말 언론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던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의 후속 법률이 다시 제정되었다. 물론, 과거와 다소 달라진 점도 있었다. 방송법은 이전의 명칭 그대로 제정되었으나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기간행물법’이라고 한다)로 그 명칭이 달라졌다. 또, 언론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정기간행물법, 방송법에 각각 이식되었다.

이들 새로운 법률에는 언론기본법 제정 이전 시대와 같이 언론에 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정기간행물법에서는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방송법에서는 ‘방송’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을 꼽는다면,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에서 ‘언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기간행물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 제41조(반론보도청구권) ①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방송국에 서면으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는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론보도청구권<sup>20)</sup>을 최초로 규정한 바 있는 언론기본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상대방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를 지정했다(언론기본법 제49조). 이것은 언론기본법 폐지 이후 위 법률상의 「침해에 대한 구제」장이 정기간행물법, 방송법에 이식된 이후에도 동일했다<sup>21)</sup>. 그러다가 1995년 말에 이르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반론보도청구권의 상대방을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로,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국으로 정했다. 이러한 형식의 반론보도청구권 관련 규정은 현행 언론중재법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유지되고 있다.

20) 이 권리의 언론기본법상의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이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다. 오히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반박 내지는 입장을 실어주는 것에 불과한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해 언론보도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반박권”을 뜻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65 결정).

21) 정기간행물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당시 법률상의 명칭은 ‘정정보도청구권’이었다)의 상대방으로 발행인이나 편집인, 방송법에서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로 지정했다.

언론기본법 이후 자취를 감췄던 언론에 대한 정의가 다시 등장한 것은 2005년 1월 27일 제정·공포된 언론중재법에서다.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언론중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률에 대한 열망이 있었음<sup>22)</sup>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서 민법,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던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화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제도를 담은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정기간행물법, 방송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했다. 우선, 정기간행물법

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대대적인 내용상의 개정이 뒤따랐는데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인터넷언론매체 중 일부를 '인터넷신문'으로 규정 한 것<sup>23)</sup>은 획기적인 성과였다. 또, 기존 정기간행물법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구제 관련 규정이 언론중재법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모두 삭제되었다. 방송법의 경우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정기간행물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sup>24)</sup>. 이로써 적어도 언론보도로 인한 민사상의 청구권과 그 분쟁해결절차는 대부분 언론중재법 안으로 모아졌다. 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언론에 대한 정의 규정도 다시 등장한다.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의 범주는 조정 및 중재대상의 확대에 의해 언론기본법에서의 그것보다 더 넓다. 언론기본법 시대에 언론이라 함은 정기간행물·뉴스통신<sup>25)</sup>·방송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되었다. 언론중재법 시대에 이르러 언론은 정기간행물·뉴스통신·방송·인터넷신문 크게 네 가지 부류로 구분된

22) 양삼승 (200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005년 봄호(통권 94호), 5쪽; 양경승 (2004).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언론중재』, 2004년 가을호(통권 92호), 8쪽

23) 신문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했다. 우선,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했으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했다.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는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인터넷언론매체는 학자들 사이에서 '독립형 인터넷신문'으로 분류되던 것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매체로서 영향력이 지대했던 언론사닷컴 및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그 후 이루어진 언론중재법 및 신문법의 개정으로 많이 좁혀졌다. 이제 언론사닷컴(방송사닷컴은 제외)은 인터넷신문이 되었고,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방송사닷컴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로서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적으로 법적 논의와 검토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 트위터로 대변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다. SNS에 올라온 글들이 언론보도에 준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4) 방송법상의 해당 규정의 삭제는 다음과 같은 언론중재법 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 제1항 제25호를 삭제한다.

25) 오늘날 정기간행물과는 별개의 언론매체로 취급되는 '뉴스통신'이 언론기본법에서는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통신 기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되는 계속적인 간행물'이라고 하여 정기간행물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관행은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다. 2003년 5월 29일 뉴스통신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 비로소 뉴스통신이 정기간행물의 범주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비록 언론기본법에서 뉴스통신을 정기간행물의 하나로 취급했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는 뉴스통신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정기간행물과는 다른 언론매체로 간주하여 서술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 방식 역시 언론기본법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 개념 정의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다. 여기에 더하여 언론중재법에서는 유사 언론매체라 할 수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도 규정하고 있다<sup>26)</sup>.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제2조 제18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제2조 제20호)

언론매체의 기사나 방송을 매개·전파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이들 새로운 매체에 대해 언론매체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일단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매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었다.

포털이 언론매체인지는 상징성이 큰 쟁점이다. 언론매체란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신문, 방송, 뉴스통신과 같이 기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전통적인 언론매체와는 달리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고 유통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언론매체

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또, 어떤 매체가 유통·보급하는 기사가 반드시 자신이 생산한 기사여야만 언론매체 가 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제기도 가능하다.

## 5. 소결

지금까지 있었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 관련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등 여러 매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경우와 각각의 매체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피해구제제도가 산재되어 있는 경우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법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방송법, 정기간행물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등이다.

언론중재법과 언론기본법은 피해구제제도 규정 방식에 있어서 같은 유형에 속한다. 언론중재법은 언론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언론보도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구제제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 방식 역시 언론기본법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 개념 정의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언론기본법 상의 ‘언론’ 개념 정의 방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6)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는 해당 개념들이 없었으나, 2009년 2월 6일 개정된 언론중재법에서부터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 1. ‘언론’ 개념의 확장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법익을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sup>27)</sup>. 이러한 목적 하에 언론중재법은 총 4개의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피해구제의 원칙과 같은 총론적인 사항들에 대해 규정한다. 제2장에서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직, 재원, 그리고 법정업무가 다루어진다. 제3장은 침해에 대한 구제편으로서 다섯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론중재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실체법적 성격이 강한 제1절은 주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의 구성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절부터 제5절까지는 각각 언론보도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성격에 따라 조정과 중재, 소송, 그리고 시정권고로 구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몇 가지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가진 언론중재법 하에서 언론의 개념은 그 자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몇 가지 다른 중요한 개념들로 확장된다.

먼저, 언론의 개념은 언론사(제2조 제12호)의 개념으로 확장된다.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한다. 즉,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 이 언론매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언론사’ 는 이들 매체를 발간하거나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주체를 의미한다.

‘언론보도’ 라는 용어도 ‘언론’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보도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제2조 제15호).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언론보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 즉 신문 등 정기간행물,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에 해당되어야 한다<sup>28)</sup>. 만일 이들 언론매체를 매개체로 삼지 않는 사실적 주장<sup>29)</sup>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론보도’ 라 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언론’ 의 개념은 ‘언론 등’ (제5조 제1항)으로, ‘언론사’ 는 ‘언론사 등’ (제14조 제1항)으로, ‘언론보도’ 는 ‘언론보도 등’ (제7조 제1항)으로 변형되어 사용된다. 그런데 이들을 ‘언론’ 개념의 확장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언론 등’ 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의 줄임말이다.

27) 언론중재법 제1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28) 문법적으로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에서 ‘언론의’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 일상적인 언어 관습에 따라 ‘언론’ 을 보도의 주체로 해석한다면, 언론매체를 뜻하는 제2조 제1호상의 ‘언론’ 개념과 충돌한다. 언론중재법에서 보도의 주체는 제2조 제12호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사’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에서 ‘언론의’ 는 보도의 매개체로서의 ‘언론’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 가 곧 ‘언론보도’ 라 하겠다.

29) 예를 들어, 한 시민이 포털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최근 일어난 반값 등록금 시위상황과 시위에 대처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글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경찰 측이 정보보도청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우선, 정보보도청구는 언론사에 대해서 할 수 있으나 글을 올린 시민이나 해당 사이트 관리주체인 포털사이트가 언론사가 아니어서 정보보도청구는 불가하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은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언론보도’ 가 아니다. 사실적 주장을 펼친 것은 맞지만, 그 매개체가 언론중재법에서 인정하는 언론매체(신문, 방송, 뉴스통신, 인터넷신문)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에 의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또한 철저히 이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언론’의 개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언론사 등’은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줄임말이며 ‘언론 보도 등’은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의 줄임말이다.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이들 세 가지 용어들을 매번 똑같이, 길게 기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이다.

결국, 언론중재법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언론’과 ‘언론사’, ‘언론보도’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언론사’와 ‘언론보도’가 ‘언론’의 개념을 기반으로 확장된 것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개념이 가장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언론분쟁의 범위 설정기능

언론중재법의 목적이 언론보도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법익을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제도를 확립하는 데에 있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언론중재법은 여러 민사적인 분쟁 중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해 빚어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언론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 영역은 광범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적 기사로 인해 발생한 기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도 언론분쟁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또, 언론보도가 내용적으로 문제된 사건이 아니라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주거침입과 같은 문제도 언론분쟁의 영역에 속한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초상권 침해도 언론분쟁이라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은 이들 언론분쟁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다루는지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중재법에서 다루는 언론분쟁의 범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특히 의미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사적 성격의 언론분쟁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은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 두 기관밖에 없다. 이 중에서 법원의 경우 재판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정이 다르다.

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었다. 언론중재법에 의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또한 철저히 이 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법에서 정한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건의 조정이나 중재의 결과에 재판상 화해<sup>30)</sup>나 확정판결<sup>31)</sup>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sup>32)</sup>이다.

‘언론’의 개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설치의 근거규정인 제7

30) 언론중재법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조 제1항에서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있다.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것이 아닌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범위 밖에 있다.

조정이나 중재신청사건의 범위는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제1항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들 규정을 종합해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이나 중재로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언론보도 등에 관한 분쟁이어야 한다. ‘언론보도 등’에 관한 분쟁의 범위는 ‘언론 등’의 범위에 의해 정해지고, 언론 등의 범위는 ‘언론’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론보도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이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 업무 중 하나인 시정권고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범위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시정권고의 대상 범위 역시 ‘언론의 보도’인 것이다.

결국,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의 개념은 ‘언론보도’ 내지는 ‘언론 등’의 용어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기

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성립요건 구성기능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각각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사항들은 다분히 실체법적이다. 분쟁해결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권리의 성립요건, 권리능력 범위의 확장<sup>33)</sup>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모두 ‘언론’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성립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sup>34)</sup> 성립하며, 추후보도청구권은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성립한다. ‘언론보도 등’ ‘언론 등’의 용어는 모두 ‘언론’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31) 언론중재법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2)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나 중재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 신청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이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아닌,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해당 사건에 대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실체가 있으며, 이 당사자 간 합의는 내용상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에서 부여하는 보다 강력한 효력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은 이 당사자 간 합의가 조정이라는 공적인 절차에서, 부장판사를 포함하여 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중재위원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공적인 절차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조정으로 끝났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절차에서 비롯되는 강력한 효력은 더 이상 부여시킬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처럼 법정 범위를 벗어난 사건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나마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재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같이 당사자 간 합의라는 실체마저 없는 경우는 문제다. 해당 결정에 언론중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재판상 화해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조정성립의 경우와 같이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라도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3) 언론중재법 제14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34) 법문상 반론보도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 보도의 허위성 유무라 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지만, 반론보도청구권에는 그와 같은 요건이 없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권은 원 보도의 진실 여부를 떠나 보도와 피해자 간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성립된다 하겠다.

“언론보도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이외에 언론중재위원회의 또 다른 중요 업무 중 하나인 시정권고와 관련해서도 ‘언론’의 범위는 업무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4. 소결

결국, 언론중재법 내에서 언론의 개념은 해당 개념에서 파생, 확장된 다른 개념들인 ‘언론사’ ‘언론보도’ ‘언론보도 등’과 함께 이 법에서 다루어지는 언론분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중재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동시에,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권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특수한 청구권들의 성립요건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기능한다. 이들 권리의 성립요건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절차뿐만 아니라 법원에서의 정정보도청구소송 및 반론·추후보도청구사건과 같은 재판절차에서도 유의미하다.

## IV. 매체 중심의 ‘언론’ 개념의 문제와 그 한계



### 1. ‘매체’로서의 언론과 ‘보도주체’로서의 언론 개념의 혼재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을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즉 언론매체를 나열하며 정의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보도의 주체나 콘텐츠가 아닌 보도의 전달 수단이다. 동법 제2조 제11호나 제15호에서 ‘언론사’나 ‘언론보도’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언론’의 정의가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을

보도행위의 주체인 ‘언론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규정 등이 있어 개념의 혼선을 가져온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제5조(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위의 조항들에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 개념을 적용한다면 결국 보도의 수단에 불과한 언론매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언론매체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이런 의무와 권리는 보도행위를 하는 주체, 즉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우리

가 흔히 ‘언론사’라 부르는 사업주체들이거나 취재 및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몫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문제되는 용어들을 정의에 부합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 제3조를 예로 든다면, 그 표제를 ‘언론사의 자유와 독립’으로 바꾸고 언론사가 취재나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의 규제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는 내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sup>35)</sup>.

다른 한편으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는 굳이 ‘언론’을 정의한 것에서 온 불편함일 수도 있다. 위의 조항들을 보면, 특별히 ‘언론’을 ‘언론사’로 바꾸지 않아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을 굳이 정의해 놓지 않더라도 언론을 때로는 언론사로, 언론인으로 혹은 언론매체로 유연하게 해석하며 읽을 수 있다. 일상에서 언론이란 단어는 무수히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읽어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언론의 의미를 유연하게 사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언론의 정의를 굳이 언론매체로 국한해 정의해 놓는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개념의 유연성을 오히려 법규가 축소시키고 고정시켜 해석의 어색함과 법규 내의 용어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다.

## 2. ‘언론보도’ 개념의 비활용

언론중재법은 제2조 제15호에서 ‘언론보도’의 개념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언론보도는 제

6조 제2항에서 단 한 차례 사용된 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제6조 제2항 제2호)**

위 조항은 일부 언론사들<sup>36)</sup>이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언론중재법 본연의 목적 내지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다.

물론, ‘언론보도 등’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이 ‘언론보도 등’의 개념은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서 언론에서 파생한 개념이지 언론보도에서 확장된 개념은 아니다. 결국, 언론중재법은 제2조 제15호에서 ‘언론보도’에 대해 개념 정의를 내려놓고도 정작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 3. 뉴미디어 언론 환경 하에서의 매체 중심의 ‘언론’ 개념의 문제

매체 중심의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가 가져온 또 다른 측면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언론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의 미디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도래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매스미디어 체제 하에서 정립된 매체 중심의 구분법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매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기존 미디어만 보더라도 198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가능했다.

35) 한편,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해 굳이 이들 규정이 언론중재법에 있어야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의 목적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러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분쟁을 해결하거나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제3조와 제4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규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언론기본법 역시 제3조에 ‘언론의 공적 책임’이라는 표제의 규정을 둔 바 있는데 언론기본법에서는 그나마 ‘언론’에 대한 정의 규정(제5조 제1호) 앞에 해당 규정을 둬으로써 매체 중심의 언론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으로 모순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다.

36) 여기에 해당하는 언론사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기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다.

“기존의 미디어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도래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매스미디어 체제 하에서 정립된 매체 중심의 구분법으로는 정의하기 어려운 매체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 신문 = 신문지, 방송 = 텔레비전

그러나 현재는 아니다. 더 이상 신문은 종이신문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정보처리 방식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매체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동일한 콘텐츠를 여러 종류의 미디어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종 미디어간의 결합 즉, 한 미디어 내에서 신문과 방송 등을 모두 볼 수 있는 신개념 미디어도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일 아침 집 앞으로 배달되는 종이신문을 펼쳐보는 것은 신문을 읽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이며, PC나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이종 미디어들도 신문독자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송은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DMB 등 여러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를 각 가정에 놓여있는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DMB 서비스가 되는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얼마든지 다른 미디어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 KBS 9시뉴스를 시청한다고 해도 모두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21.4%밖에 안 된다고 한다<sup>37)</sup>. 그렇다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가구들은 종합

유선방송을 보고 있거나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을 보고 있는 것이다<sup>38)</sup>. 여기에 최근 들어 IPTV까지 더해졌으니 방송의 종류는 생각보다 복잡다단하다.

현행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종류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네 가지다.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언론중재법 제2조 제2호)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방송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방송보도 관련 피해구제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방송 유형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디어간의 정보처리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특정의 매체를 위해 생산한 콘텐츠는 그 매체를 통해서만 보도될 수 있었다. 즉, TV방송을 위해 만

37) 미디어오늘 2011. 5. 18.자10면, ‘남아도는 주파수 팝니다? 방통위의 3가지 거짓말’ 제하의 기사

38) 위 기사에 따르면, 유료유선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가 67.7%나 되고 유료 위성방송 서비스에 가입한 가구도 10.9%에 이른다.

들어진 프로그램은 TV에만, 라디오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라디오에서만 방영이 가능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콘텐츠의 책임소재를 매체 중심으로 규정해도 별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정보처리방식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하나의 콘텐츠가 얼마든지 다른 매체에 의해 보도될 수 있게 되었고(one source multi use), 편집기술의 발전은 여러 개의 콘텐츠를 손쉽게 편집하여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multi source one use). 이런 상황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책임 소재를 어떤 매체까지로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언론의 경우 원기사제공언론사 뿐만 아니라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지만, 방송의 경우 거의 대부분 원보도제공언론사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도 일종의 일관성 없는 태도라 할 수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방송 관련 조정사건의 수는 모두 189건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이 방송 관련 189건은 다시 지상파 TV 172건, 지상파 라디오 3건, 종합유선방송 14건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종합유선방송은 방송법 상 방송의 종류가 아닌, 방송사업의 한 유형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종합유선방송으로 구분된 사건 역시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분류대로라면 역시 지상파 TV에 속할 것이며 방송 관련 189건 중 라디오방송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86건은

모두 지상파 TV에 대해서 신청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0년 한 해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방송 관련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지상파 TV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방송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뉴스가 지상에 설치된 무선국에 의해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케이블 방송사에 의해 송출된 것인지, IPTV인지, 아니면 DMB로도 시청할 수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sup>39)</sup> 즉, 피해자로서는 방송사와 해당 프로그램의 명칭, 방송 일자와 시각, 해당 기사의 제목만 가지고도 자신이 다투어야 할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그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언론보도가 어떤 매체를 통해 방영되었든 상관없이 원보도자인 지상파 TV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양한 미디어를 하나의 미디어로 통합하는 미디어 컨버전스와 매체 간 통합과 기존의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모두 가진 미디어의 등장은 매체의 정체성을 애매하게 만들어 예전만큼 매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방송, 신문, 잡지 등 전통적인 매체적 분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인터넷만 보도라도 방송, 신문, 잡지의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대인커뮤니케이션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째로 언론 조정중재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인터넷언론에 국한한다 해도 사실 인터넷상의 언론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부재한 상황이다.<sup>40)</sup> 따라서 향후 미디어 융합

#### 2010년 매체별 조정사건 처리현황

사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IP TV	기타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주간신문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이동멀티미디어						
				TV	라디오								
2,205	157	197	186	172	3	14	-	24	42	567	841	-	2

39) 방송법에서 방송이나 방송사업의 종류를 자세히 구분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방송의 종류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전파나 채널을 관청에서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40) 황용석(2004), '정책 대상으로서 인터넷 언론의 개념화와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2004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257~261쪽

“현재의 매체 중심적인 언론의 정의는 이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향후 미디어 컨버전스 등으로 인해 매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환경에서는 법규의 해석을 애매하거나 모순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이 진전될수록 어떤 매체를 언론조정중재대상으로 할 것인가, 한 매체내의 어떤 기능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등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기존의 매체 중심적인 정의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새로운 ‘언론’ 개념 정의의 필요성



이상에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대한 정의 방식의 특징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의 언론에 대한 정의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입법적 편의 때문이었던지 이미 폐지된 언론기본법에서의 정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방식이 뉴미디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매체 중심적인 언론의 정의는 이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향후 미디어 컨버전스 등으로 인해 매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환경에서는 법규의 해석을 애매하거나 모순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상의 언론 개념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좀 더 근본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를 규정하기 위한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의 개념을 굳이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언론중재법에 있어야 할 것은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언론분쟁’의 영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언론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그 상대방이 될 언론사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그 상대방을 반드시 언론사로 국한할 필요가 없으므로 ‘언론분쟁’의 영역을 확정하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현행 언론중재법과 같이 ‘언론’의 개념에 대해 정의한다고 하면, 매체 중심의 현행 규정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내용 중심으로 언론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작업이고 저널리즘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겠으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언론의 정의 뿐만 아니라 좀더 나아가 언론중재법상의 다른 규정들도 뉴미디어 환경에 적용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제언하는 바이다. 언론을 둘러싼 미디어나 사회적·법적 환경 등이 변화함에 따라 언론현상 역시 계속 변화하는데 언론의 정의만큼은 기존의 틀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미니홈피나 블로그와 같은 1인 미디어, 언론보도의 SNS 상의 유통 등을 언론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같이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논리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뉴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와는 다른 차원의 언론보도 양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언론조정중재제도 또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만약 기존의 법규가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기존의 법규를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역토론회 (부산)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식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위원회는 올바른 언론문화 정착과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지난 9월 5일 부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부산지역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도 중재위원(변호사)은 위원회의 손해배상제도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제도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일 시** 2011년 9월 5일(월) 10:30 ~ 13:30

**장 소**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

**발 제 자** 신용도 (중재위원, 법무법인 로윈 대표변호사)

**사 회 자** 신우철 (부산중재부장, 부산지법 부장판사)

편집자 주 - 주제발표문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http://www.pac.or.kr)) '정보자료실(각종자료)'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 들어가며



‘언론분쟁’이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의미하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언론사 등’이라 함은 기존의 전통적인 언론사(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외에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법 제2조).

오늘날 정보화 사회가 극도로 발달함에 따라 언론사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한 분쟁이 날로 폭증하고 있고 그 유형과 내용 또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언론분쟁은 궁극적으로는 소송과 재판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소송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와 관련된 피해는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재판에 의하는 것이 오히려 권리구제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대체적 분쟁 해결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각광받고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은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쟁의 해결수단으로는 소송이 유일한 것이 아니며 협상·조정·중재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소송외 분쟁해결제도는 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② 분쟁 해결이 신속하며, ③ 단순히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당사자 간에 발생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줄 수도 있는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에 비하여 여러 가지 무시 못할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0. 12. 31. 제정된 언론기본법에 의한 분쟁조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론분쟁의 해결 건수와 해결 영역을 확대하여 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ADR 기구로서 확

고한 위치를 다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취급한 신청사건 중 자발적인 조정성립 비율이 전체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거나([별첨자료1] 참조), 손해배상에 관한 조정건수가 지극히 미미한 점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중재위원회의 언론조정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조정성립 비율을 제고하는 방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활성화 방안, 손해배상 제도의 적극적인 운용 방안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조정



### 1. 조정의 개념

조정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쉽게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분쟁 해결방법인데, 언론분쟁에 제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인으로 나서서 신속·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를 설득, 당사자들의 상호양해를 기반으로 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언론조정이라고 한다. 또한, 언론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권능을 언론조정권이라고 하는데, 언론조정권은 ① 조정절차 지휘권, ② 각종 송달사무, ③ 증거조사 및 사실조사권, ④ 각종 결정권한 등이 포함된다. 언론조정은 그 법적 성격이 입법·사법·행정의 국가작용 중 사법작용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언론조정권은 그 성질상 사법권 내지 재판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 제 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 언론조정권을 사법권(재판권)의 일종으로 본다면,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 10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의미는 재판은 법관의 전유물이므로 이를 법관으로부터 박탈하여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것은 불허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재판의 전심으로서 특수사건의 처리를 위한 준사법기관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원조직법에도 「제2조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절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 법 규정

언론기관 등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를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

권리침해 원인 발생 → 해당 언론사 등에 정정보도 · 반론보도 · 추후보도 · 손해배상 요구 → 협상 결렬 → 언론분쟁 발생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법 제 18조) → 신청 각하(법 제21조①항), 신청 기각(법 제21조②항), 조정 불성립(법 제21조③항), 조정 성립(법 19조, 제23조), 직권조정결정(법 제22조①항) → 이의(법 제22조③항) → 소 제기 간주(법 제22조④항)

언론조정은 5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하되,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중재위원 중에서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법 제9조 ①항). 조정의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합의서뿐만 아니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규칙 제21조 제2항). 조정의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는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23조).

## 3. 현실적 문제점

언론조정 절차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종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비율이 전체 청구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로, 언론에 의한 권리침해가 과연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 당사자 간에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법에도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당연히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경우의 분쟁해결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즉, 법 제3조에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으로 법 제4조에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5조에는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언론보도 등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영역 내에 머문 것인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는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등으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둘째로,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쌓인 감정적인 요인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신청인은 우선 1차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보도의 정정이나 반박문의 게재 또는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게 된다. 그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 등이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분쟁이

종료되지만 보도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신청인의 청구를 부인할 때 신청인은 소송 제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이나 조정신청에 이른 단계에서는 이미 쌍방 간에 상당한 정도의 양금이 쌓인 상태이므로 당사자 간에 자발적인 합의를 기대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언론의 속성상 보도 내용 중에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지역적인 부분에서 진실과는 약간 차이가 나는 수사적인 과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청인측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중대한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합의가 어렵게 된다.

셋째로, 피해 구제에 동의하더라도 분쟁 당사자 각자가 제기하는 해결 방법이나 구제 수준에 서로가 동의하고 있지 않을 때는 합의가 어려워 진다.

넷째로, 신청인이 언론조정 절차를 통하여 다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의도할 경우에도 합의 성립이 어려워질 것임은 자명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상으로는 2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는 ‘조정불성립’ 결정으로서 중재부는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불성립’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21조 ③항, 제9조 ②항). 둘째는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즉, 중재부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22조 ①항, 제9조 ②항).

그런데 ‘조정불성립’ 결정은 ADR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재부의 빈번한 ‘조정불성립’ 결정은 언론분쟁의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해결을 위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한 중재부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언론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서는 옳은 방법이지만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기초로 하는 ADR의 근본취지와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 4. 개선방안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은 분쟁해결이 제3자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스스로 찾은 결론이어서 당사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합의된 내용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확률이 판결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따라서 언론분쟁을 조정하는 중재부의 각 위원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① 분쟁 당사자 간에 발생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분석하여 쟁점을 확인하고, ② 비슷한 쟁점에 관하여 종전에 내려진 법원 판결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 사례 등을 연구, 검토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③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위와 같은 조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는 조정 성립의 확률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감소

### Ⅲ.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 1. 법 규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 등을 피고로 한다(법 제22조).

#### 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법적 성격

직권조정결정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2가지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법 제22조 제1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조정결정 여부는 중재부의 임의적 재량사항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법 제19조 제9항에는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사조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재부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조정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 권한은 임의적 재량사항이 아닌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부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감정적인 대립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사건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였으면서도 지엽적인 의견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있지만 중재부의 결정이 있으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법상의 직권조정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완전히 동일한 성격의 결정인가 하는 점이다. 조정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사조정법과는 달리 법 제22조 제3항에서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언론중재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강제조정이라는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조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기관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 쌍방에게 분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3. 법규정의 해석

법 제22조 제1항은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②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④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논리적으로 2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다.

첫째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각자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주장의 대립이 심하고 견해 차이가 현격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직권조정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의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애써 직권조정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써 해당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둘째로는, 비록 당사자 간 합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재부의 조정결정을 통하여 합의 장애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중재부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합한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피신청인이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에 있지만 중재부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따르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 (2)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합의가 성립하였으나 사소하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3) 쌍방 당사자가 내심으로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나 대외적 체면 때문에

상대방의 면전에서 그와 합의하겠다는 의사표현을 차마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당사자는 조정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와의 관계에서 분쟁해결의 형식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하여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5) 사실조사나 증거조사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일응 명백하게 되었고, 이미 당사자에 대한 설득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때까지의 비용과 노력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6) 분쟁의 대상이 주로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 형식으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당사자가 승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란 (1)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거나, (2) 피신청인의 불출석 또는 근거 자료 제시 부족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일 내 피신청인의 주장을 소명하기가 어려울 때를 가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는 것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의 정당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해지거나 사회적으로도 법적 정의 구현이 어려워질 때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재판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만큼 소송절차에서의 처분권주의와 유사한 취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신청인이 조정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신청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내용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신청인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중재부가 손해배상 처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신청인이 반론보도 게재를 요망하고 있는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그 결정내용이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신청인은 2,0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고 피신청인은 1,000만원 정도라면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 때에 비록 중재부가 판단하기에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분쟁의 실정에 맞다고 하여도 그와 같이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 모두의 주장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조정신청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2항).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되면 족하다(법 제22조 제1항). 이와 같은 처리기간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

중재부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결정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2항, 규칙 제22조 제1항). 실무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는 그 결정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정도의 형식적 이유를 기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결정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특히 법적 쟁점이 있거나 이의신청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좀 더 실질적인 결정의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 제22조 제3항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받은 후 반드시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정을 갈

음하는 결정 직후 구두로 간단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완료되지 않는다. 현장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결정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 신중히 검토하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이다. 이러한 점은 민사조정법상의 이의신청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민사조정법 제34조의 경우에는 조서의 정본이 송달 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의 신청에 이유를 붙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언론보도로 인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 4. 실무상 적용현황

언론중재위원회가 발표한 별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 ~ 2010)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전체 사건수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비율은 2008년 5.5%(전체사건 954건 중 52건), 2009년 6.7%(전체사건 1,573건 중 105건), 2010년 6.8%(전체사건 2,205건 중 14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중재부의 경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2010년까지 총 7건에 불과하며 최근 2년간은 결정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적 수치의 의미는 언론조정 절차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재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장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5. 개선방안

언론 피해 구제의 수단으로서 중재부가 조정을 갈

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대상은 주로 정정보도와 손해 배상에 관한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추후보도나 반론보도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보도의 진실성 여부도 불문하므로(법 제16조) 당사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의 경우 신청인이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전제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보도의 진실성 여부를 다투는 한 중재부로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증거조사(법 제20조) 등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언론기관 등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목적으로 조정신청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되(법 제19조 제2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처리하면 되도록(법 제22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조정신청 사건 처리기간에 비하여 7일 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더 부여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이 규정하는 시한 내에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중재부로 하여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오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중재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쉽사리 조정불성립결정을 해서는 안 되며, 그때까지 드러난 사실과 증거를 종합하여 중재부에서 최종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중재위원 각자가 조정에 필요한 덕목과 기술을 부단히 함양하는 것과 아울러 관련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법원의 판례와 결정 사례들에 대한 폭넓은 수

집과 연구를 통하여 분쟁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승복시킬 수 있는 법적 지식을 축적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IV. 손해배상



### 1. 법규정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 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6항).

실무상으로는 통상 신청인은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 2.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사건 처리 현황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발표자료([별첨자료2] 참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으로 피해구제되는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바,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에서 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2008년 12.7%, 2009년 7.2%, 2010년 4.1%로 해마다 감소하였고, 특히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는 2.9%로 나타났다. 이는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조정의 특성상 사실관계의 파악이 힘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법원

이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의 비율이 26.8%~52.1%인 것을 비교하면 약 1/4~1/6.5 정도에 불과하다.

위원회의 조정액 또한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인데, 위원회의 조정액은 법원의 인용액과 대비하여 2008년 약 1/7(조정액 333만원, 인용액 2,340만원), 2009년 약 1/6.5(조정액 359만원, 인용액 2,348만원), 2010년 약 1/13(조정액 183만원, 인용액 2,424만원) 수준이고, 2011년 6월말 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액의 평균액은 99만원에 불과하다.

### 3.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배경분석

위와 같이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으로 피해구제되는 비율이 낮고 그 금액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에 비하여 미미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첫째로 조정과 소송이라는 제도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 수위가 낮은 사건은 소송이 아닌 조정에서 주로 해결되고 이와 반대로 인격권 침해 수위가 높은 사건은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점, 둘째로 언론사로서는 조정과정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기사 삭제를 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재부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관행을 많이 따르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동일 사건에서 위원회 결정액과 법원 인용액이 동일하게 나타난 비율이 50%에 달하는 바, 이는 법원이 위원회가 내린 결정액을 존중하고, 이를 판결에 적극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비율은 작년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5%도 되지 않고 있어, 법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위원회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합의하면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포기 내지 취하지킴으로써 피해구제를 높이려는 것보다는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인색한 언론사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위원회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통상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상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고 혼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심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격권 침해가 성립하는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 액수 산정 시에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배제하고, 신청인의 요구와 법원의 인용액을 참고하여 사건별로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V. 맺음말



언론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이다. 분쟁 당사자 간에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언론분쟁의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의 원인과 쟁점을 파악한 후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결정 선례를 참고로 하여 분쟁 당사자

모두가 대체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들어서 열의와 인내심을 가지고서 설득한다. 그 과정에서 최초의 조정안은 변경되거나 수정을 거칠 수도 있다. 조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조정안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불성립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합의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구분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다.

언론 분쟁의 조정자인 중재위원이 위와 같이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자로서의 공명정대성, 기밀성, 정직성, 전문성 등의 인간적인 덕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조정 기법을 연구하고 숙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 조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상의 요구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 내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헌법상의 요구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명칭이나 조문의 내용상 언론 기관 등의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으로는 언론 표현의 자유보장보다 개인의 권리구제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된다. 개인의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언론기관 등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법원의 누적된 판결에 의하여 일응의 기준은 세워져 있다고 본다. 즉, 대법원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

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고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따라서, 보도 내용의 본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엽적인 표현상의 문제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보도에 대하여, 피해 구제라는 명분으로 빈번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결국, 중재위원으로서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주된 원칙으로 삼아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2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과 조화를 꾀하는 안목과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언론조정실무가이드, 언론중재위원회, 2009
-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2010
- 유의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례 검토, 2010.
-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보고, 언론중재위원회, 2011

[별첨자료 1]

〈 최근 3년간 처리결과 〉

구 분		사건수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2008	서울	607(63.6%)	268(44.2%)	36(5.9%)	68(11.2%)
	지역	347(36.4%)	134(38.6%)	16(4.6%)	57(16.4%)
	소계	954(100%)	402(42.1%)	52(5.5%)	125(13.1%)
2009	서울	1,173(74.6%)	366(31.2%)	88(7.5%)	49(4.2%)
	지역	400(25.4%)	172(43.0%)	17(4.3%)	39(9.8%)
	소계	1,573(100%)	538(34.2%)	105(6.7%)	88(5.6%)
2010	서울	1,627(73.8%)	361(22.2%)	128(7.9%)	76(4.7%)
	지역	578(26.2%)	269(46.5%)	21(3.6%)	81(14.0%)
	소계	2,205(100%)	630(28.6%)	149(6.8%)	157(7.1%)

〈 최근 3년간 부산중재부 조정사건 처리현황 〉

구 분	2008		2009		2010	
	사건수	피해구제율	사건수	피해구제율	사건수	피해구제율
위원회	954	72.9%	1,573	73.9%	2,205	79.2%
부산중재부	24(2.5%)	34.8%	15(1.0%)	85.7%	59(2.7%)	55.2%

## [별첨자료 2]

## 〈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중재빈도 및 법원 인용빈도 비교〉

연 도	위원회		법원	
	전체건수	조정중재빈도	전체건수	인용빈도
2008	324	41(12.7%)	96	50(52.1%)
2009	699	50(7.2%)	115	54(47.0%)
2010	773	32(4.1%)	123	33(26.8%)

## 〈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조정액·중재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연도	구분	빈도	평균액(원)	중앙액(원)	최빈액(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2008	조정액	32	3,331,250	2,750,000	1,000,000	300,000	10,000,000
	중재액	9	2,322,222	2,000,000	2,000,000	900,000	4,000,000
	법원인용액	50	23,400,000	11,000,000	10,000,000	1,000,000	150,000,000
2009	조정액	40	3,594,103	2,000,000	3,000,000	120,000	30,000,000
	중재액	10	1,630,000	1,750,000	1,000,000	1,000,000	2,500,000
	법원인용액	54	23,484,499	8,000,000	5,000,000	10	272,881,472
2010	조정액	30	1,832,759	1,000,000	1,000,000	150,000	15,000,000
	법원인용액	33	24,242,424	10,000,000	10,000,000	1,000,000	100,000,000

## 〈 자동소제기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위원회 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연도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원회 결정액	법원 인용액	결정액 대비 인용액 증감
2008	학○○	교육희망	1,000,000	0	▽1,000,000
	○○산후조리원	MBC	1,000,000	1,000,000	동일
	박○○	MBC	7,000,000	6,000,000	▽1,000,000
	정○○	MBC	10,000,000	10,000,000	동일
	김○○	함평신문	10,000,000	3,000,000	▽7,000,000
	이○○	프런티어타임스	15,000,000	10,000,000	▽5,000,000
2009	김○○	MBC	5,000,000	5,000,000	동일
2010	박○○	동아일보	3,000,000	0	▽3,000,000
	전○○	MBC	1,000,000	1,000,000	동일
	이○○	연수승도신문	10,000,000	10,000,000	동일
평 균			6,300,000	4,600,000	▽1,700,000

## 토론회 개요 및 토론 내용

### I. 개요

우리 위원회는 9월 5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산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분쟁의 대체적 해결방식에 관한 개선 방안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원회 부산중재부 신우철 중재부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신용도 중재위원(변호사)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신 변호사는 언론분쟁의 해결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문적 식견을 가진 중재부가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제도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발제 후 토론시간에는 관공서,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위원회 관계자들의 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참석자들 중에서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권성 위원장은 “올해 8월 중순까지 위원회는 1,500여건의 조정중재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부산에서는 20여건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지역 언론이 정론을 펼치며, 사실관계에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시민들이 위원회와 조정중재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이용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II. 토론내용

#### 신우철(사회자)

지금부터는 오늘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께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개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와 관련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기범(동서대학교 교수)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니 국민의 권익실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유순희(부산여성뉴스 발행인)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피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하겠지만, 언론조정신청

을 하는 신청인들 중에는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손해배상금액을 높여서 청구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려는 신청인들에 대한 중재위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라는 것이 피해구제를 큰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정·중재 사건을 처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 신용도(발제자)

위원회에서도 사건이 접수되어 심리가 열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조정·중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손해배상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언론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론사의 규모, 재정 상황과 신청인의 피해 상황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이정호(부산일보 편집국장)

발제자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오늘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조정·중재 담당이어서 위원회에서 조정·중재 심리를 몇 차례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느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의 취재환경에 대한 부분이다. 언론의 취재환경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언론의 기본 역할인 공적 영역 감시를 위해 취재하고 보도를 함에 있어서 정보 보호, 인격권 강조로 그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시의성이 필요한 기사의 경우 빠른 보도가 생명인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시의성을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다. 또, 완전한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보니 추측기사가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따질 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는 과감히 기각 결정을 내려 인적, 시간적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 이규희(부산 인권상담센터 사무국장)

과거, 언론중재위원회 부산사무소에 방문한 적이 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명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오늘을 계기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더욱 친근해진 느낌이다.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런 토론회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례집, 발간물, 소식지 등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배포처 목록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간행물을 보내준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홍보하고, 사람들로 부터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함상규(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 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와 언론중재위원회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거나 편파적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소개해주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신청인들은 방통심의위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이중으로 신청하여,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제재와 언중위의 정정보도처분을 모두 받게 될 수 있어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것이라면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가 해당 방송에 대해 이미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에 별도의 신청을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역시 피해회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이중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심사를 받고, 정정이나 반론이 충분히 이뤄졌을 경우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영진(부산 서부 경찰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표를 보면 조정성립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중재위원들이 비상임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근직 위원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오광건(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우리 위원회는 세미나나 토론회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당국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임위원을 두는 것에 대한 요구들이 쌓여 여론으로 굳어지면 수용할 만한 정책제안으로 틀어 잡혀갈 것이다.

**윤영이(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 강사)**

포털 등에 관한 조정·중재 사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다. 미디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많이 교육하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는 추

세에서 인터넷 언론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다.

**신용도(발제자)**

위원회는 신문·방송·잡지 등 전통적인 언론뿐만 아니라 인터넷 뉴스서비스 등을 조정·중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한다. 포털과 관련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가장 먼저 포털에 알림표시를 요청한다. 해당 기사가 조정처리 중인 기사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는 심리 기일을 정하고, 심리가 열린다. 서울의 경우에는 포털사건 전담 중재부가 있어 포털과 관련된 사건이 보다 신속히 처리되고 있다. 포털 사건의 경우에는 기사삭제도 원활히 이뤄지는 편이다.

**황형모(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진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자체적인 조사활동이 요구된다. 신청인의 경우 증거확보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모든 중재위원들이 사건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5인이 순차적으로 한 사건씩 맡아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조정·중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일 것이다.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제도이다.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문화상품이다. 위원회는 군사정권 시대에 세워진 기관이다. 군사정권이 끝나고 난 뒤, 군사정권과 관련된 제도들이 없어지고 기관들이 없어졌지만,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는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

가 언론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오늘 여러 분께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잘 종합하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몇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겠다. 첫째, 증거조사의 문제다. 우리 위원회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증거조사에 힘을 덜 들인 것이 사실이었다. 또한, 심리기간이 14일, 21일과 같이 짧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조사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국민들이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증거조사를 적절한 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간단히 조사할 수 있는 자료조사라든지,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사실관계 파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만간 증거조사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할 것이다. 또한, 14일, 21일로 규정되어 있는 심리기간에 개의치 않고, 심리에 시간을 더 투자하겠다.

상근직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직 판사로 활동 중인 중재부장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위원회의 업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현직 부장판사가 파견직으로 위원회에 나와 전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중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그 동안 중재부에서 직권조정결정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기본이라는 인식에서 직권조정결정을 삼갔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좋은 안이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의견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직권조정결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에 대한 시민들 사이의 인식이 낮은 것은 홍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위원회가 TV 광고와 같은 고비용의 홍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없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소식지다. 현재 소식지를 전국의 각 관청, 학교, 교육기관, 은행에 배포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위원회에 관심이 있어, 소식지 신청을 원하신다면 기급적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부산중재부 사건이 매우 적다는 말을 했다. 이는 부산 지역의 언론기관들이 정론을 펼치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부산 지역에는 언론사의 난립 현상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언론사의 난립이 심화되어 많은 수의 사건이 접수되기도 한다. 작년엔 일본지역의 언론사들을 시찰하러 갔을 때 일본의 지방언론사들은 전혀 난립현상이 없는 것을 보았다. 신문사의 경우에는 주도적인 신문사 2곳 정도가 있어 경쟁에 의한 무리한 보도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부산 지역이 언론사의 난립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토론 시간을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CCTV 자료화면을 이용한 언론 보도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우리가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몇 개의 CCTV 카메라에 찍히게 될까? 솔직히 말해서 하루라도 CCTV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있을까? 아마 두문불출 집안에서만 생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피해 살기는 힘들 것이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CCTV카메라는 어느새 우리 존재 증명이 되어버렸다.

### CCTV 카메라와 판옵티콘

통상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불리는 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원칙적으로는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전 전송시스템이다. 송신측에서 수신측까지 유선 또는 특수무선 전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마음대로 수신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정보 CCTV자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결합하고 있다. 이제 CCTV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CCTV는 주요 영역과 공공시설 등 보안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가 됐다. CCTV 카메라는 은행이나 마트, 도로, 학교 등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 사람이 있는 곳이나 보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자리 잡고 있다. CCTV는 우리 생활 속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는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각종 범죄나 위협,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CCTV 카메라는 현대인을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체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미셸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언급한 벤딤의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인 셈이다.

사실 공공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

“문명이 발달할수록 각종 범죄나 위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CCTV 카메라는 현대인을 위한 안전 장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시체제로 기능하기도 한다. 미셀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언급한 벤딕의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인 셈이다.”

리는 기본권의 핵심에 속하는 권리이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따라서는 지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자유로운 활동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또 사람은 그 누구로부터도 이유없이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기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범죄 단속을 목적으로 거리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촬영하여 감시하는 것은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감시의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가 수집되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동의없이 개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저장하는 것은 초상권 내지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와 주택가에 CCTV카메라가 속속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옹호해지는 범죄의 가능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CCTV 카메라는 범죄예방에 확실히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또 최근 들어 지상과 방송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CCTV카메라 자료화면은 과연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일까?

## 날것의 생생함과 언론의 선정성

요즘 방송 뉴스는 예전보다 훨씬 생생해졌다. 예측 불허의 사건 사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순간도 생생하게 포착해서 보도한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철로로 추락한 승객을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에 앞서 구조하는 긴박한 장면도 전파를 탄다. 곳곳에 설치된 CCTV 덕분이다.

지난 6월 27일 오전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은 당시 사망한 걸 그룹 아이리스 멤버 이은미의 마지막 모습을 공개했다. 경찰이 공개한 CCTV화면에는 자신을 기다리던 남자 친구에게 끌려나가는 이은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흐릿하게 화질을 처리하긴 했으나 피의자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방영돼 문제가 되었다. 이 CCTV영상이 더욱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피살 당시 이미 많은 언론매체가 이은미가 흉기에 찔렸던 횡수까지 언급하며 살인방법을 자세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CCTV 영상을 경쟁적으로 캡처해 보도한 몇몇 매체는 아예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이은미', '남친 손에 끌려가', '사망 직전 CCTV 공개' 등의 제목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확산했다.

그보다 한 달 전쯤인 지난 5월 15일 MBC <뉴스데스크>는 가족을 각목으로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을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시청자들에게 내보냈다가 시청자들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당시 <뉴스데스크>의 최일구, 문지애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일부 폭력장면이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채 방송돼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시청자의 항의를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데스크의 선정적인 보

도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010년 연말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는 시민의 참혹한 모습도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모두 현장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잡힌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사실 CCTV 설치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범죄장면이 그대로 촬영된 경우가 많아, 촬영된 CCTV장면이 범죄조사와 보도에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CCTV로 인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CCTV는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방범용 CCTV는 범죄 예방과 검거, 증거자료 확보의 필요성 등 당연한 치안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일정부분 담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수사현장에서도,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CCTV 카메라는 최근에 더욱 자주 사용된다. 언론사들이 CCTV를 통해 생생한 자료화면을 조달하여 방송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CCTV 자료화면이 여과없이 방송에 사용되어도 법적인 규제가 없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 가십 넘치는 아침 방송, 선정적인 주말 방송

특히 아침방송에서는 뉴스의 연성화가 심화되면서 뉴스를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CCTV 카메라 자료화면을 자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침 프로그램의 대표주자인 <생방송 오늘 아침>과 <출발 모닝와이드>는 한 주의 시사와 뉴스를 다루는 코너에서 CCTV를 자

“문제는 그 '생생함'이 어디에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료화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생생한 화면을 수단으로 해서 범죄 예방 또는 부조리 고발이라는 공익성 제고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사회적 금기, 폭력, 선정적 장면 등을 보여주는 호기심 충족에 불과한 것인지 모호해진다.”

주 활용한다. 아침 방송이 시사정보를 유익하고 재미있게 다룬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며, 방송사들이 서로 시청률에 연연하다보니 가십거리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

사실 최근 선정적인 보도는 뉴스의 연성화현상과 함께 내용보다 화면에 집중하는 보도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이 발달하고 영상문화에 익숙해진 시대이다 보니 영상이 있어야 실감이 난다. 때문에 앞서 예시된 사례처럼 프라임타임의 저녁뉴스 시간대도 CCTV 자료화면을 활용한 선정적인 보도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지상파 방송3사가 모두 마찬가지인데, SBS가 좀 더 심하다. 지난 4월 20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3월 한 달간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SBS 8 뉴스'가 사건·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와 블랙박스를 활용한 비중이 KBS, MBC보다 높은 31.6%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말 주말 뉴스데스크가 8시로 이동한 이후 'SBS 8 뉴스'가 시청률 경쟁에 나선 까닭으로 볼 수 있다. CCTV 등을 사용한 흥미 위주의 보도는 더욱 늘었다. 시각적 효과가 강한 사건기사가 눈에 띄게 늘었고 CCTV를 활용한 고발성 뉴스도 늘었다. 결국은 지나친 시청률경쟁이 뉴스의 연성화와 선정성을 심화시

키고 있다는 이야기다.

CCTV가 뉴스에 생생함과 재미를 제공해주는 이유는 실재감, 현장감 때문이다. 단순히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조한 문장이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CCTV의 생생함은 날 것 그 자체이며, 직접 인용 화법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는 동영상을 재료로 하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만 문제는 그 '생생함'이 어디에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료화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생생한 화면을 수단으로 해서 범죄 예방 또는 부조리 고발이라는 공익성 제고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사회적 금기, 폭력, 선정적 장면 등을 보여주는 호기심 충족에 불과한 것인지 모호해진다.

더구나 실제 폭행장면이나 혐오스런 장면들을 공중파를 통해 방영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라면 이것이 과연 적절한 내용인지, 모방범죄의 우려는 없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화면과 날것이 전해주는 리얼리티는 쉽게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범죄보도와 CCTV의 명암

몇 년전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연쇄성폭행살인범 강호순의 검거에 CCTV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과 정부와 광역·기초단체는 앞다투어 CCTV카메라를 설치했다. 개인은 자구책 마련으로 집이나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 학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CCTV는 30만 대, 민간 CCTV는 거의 250만대 이상으로 추정

된다. 특히 범죄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통합관제센터를 앞다투어 만드는 등 경쟁적으로 CCTV의 수를 늘리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설치된 CCTV는 3만 5천 107대로 2008년도의 8천 761대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16개 광역시·도에서 CCTV의 설치대수가 대폭 늘었는데 특히 서울과 부산은 각각 4배,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범죄 발생건수는 11%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심리학 이론 중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1982년 범죄 심리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이론으로 건물에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결국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1990년대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치안이 불안한 도시였는데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취임하면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 건물과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의 조명을 밝게 하는 등 도시의 미적 개선을 통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범죄발생건수는 서서히 줄어들고 마침내 연간 살인사건이 50%나 줄어들면서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CCTV는 감시체제로 인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확보와 잠재적인 범죄자를 추적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CCTV 영상은 과연 범죄를 예방하는 데만 쓰이고 있을까. 아이러니컬하게도 CCTV를 범행 도구로 이용한 사례도 있다. 집집마다, 작은 골목길마다 설치돼 있는 CCTV 카메라를 빈집 물색에 쓴 것이다. 범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집 앞에 설치된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망에 접근, 해킹을 통해 네트워크 관리자 지위를 얻은 뒤 집주

“CCTV의 스마트한 발전은 범죄예방과 환경감시에는 효과적이겠지만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범죄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다.”

인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집을 비우는지를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CCTV가 디지털화되면서 이처럼 운영상 보안이 취약한 경우 영상이 쉽게 해킹된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 장치나,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부실한 실정이다. 지난 2007년 정부가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권고사항일 뿐 민간 CCTV를 규제할 강제력은 없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와 권고

눈부신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CCTV도 스마트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공장소의 방법이나 도로 모니터링 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CCTV는 아날로그 방식의 카메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디지털 CCTV로 전환할 예정이다. 디지털로 전환되면 화질이 더욱 선명해질 뿐더러 디지털 기반이라 다양한 지능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보안·감시 기능뿐 아니라 소리를 인식하거나 지능형 기능이 추가 장착되고 모든 영상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카메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또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스마트하게 네트워크 카메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영상 분석 솔루션과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모니터링 효과 및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CCTV의 스마트한 발전은 범죄예방과

환경감시에는 효과적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은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온 반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유통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 컴퓨터 범죄 등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다. 개인은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어떤 기관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혹은 그 정보는 정확한 것인가를 알고 통제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져야 한다.

이에 2007년 정보통신부는 공청회를 거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및 증거 확보, 공통정보 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만든 셈이다. 또한 최근에 행정안전부는 민간부분 CCTV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전자적 감시가 가능한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지능형 에이전트의 개인정보침해 가능성 등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문제까지도 제기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적인 대응의 속도가 기술발전

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 제도적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OECD가 권고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첫째, 수집제한의 원칙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은 합법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해야 한다. 둘째, 목적명확화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수집시까지 그 수집목적이 명백하여야 하며, 그 후의 이용은 수집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목적과 양립되어야 하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제한의 원칙으로 개인정보는 목적명확화의 원칙에 의하여 확인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거나 그 밖의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생한 뉴스보도를 위해 CCTV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네티즌들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자료의 공유와 개방, 공개는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정적 보도에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남미(南美) 언론과 언론피해구제제도

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기사심의팀, 이정희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 I.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의 30년 역사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는 국가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남미(南美)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정권의 집권에 따라 미디어의 몰수와 운영상의 간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제한, 보도 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의되고, 언론의 자유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연수단은 남미 4개국(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언론 유관기관과 언론사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남미의 독특한 언론문화와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 인격권 보호 및 정

정·반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유무 등을 관찰함으로써 남미의 언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 II. 남미의 언론기구와 독자 불만 처리

#### 1. 페루 언론평의회

##### 가. 구성과 역할

페루 언론평의회(El consejo de la prensa peruana)는 1997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1990년 언론법이 제정되자 국가의 언론 통제를 우려한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구성한 것이다. 현재는 페루의 유력 일간지인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를 비롯하여 페루 언론사 중 약 40%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sup>1)</sup>

페루 언론평의회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정치적 이유로 기자들이 수감되거나 처형당하는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자 언론 자유와 언론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으나, 현재는 언론 자율 심의기구로서

1) 페루 언론평의회 홈페이지(<http://www.consejoprensaperuana.org.pe>) 참조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이 아닌 언론의 자유와 사회정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들의 불만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회원사가 분담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UN 및 영국·핀란드 대사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언론사의 권익 보호와 자율 심의, 독자들의 불만 처리 등을 담당하는 페루 언론평의회는 회원사의 가입, 탈퇴 여부 등 평의회 운영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명예위원회(El Consejo de Honor), 언론인 석방 운동 등 언론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운영위원회(La Junta Directiva), 독자의 정정보도 요구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윤리위원회(El Tribunal de Ética)로 구성된다.

#### 나. 윤리위원회(El Tribunal de Ética)<sup>2)</sup>

페루 언론평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윤리위원회(El Tribunal de Ética)는 독자들의 정정보도 요청 등 불만사항을 심의하며 언론학 및 법학 교수,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정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7일 이내에 해당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언론사는 매우 드물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독자들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윤리위



▲ 페루언론평의회 Luis Agois Banchemo 의장(오른쪽 두 번째) 등 위원들과 함께

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이 아닌 언론의 자유와 사회정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윤리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2008년 41건, 2009년 31건, 2010년 47건으로 이 중 약 40%는 회원사에 대한 불만 제기이며, 나머지는 비회원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Kela León Amézaga 교수는 모 타블로이드 신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편집자가 책임을 지고 정정보도를 하게 된 사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자율기구이므로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윤리위원회는 독자들의 불만 처리 외에도 언론인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미디어와 민주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언론 윤리 관련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El Tribunal de Ética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윤리재판소'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 결정하는 기구의 성격을 반영하여 '윤리위원회'로 해석하였음

## 2. 볼리비아 신문협회

1998년 언론사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볼리비아 신문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la Prensa, Bolivia)는 신문, 잡지를 발간하는 25개 언론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독자의 불만이나 정보요청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문협회는 정부 등 외부 권력에 맞서 언론 자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볼리비아 신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윤리위원회(EI Tribunal de Ética de La Asociación Nacional de la Prensa)는 언론 윤리에 관한 불만을 심의한다. 독자들은 기사 게재 후 9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윤리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계자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루 언론평의회와는 차이가 있다. 윤리위원회는 전직 대법원장 등 법조인 1인과 전직 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되며, 2010년에는 5건, 2011년 7월 현재 2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의 사건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볼리비아 국민들은 개인의 인격권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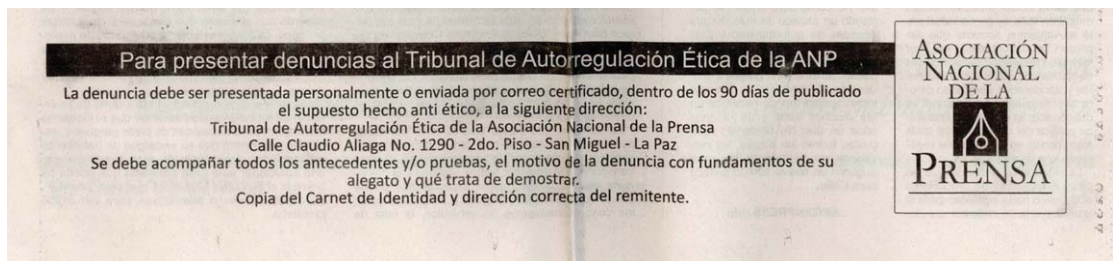
“볼리비아 신문협회는 회원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문과 잡지에 날마다 윤리위원회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구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이에 볼리비아 신문협회는 회원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문과 잡지에 날마다 윤리위원회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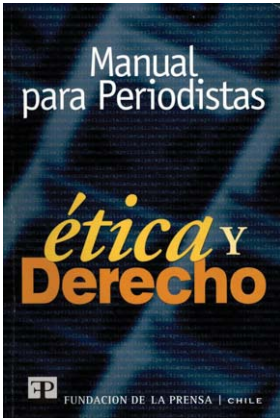
## 3. 칠레 신문협회

칠레 신문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la Prensa, Chile)는 1991년에 신문·잡지 보도연맹, 방송협회 등 각 언론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협의체로 설립되었다. 언론의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42개 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칠레 신문협회는 독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언론보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며 전직 언론인과 변호사, 언론학과 교수 등 10명이 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칠레 신문협회에는 월 평균 4~5건의 불만이 접수



▲ 볼리비아 신문협회 회원사인 엘 디아리오(El Diario)에 게재된 윤리위원회 광고



▲칠레 신문협회에서 제작한 신문기자를 위한 매뉴얼 「윤리와 권리」

되는데 대부분 경미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평의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정보도 게재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을 제시하는 페루 언론평의회와 달리, 칠레 신문협회는 개인이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률 조언 등의 상담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칠레 신문협회는 각 언론사가 취재와 보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매뉴얼에는 취재윤리부터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액세스(access)권 등 언론윤리와 취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 평의회는 보도 매뉴얼에 따라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윤리 기준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다.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심의

한 후, 주의 촉구를 위한 권고적 조치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 4. 아르헨티나 신문협회

아르헨티나 신문협회(Asociación de Entidades Periodísticas Argentinas)는 1962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반발한 언론사 대표 38인이 설립했다. 이후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성장하여 현재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발행하는 154개 언론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은 15명, 행정인력은 45명으로 언론 자유와 보도 환경을 연구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은 언론사에 직접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사건의 경우, 재판 기일이 지정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양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정기간이 주어지는 데 이 기간 동안 약 90%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

한편, 정정보도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마련되

#### 〈남미 각국의 언론 기구〉

구분	페루 언론평의회	볼리비아 신문협회	칠레 신문협회	아르헨티나 신문협회
설립연도	1997년	1998년	1991년	1962년
설립목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보호	언론사 권익 보호	언론 자유 및 언론사 권익 보호	언론 자유 및 언론사 권익 보호
위원 구성	언론·법학 교수, 변호사 등 7인	법조인, 전직 언론인 등 5인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10인	변호사,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15인
회원사 수	일간지(8개), 잡지(4개) 등 15개 언론사	신문, 잡지 등 25개 언론사	42개 신문사	신문, 잡지 등 154개 언론사
불만처리 여부	소속 윤리위원회에서 처리	소속 윤리위원회에서 처리	평의회에서 심의	-
불만처리 방법	정정보도 등 해결방안 제시	관계자 징계 등 제재 조치	법률 자문 및 상담	-

어 있지 않아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는 사례는 극히 적으며, 아르헨티나 신문협회에도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Ⅲ. 남미의 언론현황과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 1. 페루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

“불만 처리 전담부서 마련, 매주 고정 지면에 정정보도 게재”

1839년 남미에서 최초 발행된 전국지인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는 약 170년의 역사를 지닌 페루 유력 일간지이다. Miró Quesada 가족이 대를 이어 소유해오고 있다. 1980년대까지 군부가 언론사의 소유권을 가짐에 따라 정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기도 했다. 현재 소속 기사는 약 200명이며, 약 12만부를 발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엘 코메르시오는 독자의 불만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전담 부서에서 접수한 독자들의 불만 사항은 기사를 작성한 담당 기자에게 전달된다. 이후 편집 회의를 통해 제기된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정정보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고정 코너에 게재한다.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언론평의회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보도국장 이상 간부가 담당하여 처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방송이나 정정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2. 볼리비아

“정부의 언론 탄압에서 벗어나 언론 자유 확보 시급”

가. 볼리비아 국영방송(Empresa Nacional de Television Boliviana, Canal 7)

볼리비아 국영방송은 1969년에 설립된 볼리비아 최초의 방송사다. 현재 약 10여명의 취재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1984년 Paceaña de Televisión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볼리비아의 유일한 전국방송으로 정부의 정책 홍보 등 공익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직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대통령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볼리비아 국영방송 Carlos Orias 보도국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보도국장 이상 간부가 담당하여 처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방송이나 정정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볼리비아 국영방송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 나. 라 프렌사(La Prensa)

1998년 창간된 라 프렌사(La Prensa)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La Paz)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이다. 최근에는 정치 위주의 기사에서 벗어나 독자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경제, 음악·문화 그리고 스포츠 등 분야별 섹션 발행을 시작했다. 현재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취재기자는 48명이고 온라인 기사는 전문 편집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라파스를 제외한 지역이나 해외 소식은 타 언론사의 제휴 기사를 싣고 있다.

독자가 제기한 불만은 편집국장이 직접 처리하며,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직접 유감을 표시하거나 원하는 경우 지면을 통해 사과보도를 게재한다. 정정보도의 경우 문제가 된 지면에 원 보도의 크기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1년 3월 21일에는 취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여 기사에 가급적 복수의 취재원을 기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히 사실에 기초한 보도관행을 통해 오보와 분쟁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 프렌사의 Luis Agoir Banchoero 대표이사는

1929년 인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언론 보도와 취재 윤리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라 프렌사의 경우, 2010년 현직 장관이 트럭 33대를 밀수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Luis Agoir Banchoero 대표는 최근 발의된 통신법 역시, 정부가 모든 정보원을 통제하고 언론과 국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다. 라 라손(La Razón)

1990년에 창간된 라 라손(La Razón)은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신문사이다. 약 3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40명이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중에는 3만 5천부, 주말에는 4만 5천부를 발행한다. 몇 년 전까지 반정부 성향의 보도로 인해 정부로부터 많은



▲ La Razón 2011. 7. 12자 3면에 게재된 정정보도<sup>3)</sup>

3) 2011. 7. 9자 3면에 게재된 보도에서 아메리칸컵에서 볼리비아가 우승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 관한 약속을 한 사람은 Romy Villanueva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사과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

압력을 받았으나 최근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한다.

라 라손에는 2명의 기자가 온라인 뉴스를 전담하고 있는데, 최근 지면에 게재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뉴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볼리비아의 어려운 경제상황 탓에 스페인과 인근 남미국가로 이민을 떠나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이민자의 온라인 뉴스 이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묻자 Carlos Orias 편집국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라 라손은 독자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담당자가 직접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2~3일 안에 지정된 지면(A3면 또는 31면)에 싣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정보도의 내용은 「○월 ○일자 ○면에 실린 기사에 대해 독자 A씨의 항의로 정정한다」와 같이 필요한 사항만을 언급하여 간략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건·사고 보도에서 피해자의 초상이나 사체 사진을 그대로 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등 보도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3. 칠레

“언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어려워”

언수단은 칠레의 소송 절차 및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피해구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인 Belisario Prats Palma 교수를 만났다. 남미 국가 중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국가인 만큼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

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오보에 대한 법적 구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법적 구제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였다.

Belisario 교수는 독재 정권 하에서 탄압받았던 언론 자유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칠레에도 우리 위원회와 같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 피의자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 4. 아르헨티나 클라린(Clarin)

“언론법 통한 언론사 소유권 규제에 적극 대응 중”

클라린(Clarin)은 1945년 창간되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문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를 중심으로 약 33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회사인 클라린 그룹(Grupo Clarin)은 신문, 방송, 잡지 등 다수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2009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언론사의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해 언론법(Ley de Medios)을 제정하였는데, 정부에 비판적인 클라린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법은 전체 언론사의 3분의 1을 정부가 소유하고 개인과 비영리단체가 각각 3분의 1을

“이번 실무연수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언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남미의 언론피해구제기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할 때마다 부러운 시선을 보내던 남미 언론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클라린 같은 대형 언론사는 소유권의 일부를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매우 짧게 주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린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언론은 신문협회 등을 통해 정부의 언론 사소유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IV. 마치며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는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 시기를 거쳐 언론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정비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민족적 특성이 다른만큼 언론과 정부의 관계,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 언론사의 소유권을 정부에 빼앗기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페루는 방문 국가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페루 언론평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와 언론사 간 분쟁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와 가장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볼리비아의 경우 언론사 내부적으로는 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언론탄압과 규제로 인해 언론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볼리비아 언론인들은 각 언론사가 친(親) 정부, 반(反)정부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자유롭게 사회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방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상황이었지만 정치·문화적으로는 독재정권으로부터 입은 상처가 완벽히 치유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극심한 빈부 격차와 계급 구조로 인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입장에서 법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실무연수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언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남미의 언론피해구제기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할 때마다 부러운 시선을 보내던 남미 언론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언젠가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가 지구 반대편, 남미에 정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인문지  
편

# 국내동향 해외동향





### 서울행정법원, 공공기관 CCTV 공개 알 권리위해 허용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CCTV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시위를 하던 A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8월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와 시위 용품 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국가보훈처 정문 CCTV 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통행인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A씨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며, 영상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녹화 영상 가운데 일반 통행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의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이들의 얼굴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지우고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기술적으로 CCTV의 모자이크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에 대해 “CCTV 제작 회사의 장치를 활용하면 편집이 용이하다”며 국가보훈처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A씨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역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었다.

### 대법원, '취재 불응시 불리한 보도하겠다' 했어도 협박으로 볼 수 없어

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보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라도 협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7월 17일,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취재부장 A씨에 대해서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신문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자유 의 하나로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취재한 정보를 공표할 자유를 가지므로 신문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한 내용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신문기자로서 일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문 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불응한다면 취재한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 밝혔다.

A씨는 할머니로부터 고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후 할머니를 방치한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응할 것을 요구했

으나 거부당하자, 취재원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에서는 기자로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므로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증거와 관련된 것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재방식은 용인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 태블릿PC를 통해 다양한 잡지를 매개하는 '탭진' 서비스 개시

다양한 잡지를 아이패드, 갤럭시탭과 같은 태블릿PC로 구독할 수 있는 '탭진(Tapzin)'이라는 이름의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서비스가 8월 15일 론칭되었다.

탭진은 국내 언론사에서 발행되는 잡지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 태블릿PC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잡지와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나, 기존 잡지의 인쇄매체로서의 한계를 극복,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동영상 제공과 같은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졌다. 가령, 기사 내용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볼거리와 생동감을 줄 수 있다. 탭진의 제작사인 넥스트페이지 M&C 박동수 대표는 '잡지사들이 멀티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탭진을 이용해 종이 잡지보다 훨씬 더 생생한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는 관심 있는 내용을 즐겨찾기로 등록하여 수시로 볼 수 있고,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경제미디어그룹, 조선일보매거진 등 4개 회사가 만드는 한경비즈니스, 잡앤조이 등 11종의 잡지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되는 잡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한편, 향후 그 영향력이 증대되면 탭진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조정중재신청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가 조정중재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탭진 역시 잡지 기사를 매개함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판결

상대방을 '대머리' 라고 부른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올해 7월 12일, 온라인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머리’ 라는 표현은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지만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는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대머리’ 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 대머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빠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 대머리’라는 말을 사용해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대머리’라는 단어를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 대법원, 김구·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김모씨

#### 벌금형 확정

책과 유인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김구·유관순 등 독립운동 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로 기소되어 7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가 김모씨에 대해 지난 8월 1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유관순 열사가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아우내 장터에서 평화시위를 했을 뿐 폭력을 쓴 사실이 없음에도 책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취지로 기술한 부분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공청회에 자료로 배포될 것이란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주최측에 김구 선생에 대한 허

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도 위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통하여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000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리는 등 일본강점기의 독립 열사들을 수차례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책과 유인물을 통해 유관순 열사를 3.1 운동을 폭력적으로 주도한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표현하고, 김구 선생이 일본인 쓰치다를 죽인 것에 대해 “살인마”라고 표현했다.



## [일본동향]

### 수신료 소송에서 NHK 승소 일본 최고재판소, 확정 판결

일본 최고 재판소 제3소법정은 2011년 5월 31일 TV 수신료 지불을 거부한 3명의 남성에게 대하여 NHK가 제기 한 수신료지급의 소에서 이 남성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1년 6월 7일자 신문협회보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남성 3명은 NHK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청료 지불을 거부해왔다. 이들은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민간방송의 시청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도쿄 고등법원은 2010년 6월 29일 「방송법은 민방의 시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합계 193,700엔의 수신료 지불을 명했다.

### 도쿄고법, '기사가 허위 보도'라 적힌 전단은 명예훼손 언론사에 승소판결

2011년 6월 7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도쿄고등법원은 2011년 5월 30일, 시바(千葉)현 초시(銚子)시장선거에 입후보한 모키가오루(茂木薫-이하 '모키'라 한다)와 모키가 세금을 체납했다는 기사를 게재한 요미우리 신문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 모키에게 220만엔을 요미우리 신문에 지급할 것을 명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모키의 세금 체납에 관한 기사를 실은 이후, 모키가 「나에게 취재를 하지 않았다」「허위 보도」라고 쓴 전단을 배포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009년 5월 8일 조간 시바현판에 「모키씨 세금 수십만 체납 초시 시장 선거 출마예정 『회사경영 부진으로』」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모키가 적어도 세금 수십만엔을 체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키는 그 후 기자회견과 신문에 전단을 끼워 넣어 기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요미우리에 대해 360만엔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한바 있다.

도쿄고법은 「대신문사로서 신뢰성을 지녀야 할 요미우리가, 일부지역의 일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수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010년 12월 15일 1심 도쿄지법이 판결한 330만엔의 배상액은 감액됐다.

### 수갑을 찬 모습의 사진게재는 유족감정 침해 도쿄지법, 산케이신문사와 야후에 배상명령

2011년 6월 21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2011년 6월 15일 도쿄지방법원은 2008년 총격사건으로 미국에서 체포되어 로스앤젤레스시경내에서 자살한 미우라가즈 요시(三浦和義·일본에서는 무죄확정)의 부인이 미우라가 별도의 사건으로 체포·연행되는 사진 등이 뉴스사이트에 게재되어 정신적고통을 받았다면서 야후(yahoo)



와 사진과 기사를 배신한 산케이(産經)신문사를 상대로 66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유족감정을 인정, 사진을 공표한 양사에 대해 공동으로 6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산케이 신문은 미우라 사망 관련 뉴스를 배신하면서 1985년 9월 미우라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사진을 사용했고, 야후가 이를 뉴스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당시의 수갑을 찬 모습의 사진을 게재할 필요는 없었다」며 유족감정의 침해를 인정하고 「야후는 사람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사진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게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삭제하는 의무를 진다」며 게재 책임을 강조했다.

### 실명 게재 서적을 비판한 사설

#### 사실에 근거하면 위법 아니다

2011년 6월 21일자 신문협회보에 의하면, 2011년 6월 7일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은 1999년 4월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발생한 모자살해사건의 피고인(사건 당시 미성년으로 사형판결을 받고 상소중)의 실명을 게재한 서적에 대한 마이니치신문 사설로 인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는 마스터미치코의 2,200만엔 손해배상청구 상고를 기각했다.

마스터미치코는 2009년 11월 11일자 조간의 사설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출판하려고 한 행위는

기습적이다, 「이익 우선이라는 비판은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는 등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6월의 1심 도쿄지법의 판결은 「사설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논평의 영역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12월의 2심 도쿄고법도 「사실이 전제로 하고 있는 사실에 오류가 없으며 의견이나 논평의 영역을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여 마이니치신문의 위법성을 부정했다.

## [영국동향]

### 영국 왕세자비의 가족, 사생활침해로 PCC에 불만 접수

영국 왕위계승 서열 2위 윌리엄 왕자와 결혼한 케이트 미들턴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영국 왕실과 사돈을 맺은 미들턴의 가족들까지도 덩달아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신부 들러리를 서면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케이트 미들턴의 여동생, 케이트 피파의 경우 언니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지 타블로이드 신문들이 연일 이들의 일상사를 지면에 쏟아내면서, 미들턴 집안은 파파라치들의 집요한 사생활 추적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요신문인 뉴스오브더월드(NoW)를 포함해 미러, 일간 데일리 등 4개의 신문이 최근호에 케이트와 피파의 비키니 사진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 사진들은 2006년 미들턴 가족이 윌리엄 왕자와 함께 스페인의 이비자 섬으로 휴가를 떠났을 때의 사진들이다. 사진들 속 인물들은 요트 위에서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다.

몇 장의 사진들은 당시에도 보도된 것이었지만, 케이트와 피파의 유명세가 다시금 치솟자 신문들은 다시 그 사진들을 실었다. 특히, 해킹사건으로 영국 언론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오브더월드는 피파가 비키니의 상의를 벗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언론사들의 도를 넘은 취재 열기에 그동안 언론 보도에

침묵하다시피 해온 미들턴 가족은 사생활침해가 심각하다며, 지난 5월 초 영국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 PCC)에 정식으로 불만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PCC의 대변인은 “4개의 신문에 실린 사진들에 관련된 불만이 미들턴의 가족으로부터 접수돼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오토바이를 탄 파파라치가 케이트의 어머니와 피파를 계속해서 뒤쫓자 미들턴 가족은 언론사에 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PCC는 해당 언론사에 권고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영국의 언론윤리강령은 사적인 장소에서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나, 연예인이나 축구선수, 왕실가의 일원 등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더욱 이번 미들턴 가족의 사건에 대한 영국 PCC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 영국, PCC 구실못한다 여론 확산

#### “법적 규제기관 만들자” 목소리 커져

뉴스오브더월드의 전화 도청 사건을 계기로 영국 언론의 자율 규제기관인 PCC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8일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뉴스오브더월드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으로 점화된 PCC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해 국정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 조사와 별도로, 언론사의 윤리와 문화를 평가할 별도의 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국정 조사는 경찰이 해킹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도 신문사측의 로비를 받아 소극적으로 조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언론, 특히 타블로이드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1991년 자율규제기관인 PCC가 설립됐다. 하지만 PCC는 실질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PCC 위원장은 “위원회가 이번 도청 사건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인터내셔널이 PCC에 불법행위의 범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PCC 업무의 취약점을 토론했다. 신문사 측이 위원회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자체가 현 PCC 정책으로는 언론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언론계 안팎에서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법적 규제기관을 만들어 미디어 행태를 견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신문사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언론의 독립을 중시하는 풍토가 강한 영국에서 언론 규제법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캐머런 총리가 PCC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만큼, 영국 정부가 언론에 대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 영국 정부,

### 폭동 막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차단 검토

최악의 폭동 사태를 맞은 영국 정부가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막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8월 11일, 임시로 소집된 의회에 참석해 “RIM사의 블랙베리 메신저 서비스가 폭동에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라며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영국 정부는 폭동이 SNS를 통해 급격히 번지고,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진압하기 힘들어져 이러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캐머런 총리는 경찰의 대응이 폭동 초기에는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는 거리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주말에도 런던 시내에 모두 1만 6,000명 수준의 경찰관을 배치하겠다”며 폭동 저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변호사들과 자유 연설가 등은 즉각 반발했다.

오픈라이트그룹의 전무인 짐 킬록(Jim Killock)은 “사람들의 소통을 차단한다면, 그들은 자유를 침범당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IM 영국지사 대변인과 트위터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이나 즉각 답변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

다”며 “폭력 위협이 있는 내용들은 모두 삭제됐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6~9일 런던을 비롯한 잉글랜드 중북부 지방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지금까지 런던 922명, 웨스트미들랜즈 330명, 맨체스터 140명 등 모두 1,5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런던 경찰청은 922명 가운데 401명을 폭력, 약탈 등 혐의로 기소했다.

### 영국 내무 장관,

### 청소년 폭동의 익명성은 보호하지 않겠다

지난 8월 18일 영국의 영국 왕립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은 폭동에 참여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청소년 범죄 보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내무 장관인 테레사 메이(Theresa May)가 “청소년 폭동의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게 익명성을 배제하라는 언급을 한 다음 마련되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한 행동강령 1933. 49조는 청소년 법정에서는 당연히 익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동강령 39조 역시 지역법정이나 왕립법정에서도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에 관한 행동강령 49조와 비슷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공적 관심이

충분히 있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영국 왕립 검찰청은 공적 관심이 익명성 제한으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면 검사가 폭동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였다.

영국 왕립 검찰청은 “심각한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범죄자들을 처단하여 시민들을 만족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강경책은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을에서는 범죄를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 청소년 폭도들은 공동체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로 인해 공포심이 조장되고, 주민들 스스로 본인의 거주지가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생각을 갖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 왕립 검찰청은 익명성 제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판사는 반드시 공공의 관심과 청소년의 범죄 과정에 대한 보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던 익명성의 혜택이 법정에서는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대중의 관심이 쏠려있는 범죄에서는 합법적인 공공의 관심에 법원이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반응의 결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범죄예방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5명 중 1명은 18세이하 청소년이다. 하지만 8월 둘째주 런던 법정에서 섰던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청소년이었다.



## [미국동향]

### 미국법원,

### 신문방송 겸영 법안 무효판결

지난 7월 7일 미국 필라델피아 제3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방송과 신문을 겸영하는 법안이 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법안의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FCC 위원장 케빈 마틴(Kevin Martin)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CBS,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클리어 채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문사를 소유하고 있는 게넷 등의 끈질긴 로비 끝에 2007년 부시정권 임기 말에 얻어진 결과물이다.

미국은 1975년부터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대형 신문사들은 신문사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도록 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결과 주요 20개 도시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는데, 특히 '미디어 액세스 프로젝트(Media Access Project)'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이 법이 언론의 집중을 가속화시켜 언론시장의 독점화를 가져오고,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을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었다.

재판부가 이 법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주요이유

는 FCC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6번의 공청회를 가지긴 했지만 그 횟수가 너무 적었고,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파급력을 생각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이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FCC가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고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며 이 법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되었고, 지난 1975년에 제정된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금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 [해외 통신원 보고]

최지선 통신원, 파리2대학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 벨기에 법원, 구글에 사생활 침해로 벌금형

벨기에 법원은 최근 구글(Google)사에 전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을 위반한 혐의로 150,000유로의 벌금형을 내렸다.

연방 검찰은 개인 사생활 보호 위원회의 경고와 특수 경찰들의 수사를 통해 구글이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를 위해 작업 중이던 구글 차량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방문한 사이트 주소, 디렉토리, 이메일의 일부분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구글 차량들이 도로와 주변 사진을 찍기 위해 지나가면서 무선 인터넷(Wi-Fi) 장치까지 스캔하고 보안 장치가 없는 무선 인터넷의 경우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들을 수집하였던 부분이다.

이러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벨기에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제시 하였으며, 구글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이며 수집된 정보들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지난 3월 국립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사생활 침해로 100,000유로의 벌금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구글은 깊이 사과한 바 있다. 이 밖에

도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구글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 라가데흐 그룹 CEO, 명예훼손으로 '라 트리뷴'에 대해 소송 제기

프랑스 미디어 그룹인 라가데흐(Groupe Lagardère)의 CEO 아르노 라가데흐(Arnaud Lagardère)가 프랑스 경제 일간지인 '라 트리뷴(La Tribun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7월 25일자 '아르노는 여전히 라가데흐 그룹을 운영하는가'라는 제목의 '라 트리뷴' 기사가 라가데흐 그룹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신을 중상모략 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다.

'라 트리뷴'의 기사는 아르노 라가데흐 회장이 새로운 여자친구에 빠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있으며, 50살인 아르노 회장이 20세 여자친구와 처음 만난 과정 등을 인터뷰하는 비디오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 등에 대해 비판하며 아르노 라가데흐 회장이 그룹의 총수로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문은 아르노 회장이 아버지 장-뤽 라가데흐(Jean-Luc Lagardère)의 후계로 그룹 총수 자리를 차지한 점을 들며 아르노 회장의 그룹 경영 의지와 능력에 대해 그룹 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 프랑스 CSA, 슈드 라디오의 유대인 관련 발언에 경고

프랑스 시청각고등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는 지난 8월 22일 벌어진 슈드 라디오(Sud Radio)의 유대인 관련 발언에 대해 시청각 방송 내용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경고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사건의 시작은 다음과 같다. 8월 22일 슈드 라디오(Sud Radio)의 새로운 아침 프로그램인 '자유로운 메나르(Ménard en liberté)'에서 한 청취자는 뉴욕에서 성추문 스캔들로 법정에 선 전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칸이 유대인들의 로비로 인해 뉴욕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호베르 메나르(Robert Ménard)는 청취자의 말을 가로 막으며,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하였으나, 오후 4시~6시까지 진행되는 '리베르테 드 페롤(Liberté de parole)-말할 자유'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인 에릭 마제(Eric Mazet)와 미셸 카르도즈(michel Cardoze)가 이 문제로 다시 설전을 벌이면서 불붙기 시작하였다. 에릭 마제는 "스트로스-칸이 존경할만한 사람인가"라는 주제에서 "스트로스-칸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급작스럽게 하면서 오전 방송의 청취자의 이야기를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청취자들이 전화를 걸어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였다.

에릭 마제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 기자인 미셸 카르도즈는 이러한 방송 진행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방송 중에 그의 한숨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심지어 "이러한 이야기는 끔찍하고, 참기 어렵다. 반유대주의의 전형이다. 이런 헛소리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마제는 "청취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의견에 대해 환영하며, 우리 진실을 말하자!"며 계속 진행하기를 고집하였다. 이에 "멀미가 나기 시작한다."는 미셸 카르도즈에 대해 에릭 마제는 "그 말은 아무것도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덮어두어야 한다는 뜻이나?, 유대인들의 로비가 존재하지 않나?"며 반문했다. 이러한 설전에 대해 방송국으로 100명 이상의 청취자가 전화를 걸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8월 22일 처음 유대인들의 스트로스-칸 지지설을 제기했던 청취자는 25일 '자유로운 메나르(Ménard en liberté)'에 다시 출연하여 22일 오후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유치하게 유대인들과 관련한 주제로 다룬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스라엘의 친구와 프랑스 유대인 연합(La Confédération des Juifs de France et amis d'Israël)'은 이 방송 내용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SOS 인종주의(SOS Racisme)' 역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참기 힘들며, 낙인을 찍는 이야기와 가장 나쁜 반유대인주의의 전형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비난

하였다.

슈드 라디오(Sude Radio)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며, “에릭 마제가 프로그램 내내 스트로스-칸을 방어하며 실수를 한 것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책임자가 스튜디오에 배석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사건을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청각고등위원회의 시청각 방송 콘텐츠 윤리 팀장인 하쉬드 아랍(Rachid Arhab)은 “시청각고등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차별적인 언사’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꼼꼼히 조사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청각고등위원회는 9월 7일 슈드 라디오(Sud Radio) 이사진들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문제 재발 방지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시청각고등위원회가 특히 문제시 하는 것은 프로그램 진행자가 청취자들에게 의견을 말하도록 질문을 하고, 청취자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취자들이 그러한 의견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이 사건은 프랑스 방송에서 항상 문제시 되기 쉬워 모두들 조심하는 부분 중 하나인 인종주의 문제가 정치 현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스트로스-칸 문제와 얽혀 불거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청각고등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된 후 어떠한 징계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 자료

-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 국내언론관계판결
  - 외국언론관계판결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언론법제관련문헌
- 

PAC

##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 · 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 수영부 감독인 신청인이 권력남용과 행사 방해 등으로 인해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됐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2011경기조정62 · 63  
 청구명: 정정 · 손배  
 신청인: 김OO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기신문  
 중재부: 경기중재부  
 접수일: 2011.07.11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안양시에 서 열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상식도 없이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안양시 수영연합회가 시청 소속 수영부 감독인 신청인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 방해, 공금 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파악에 나섰고, 안양지역 수영 선수의 부모들이 신청인의 자질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학교 수영 감독을 사퇴시키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신청인은 이러한 보도내용 중 2008년 대회 때 타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했다거나 연합회로부터 금액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고, 감독직을 이용해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학교 수영감독을 사퇴시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조정대상보도 중 6월 28일자 보도에는 신청인의 주장이 반영되었고, 6월 30일자 보도는 안양시수영연합회의 입장을 인용하여 피신청인이 보도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 조정대상보도

경기신문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제하의 기사 및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제하의 기사(각 2011년 6월 28일자, 30일자 23면)

**내용 1**: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최근 열린 안양시에서 열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내부 갈등으로 시상식도 없이 파행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 안양시수영연합회가 시청 소속 수영부 감독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 방해, 공금 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양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35개팀 484명이 출전한 가운데 안양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안양시수영연합회 허모 전무이사와 안양시청 소속 김모 수영감독의 갈등으로 폐회식도 열리지 않은 채 막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이날 입상자들이 행사가 끝난 뒤 상장과 메달을 전달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연합회 측은 이같은 일이 김모 감독의 권력남용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안양시에 투서를 제출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 감독이 자신의 제자에게 최우수상을 주지 않는다며 고성을 내고, 진행요원 9명 중 자신이 데려왔던 5명을 철수시키는 바람에 대회가 파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또 “김 감독이 지난 2009년 수영대회 때는 심판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일부 지급하지도 않고, 2008년 대회 때도 타 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김 감독 과다 사용된 비용 200만원의 반환을 요청했다”며 “특히 김 감독은 지난 1997년부터 시청 수영감독 직을 이용해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 등에 각종 압력을 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은 “대회진행 과정에서 연합회 허모 전무가 심판과 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제자 3명과 자녀 2명을 돌려보냈지만 대체 인원을 투입해 최대한 대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 했다”며 “또 특정팀에 상을 주자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연합회에서 지적한 예산문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모든 예산은 당시 사무장이 연합회 측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또한 대회가 끝난 뒤 카드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연합회 측의 투서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진위파악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내용 2 :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안양시청수영부 감독 때문에 제11회 안양시장기 생활체육 전국수영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28일자 23면) 안양지역 수영 선수의 부모들이 시청 수영감독의 자질문제를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안양시가 이미 3개월 전에 수영감독의 자질문제를 거론한 각종 민원 중 일부가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징계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29일 안양시와 안양시수영연합회 등에 따르면 안양지역 일부 수영선수의 부모들은 시청 수영부 김모 감독이 감독직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선수 부모들에게 돈을 빌린 뒤 늦게 갚는가 하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해당 학교 수영 감독을 사퇴시키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김 감독이 수년전부터 선수나 부모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감독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김 감독의 이같은 태도 때문에 안양지역 학교 출신 선수들이 타 지역 운동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감독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수영을 하는 자녀에게 해를 끼칠까봐 쉬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안양시가 지난 3월 말 김 감독과 관련된 각종 진정서를 접수받아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도 징계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시 감사실은 지난 4월 말 ‘김 감독이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각종 금전채무관계, 수영장 이용시설비 미지급’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시 교육체육과에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 감독이 지난 1997년부터 감독직을 계속 맡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김 감독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해임여부나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3개월 전 문제가 제

기된 부분도 추가 확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감독은 본지 보도 이후 휴대전화를 정지시킨 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은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가. 제목 :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지 2011년 6월 28일자 23면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6월 30일자 23면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각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시청 수영감독에 대해 안양시수영연합회가 김 감독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방해, 공금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한 일련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김 감독이 2008년 대회 때 타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안양시 대회와 타시도 대회의 예산이 두 가지로 집행된 것으로써 예산과다 사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연합회로부터 200만원의 반환요청 받은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판비용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김 감독이 이 돈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수영입과 관련, 김 감독은 영입할 선수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타시도로부터 선수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독직을 이용하여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6월 30일자 보도에서 ‘김 감독이 선수나 부모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감독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과 안양시 감사실이 ‘김 감독이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각종

금전채무 관계, 수영장 이용시설 미지급’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수영 감독을 사퇴시키는 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 결과, 김 감독의 자녀가 제주도 한라배 수영대회 당시 어깨에 강한 통증이 있음에도 단체경기까지 모두 참가하고 서울에 올라와 병원에서 양쪽어깨에 핀을 3개나 박고 수술을 하였으며 극심한 재활 활동을 안양과 서울을 오가며하면서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 것과 관련하여, 담당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자녀 학교의 수영감독이 스스로 사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김 감독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고, 전국대회 등 수상을 할 정도로 선수들을 적극 훈련시킨 사실이 있어 훈련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감사실의 감사 내용은 김 감독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영장 시설비 미지급 보도 내용도 자녀에 대해 수영장 일일 사용권을 사용하다가 정기권으로 교체한 것이지 미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보도내용을 정정합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신문 인터넷 메인화면에 아래의 보도문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뜨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뜨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한다.

##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 〈합의내용〉

#### 1. 보도문

가. 제목 :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론’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지 2011년 6월 28일자 23면 “ ‘시상식 없는 수영대회’ 해프닝” , 및 6월 30일자 23면 “안양시청 수영감독 자질문제 비난 확산” 제목의 기사에서 ‘안양시청 수영감독에 대해 안양시수영연합회가 김 감독을 상대로 권력남용, 행사방해, 공금착복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안양시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고 보도한 일련의 내용에 대해 김 감독은 2008년 대회 때 타대회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연합회로부터 200만원의 반환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김 감독은 수영대회 심판비용 지급문제에 관여한 바 없고, 선수영입과 관련하여 영입할 선수가 없어 타시도로부터 선수를 영입한 사실이 있을 뿐 감독직을 이용하여 대회 개최와 선수영입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6월 30일자 보도에서 ‘김 감독이 선수나 부모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는 내용과 안양시 감사실이 ‘김 감독이 권력을 남용한 사례와 각종 금전채무 관계, 수영장 이용시설 미지급’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자녀학교의 수영감독 사퇴부분도 민원제기 및 취하 과정에서 수영감독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김 감독이 사퇴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등 수상을 할 정도로 선수들을 적극 훈련시킨 사실이 있을 뿐 훈련을 소홀히 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안양시 감사실이나 시체육교육과 차원에서 감사결과를 확정된 후 김 감독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행한 사실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기신문 2011년 7월 21일자 23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2011년 6월 28일자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할자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경기신문 인터넷 메인화면에 위 보도문의 제목을 2011년 7월 21일 09:00부터 7월 22일 09:00까지 1일간 게시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이 게시되도록 하며, 그 이후에는 2011년 6월 30일자 조정대상 기사 본문 하단에 상자기사로 이어서 게시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1제주조정44 · 45

청 구 명 : 정정 · 손해

신 청 인 : 김OO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주도민일보

중 재 부 : 제주중재부

접 수 일 : 2011.07.08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제주 사라봉을 지나는 올레길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사라봉 인근의 한 폐가가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1978년 건축된 문제의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심지어 마을에서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던 집이라 주인이 손을 놓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으며, 특히 주민들은 해당 폐가가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기사에 언급된 주택은 본인의 소유로, 현재 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바로 옆집에 신청인이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보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며, 신청인의 주택이 폐가라는 이미지가 조장됨으로써 주택의 재산상 가치가 절하되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심리결과, 신청인은 보도된 올레길 근처에 건물이

많지 않아 충분히 자신의 주택임이 특정되었으며, 신청인의 허락 없이 기자가 무단으로 주택에 침입하여 내부를 촬영, 보도함으로써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음을 주장하였고, 정정보도와 상징적 수준의 손해 배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 조정대상보도

제주도민일보『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제하의 기사(2011년 4월 22일자 사회면)

**내용 :** 사라봉 인근의 한 폐가가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오는 23일 사라봉을 지나는 올레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주민들은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기대하는 한편 폐가가 흑여 올레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다.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문제가 된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지난 1978년 지어진 2층 단독주택이었다. 집은 이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랜 듯 외벽 천정에 커다란 구멍이 나고 화단이 갈라져 있는 등 낡고 허름했다. 현관문 너머 내부를 살펴봐 커커이 쌓인 집기들과 그위로 먼지와 거미줄이 보였다. 벽시계와 거울은 20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오래된 것들이었다.

주민들은 “집은 있는데 사람만 없다”며 십수년째 세를 주지도, 집을 팔지도 않는 주인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마을에서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던 집이라 주인이 손을 놓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특히 사람이 살지 않음에도 현관문이 잠기거나 열린 때가 있어 주민들은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소수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유주와의 조율을 통해 폐가를 오히려 색다른 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안도 거론되고 있었다. 어쨌든 주민들은 행정에 민원을 넣어 해결책을 찾겠다는 궁리다. 건

입동은 단순히 민원이 있다고 행정이 사유재산에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소유주와 접촉해 주민들의 우려를 일단 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제의 집은 230여㎡의 대지에 연면적 210㎡로 지어진 2층 주택으로 지난 1978년 건축됐다.

###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제주도민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한다.

가. 제목: “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4월 22일자 사회면에 “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라는 제하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고 비행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한 폐가가 올레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사라봉 주민들 걱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본 건물은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층에는 현재 2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 〈합의내용〉

#### 1. 보도문

가. 제목: ‘소문 무성한 폐가, 어찌지?’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지는 지난 4월22일자 사회면 ‘소문 무

성한 폐가, 어찌지?’ 제하의 기사에서 사라봉에 위치한 폐가가 올레 18코스 개장을 앞두고 올레꾼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어 주민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건물 2층에는 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인 또한 지속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기사로 인해 건물주에게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제주도민일보>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위 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활자 및 크기로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7월 22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학원이 있다는 보도에 이와 관련없는 신청인 운영의 IT직업전문학교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721·722  
청 구 명 : 정정·손배  
신 청 인 : 이OO  
피신청인 : 주식회사 한경닷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06.28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일부 학원이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증명서를 내주는 등 외국동포 직업교육제가 외국인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전문학교의 광고판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 전문학교는 보도 내용처럼 수강료만 받고 교육증명서를 내어준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 명시된 서울 차이나타운 내 IT직업전문학교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곳은 신청인 전문학교밖에 없으므로 신청인이 특정되고, 해당 사진으로 인해 관련기관 및 인근 주민, 학생들이 신청인 전문학원을 유추할 수 있기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해당 기사내용과 관계가 불분명한 신청인 전문학교의 광고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모자이크 처리 및 문제가 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만큼, 추가적으로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 조정대상보도

한국경제닷컴 『외국동포 직업교육 불법취업수단으로』 제하의 기사(2011년 6월 16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내 용** : 서울 차이나타운 내, 'IT직업전문학교'라는 새 간판이 큼직하게 붙어있는 한 낡은 건물 안 사무실. 16일 오후 이곳에서는 30대 중반의 중국 교포가 붉은 색 여권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학원 관계자와 상담 중이었다. 잠시 대화가 오간 뒤 중국 교포는 그 자리에서 교육을 받기로 결정했고 학원 관계자는 평소 거래가 있는 다른 사무실로 전화해 숙소 등을 알아봤다.

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중국 교포 수강생들이 몰려들고 있다"며 "직업교육을 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일

할 수 있는 외국 교포를 30만명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취업 희망자가 많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 추가로 기술교육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외국 교포가 일단 입국한 뒤 9개월의 기술교육을 받거나 최소 3개월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자격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외국인의 불법 취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일대 학원 강의실 중에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는 곳이 많다. 학원 관계자는 "학생들 대부분이 평일에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말에도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원칙상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격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으로 전일제 취업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학원 관계자는 "일부 학원은 수강료만 챙기고 기술교육 증명서를 내줘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석 확인을 해준다"고 말했다. 학원이 탈법을 조장하는 셈이다.

외국 교포 수강생들은 매달 25만~30만원의 학원비 외에 숙식비 등으로 최소 100만원은 지출해야 한다. 학원 교육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고용주들은 시간제로 일하려는 외국인을 꺼린다. 외국 교포들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배경이다.

학원도 수강료를 벌겠다는 생각에 수강생 모집에만 급급하고 있다. 대림동 차이나타운 등 외국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 537개의 교육기관이 외국 교포를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 '중급'이상의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지는 파악조차 안 된다. 제도가 도입된 뒤 지난해 2만여 명의 중국 교포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했고, 이미 2800여명의 외국 교포가 합법적 체류자격을 얻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실태 조사를 통해 교육

수료생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문을 이용한 출석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교육과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국경제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 수단으로")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가. 제목: "외국동포 직업교육 불법취업수단으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10일자 사회면 초기화면에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수단으로"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원이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등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석 확인을 해주고, 탈법을 조장한다고 보도하면서 서울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IT직업 전문학교의 광고판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해당 학교는 보도내용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합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 〈합의내용〉

#### 1. 보도문

가. 제목: 반론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 사회면에 “외국동포 직업교육제, 불법취업수단으로”라는 제목으로 일부 학원이 외국동포를 상대로 수강료만 받고 교육 증명서를 내주는 등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도 출석 확인을 해주고, 탈법을 조장한다고 보도하면서 서울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IT직업전문학교의 광고판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보도내용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2011년 7월 13일 이내에 한국경제의 홈페이지 사회면 중앙 상단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2, 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인력 중개업소들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700

청 구 명 : 정정

신 청 인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피신청인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중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11.06.21

처리결과 : 조정성립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 조사를 인용, 일부 업체는 업체로부터 일을 소개받는 건설 노동자와 식당 도우미,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일러스트레이터 등 노동자들에게 최소 20%에서 60%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는 ‘월회비’ 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전국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구직 건설 근로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소 협회인 신청인 단체는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유료직업소개소는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관한 노동부 고시에 따라 법정 소개료 및 월회비를 준수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 ‘월회비’ 를 받는 것은 노동부 고시에 따라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져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건설 노동자 등의 경우 60%까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심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 ■ 조정대상보도

노컷뉴스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제하의 기사(2011년 6월 9일자 뉴스사회면)

내용 : (전략) 일부 노동자들이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수수료로 떼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올며 겨자먹기'식으로 업체 측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수수료를 받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직업소개소는 지난 1993년 1천980개, 고용 인구 2만 명이던 수준에서 2008년에는 8천600개, 28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제조업 공장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지역의 경

우 허가된 소개업체는 2009년 기준 43곳, 파견 업체는 경기지역 전체 347곳(2008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업장내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었다.

파견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신분인데다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업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구직자들에게 고용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와 식당 도우미,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일러스트레이터 등 업체로부터 일을 소개받는 노동자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건설노동자 김 모(28)씨의 경우, 일당 6만5천 원 중 직업 소개소와 현장 팀장이 각각 수수료를 챙겨 월급 190만 원 중 110만 원만 받고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은 수수료 대신 '월회비'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사도우미가 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3만5천 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간병인의 경우는 6만 원에서 6만5천 원의 회비를 낸다. 간병인 박 모(61)씨는 "몸이 아파서 6개월을 쉬었는데 소개소에서 밀린 회비를 내라고 했다"면서 "일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에 가면 소개소에서 회비 안 내고 간 사람이라고 미리 연락해 일을 못하게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직업 소개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4% 한도 내에서 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근로소득 4천800만 원 이상인 상위 25%의 사람에게만 수수료를 자율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퀵서비스 노동조합 양용민(46) 위원장은 "대다수는 수수료가 23%지만 40%까지 떼는 업주들도 있다"며 "업주들이 기사들 목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고 있는 격"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강남 봉은사와 여의도 등지에서 퀵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오는 10일까지 서명 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업체들의 횡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노컷뉴스 홈페이지 뉴스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가. 제목 :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구직]이라는 목마름 ①]만 원 벌면 4천 원이 수수료" 실태 고발 ·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노컷뉴스(<http://www.nocutnews.co.kr>) 홈페이지는 지난 6월9일 홈페이지 기사에 “만 원 벌면 4천 원이 수수료 실태 고발”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①“7일 한국 비정규직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건설 노동자와 식당 도우미, 간병인, 퀵서비스 기사, 일러스트레이터 등 업체로부터 일을 소개받는 노동자들은 최소 20%에서 최대 60%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건설노동자 김 모(28)씨의 경우, 일당 6만5천 원 중 직업소개소와 현장 팀장이 각각 수수료를 챙겨 월급 190만 원 중 110만 원만 받고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의 경우, 노동부 고시 제2010-8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구인자로 부터 임금의 10%를 넘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실제 구직자로 부터 소개요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구인자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경우에도 20%까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없으며도 최소 20%이상 받는 것처럼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②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은 수수료 대신 '월회비'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사도우미가 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평균 3만5천 원의 회비를 내야 한다. 간병인의 경우는 6만 원에서 6만5천 원의 회비를 낸다.”는 기사로 마치 전국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구직근로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에 관한 노동부 고시 제2010-8호”에 따르면, ‘월회비’를 받는 부분은 합법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료직업소개소는 법정 소개료를 준수하고 있으며, 월 6만원의 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의 소개요금을 합한 금액임을 명시하여 드립니다.

####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 〈합의내용〉

##### 1. 보도문

가. 제목: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관련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신문은 지난 6월 9일 “우리 목에 빨대 꽂고 쪽쪽 빠는거죠” “만 원 벌면 4천 원이 수수료 실태 고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의 직업소개소 사업자들이 구직 건설 근로자에게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는 ‘월회비’라는 변종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노동부 고시 제2010-8호에 따라 직업소개소 사업자가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에게 ‘월회비’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소

속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법정 소개료 및 월회비를 준수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2011년 7월 15일 이내에 노컷뉴스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중앙상단에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보도문 내용이 표시되게 한다. 이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위 보도문 내용을 원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이어서 게재한다.

3. 피신청인이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 3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또한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더 이상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1서울조정658·659

청구명: 정정·손배

신청인: 허OO

피신청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인규

중재부: 서울제2중재부

접수일: 2011.06.08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결혼의 달인 5월에 알뜰한 결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단돈 20만원이면 결혼비용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에서 신청인이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사진을 3초 동안 방송하였다. 이 사진은

신청인의 헤어 메이크업을 해준 헤어디자이너가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이 사진을 검색, 워딩업체의 홍보성 사진인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인의 별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실제 1,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결혼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과 제3자로 하여금 신청인이 저렴한 비용의 결혼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정정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보도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방영시간 3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었던 점,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중요한 사진이 잘못 이용되어 신청인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 ■ 조정대상보도

KBS-2TV <뉴스타임> 프로그램『알뜰 결혼 대작전』 제하의 보도(2011년 5월 11일자 뉴스타임)

###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KBS 뉴스타임>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가. 제목 : 본 프로그램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전'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사의 2011년 5월 11일자 '알뜰결혼대작

전' 방송 중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사진은 위 방송과 전혀 무관하게 입수한 자료로써, 사진 속의 인물은 그러한 방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립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 사건 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이유>

#####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뉴스타임」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정보 관련 방송을 하면서 신청인이 결혼식을 위해 머리를 손질하는 사진을 약 3초간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허락도 받지 않고 초상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청인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공개된 블로그에 게시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되는 것을 신청인이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영시간 3초는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인 점, 평범한 결혼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구려 결혼식을 했다고 오인 받거나 진실과 다른 거짓 방영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오인 받을 우려가 있는 점, 평범한 일상의 사진이 아니라 결혼에 관한 사진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서 이와 같이 이용되는 것에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 피신청인은 공중파로서 사회에 대한 큰 영향력을 가진 점, 일단 방영된 이후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만한 실질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부정적이거나 모욕적인 내용에 이용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 제작한 프로그램인 점, 외주 제작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내언론관계판결

**언론으로서는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9월 2일, 농림수산물부가 지난 2008년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방송하자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폐소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8년 MBC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고, 이로 인해 촛불시위가 확산된 바 있다.

정정·반론 청구소송에서 쟁점이 된 주요사안은 총 7가지로 ①주저앉은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릴 가능성이 크다, ②아레스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③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상 5가지 SRM이 수입된다, ④한국인은 유전적 특성상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이다, ⑤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⑥ 특정위험물질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다, ⑦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그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는 부분들이다. 2심 재판부는 정정·반론 청구의 7가지 사안 중에서 ⑤와 ⑦ 2가지를 모두 허위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엎고 “정정·반론 보도의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평가나 의견일 뿐이다”라고 판단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⑤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며 PD수첩의 방송내용이 사실의 적시보다 의견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로 ⑦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사 건 : 2009다52649 정정, 반론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농림수산식품부

과천시 중앙동 1

대표자 서규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강현, 김필용, 송진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MBC경영센터

대표이사 김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

80595 판결

판 결 선 고 : 2011. 9. 2.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별지 4. 기재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④보도' 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고 한다)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이하 '피해자' 라고 한다)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보도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내용까지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나, 정정보도청구권이 가지는 의미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보도내용에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통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도내용 자체로써는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언론기관이 당해 보도를 하기 위하여 취재한 내용 등과 당해 보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 당해 보도가 그 사람에 관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당해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보도내용이 그 사람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취지는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방송은 도입 초기에서 미국 일부 도축장에서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뒤 도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어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으로 인간광우병이 의심되고 있다고 보도한 후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에는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중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협상 결과는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패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라고 보도한 다음, 특정 유전자형인 엠엠(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약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제④보도를 하고 난 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 것도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방송의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원고가 주도하였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제④ 보도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은 원고가 주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조건에 관한 비판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광우병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④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보도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하 '과학적 사실'이라고 한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그 과학적 사실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하여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추호의 의혹도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마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일 뿐더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의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여부는 그 이론이나 기술이 실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론이나 기술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집단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공표된

것인지, 오차율 및 그 기술의 운용을 통제하는 기준이 존재하고 유지되는지, 그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이론인지, 기초자료와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석적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거나 증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학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므로 불확실성은 과학의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특성이다. 이렇듯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 연구를 다루는 언론으로서의 과학의 불확실성을 확신하고 그 과학적 연구의 가정과 전제를 잘 살펴서 신중한 자세로 보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그 보도과정에서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그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

하는 피해자로서는 그 과학적 사실이 틀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이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영국에서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추어 보면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고 한국인의 경우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이 사건 제④보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로 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간광우병 환자 중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되고 동물실험결과에서도 엠엠(MM)형뿐만 아니라 엠브이(MV)형, 브이브이(VV)형 유전자 보유 쥐의 경우에도 광우병이 발병한 결과까지 보고되고 있는 사실,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에서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나 낮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근거로 내세우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인간광우병과 유전자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

고가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고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인 의미와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된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3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기 위하여는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가 교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그 후속 정정보도는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문장의 표현방식, 전체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문제된 원보도 부분의 의미, 그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 원보도로 야기된 피해상태 등 당해 후속 정정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후속 정정보도를 통하여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상태를 교정함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속 정정보도는 보도의 형식적 측면에서 방송분량, 방송의 위치, 시간대, 보도의 횟수와 말하는 속도와 시간, 화면의 구성, 제목이나 자막의 구성 방법, 원보도와 적절히 대비 등의 보도의 형태와 배치 등이 원칙적으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어야 후속 정정보도를 접하는 일반의 시청자가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에 관한 정정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후속 정정보도에서 정정보도청구로 구하는 내용과 일부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정도이거나 또는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추후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원보도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진실에 반하는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전히 정정보도청구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는 2008. 4. 29.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보도를, 2008. 5. 13.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라는 제목의 보도를, 다시 2008. 7. 15. “피디수첩 진실을 왜곡

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다.

② 2008. 7. 15.자 보도에서 피고가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전하고자 했던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는 내용의 후속보도(이하 ‘이 사건 후속보도’라고 한다)를 하였다.

③ 한편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번역상 오류 부분 및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정정 및 사과하는 부분, 2008. 4. 29. 방영된 피디수첩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진실을 왜곡했다는 일각의 비난은 과연 온당한 것이지를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마련했다면서 보도를 시작하는 도입 부분, 이후 2008. 4. 29.자 피디수첩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과 연상시킨 보도,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언론들의 지적에 대해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반박하거나, 검찰수사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 부분, 방송 끝 부분에서 송일준 프로듀서(이하 ‘PD’라고 한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후속보도를 하고, 다시 ‘앞으로 저희 피디수첩에게 번역을 꼭 바로 해라. 좀 더 흠 없는 방송을 만들어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달게 그 질책을 받겠다. 그런 질책을 양분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마무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반면 2008. 4. 29.자 방영된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림대학교 일송생명과학연구소 등의 취재화면이나

‘광우병과 인간유전자의 관계’ 등에 대한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판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후속보도를 살펴 보면, 먼저 보도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후속보도는 방송의 위치에 있어서 변역상의 오류들 및 진행상의 말실수 등에 대한 정정 및 사과를 한 앞부분과는 구별되게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2008. 7. 15.자 보도의 전체 취지는 2008. 4. 29.자 보도에 관한 비판에 대하여 재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제④보도는 취재화면이나 도표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 후속보도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부분에 진행자의 짧은 설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자막이나 화면의 구성에 있어서 정정보도라는 점을 표시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의 후속보도가 차지하는 방송분량, 방송에서의 위치, 원보도와 대비한 후속보도의 화면과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후속보도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로서의 균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후속보도의 앞부분, 즉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면 원심이 명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는 정정보도문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그 후속보도에서 연이어 ‘이 사건 제④보도의 전체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엠엠(MM)형 비율이 낮은 다른 나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는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후속보도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후속보도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 나.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⑤보도’라고 한다) 및 별지 7. 기재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⑦보도’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적 주장과의 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

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⑤보도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 그 협의 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한 다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5조, 제23조, 제24조와 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우리 정부에 원용이 허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하 'GATT' 라고 한다) 제20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우리 정부는 검역검사 과정에서 한 로트에서 식품안전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로트를 불합격조치할 수 있고,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에 의하여 수

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⑤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6.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2008. 4. 18. 개정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에 한하여 우리 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개정되었고, 이 사건 제⑤보도는 위와 같이 변경된 수입제한 규정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종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보도한 다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보도한 것인 사실, 이 사건 제⑤보도 이후 검역주권 상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시위가 격화되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서한교환 등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008. 6. 2. 우리 정부는 GATT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 및 동식물검역규제에 관한 협정' (이하 'WTO SPS 협정' 이라고 한다)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도 가능하였던 것임에도 이 사건 제⑤보도가 있자 우리 정부가 미국 당국과의 서한교환 등의 절차

를 거친 후 비로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추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당시에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의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상호 양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우리 정부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 내 광우병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하여서는 일방적으로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협상 결과, 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으로 인한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피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지 이를 두고 종전부터 가능하였던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기한 수입중단조치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⑤보도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이 사건 제⑦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⑦보도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

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에서 방영된 주저앉는 소의 도축 동영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주저앉는 소문제를 질의하자, 우리 정부 관계자는 문제의 도축장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의 작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국 검역당국에 질의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② 이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과 관련된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미국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과 미국 당국자의 발언(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는 관계없다는 취지) 내용을 보도한 후, 방송진행자인 송일준 PD와 김보슬 PD가 대화하는 방식으로 김보슬 PD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③ 다음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 허용의 문제점,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경우는 특정위험물질 중 편도와 회장원부만 제거하면 나머지 위험물질은 수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도하고 있다.

④ 이어서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산 쇠고기는 안

전하다. 광우병 유발인자인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99.9%는 안전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1억 마리 사육소 중에 일년에 3마리가 광우병에 걸린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한 다음, 그와 대비하여 미국의 소비자연맹 관계자가 “검역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식품 안전을 위해 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게 된다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을 보도하면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 중 15%만 개별 이력이 기록되고 있어 30개월령 이상 여부는 치아감별만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 특정위험물질 규정 위반이 1천 건 정도 발견되었다는 점, 해마다 도축되는 소 중 광우병 검사를 받는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는 점, 현재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반추동물물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어 간접적으로는 소가 소를 먹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도하고 있다.

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통제국 지위 부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미국 소비자연맹 관계자의 발언 및 일본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고 있다.

⑥ 이후 다시 송일준 PD가 “쭈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고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김보슬 PD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⑦보도를 하고 있다.

(ㄸ) 먼저,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고 미국

산 쇠고기의 광우병 발병확률이 지극히 낮고 광우병에 민감한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비판하는 부분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는 이 사건 제⑦보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⑦보도는 그 내용 중 ‘본 적이 있는지’와 같이 사실적 주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대상을 미국의 특정 도축장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는 다의적이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김보슬 PD가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상했다고 말을 했고 미국산 쇠고기는 99.9% 안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의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이 사건 제⑦보도와 관련된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

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이 사건 제⑦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패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는 사실적 주장과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 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⑦보도에서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⑦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제⑦보도는 그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제⑦보도를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별지 3. 기재 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이하 ‘이 사건 제③보도’라고 한다)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제③보도의 보도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어서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1. 기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및 별지 2. 기재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에 관하여 그 각 판시와 같은 피고의 후속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정도의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판시한 2008. 5. 13.자 보도내용, 2008. 6. 17.자 보도내용, 2008. 7. 15.자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소의 부위 중 특정위험물질에 해당하는 부

위의 분류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국제기구 또는 나라에 따라 분류기준이 상이한데 이 사건 제③보도 중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될 수 있다는 보도는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기준이 아닌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보도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정정보도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보도 내용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6. 기재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의 위험성에 관한 보도 내용은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평가 또는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대법원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 5. 기재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및 별지 7. 기재 미국산 쇠

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4.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한 상고이유 중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수의 견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1)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행위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진실에 반하는 보도로 인한 객관적 피해상태의 교정에 중점을 두어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이다. 허위의 언

론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언론중재법이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의 추궁과 별도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한,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기관의 주관적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고 그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이는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보도내용 자체를 정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이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정책의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수행을 심각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이 보고, 듣고, 읽는 이른바 '알 권리'의 보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사가 원보도의 내용을 정정하는 후속보도를 한 경우에 후속보도에 의하여 원보도로 인한 피해상태가 교정됨으로써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언론이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반면에 국가는 보도자료를

홍보자료를 이용하여 당해 보도에 대하여 스스로 반박하고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형성을 막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에 관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의 존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후속보도의 취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후속보도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명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후속보도한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엠엠(MM)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해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적 주장과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은 서로 다른 별개의 주장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단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허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보도문에 명시적으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심이 명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이러한 정정보도문을 접한 일반 시청자들이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도 없어, 허위의 정정을 통한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정정보도 청구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다수의견은 이 부분 후속보도의 전체 취지를 ‘비록 인간광우병 발병확률이 94%에 달하지는 않지만 엠엠(MM)형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보도와 원심이 명한 정정보도문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94%라고 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는 것은 잘못된 보도이고 특정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이 발발할 확률을 예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부분 사실적 주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일이지, 그와 별개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정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원심이 정정보도를 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방송 후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후속보도를 방송함으로써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보도를 명한 정정보도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제④보도에 포함된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하여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라는 사실적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교정을 가할 수도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 역시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한다.

## 5. 피고의 이 사건 제④보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중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제④보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나아가 그 보도 자체가 허위라고 본 다수의견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하기 어렵다.

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

이 필요하고, 그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1)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일 때 인정되며 세부적인 면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도록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상태에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그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주

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과학에서의 인과관계란 항상 직관적이고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학자들은 양립하지 않거나 모순되게 보이는 과학적 연구들을 언제든지 제시하여 상반되는 과학적 사실의 신빙성을 다룰 수 있고, 또한 현대의 과학기술 수준이라는 것은 절대적 확실성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며, 과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여 어제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허위로 판명된 사례를 역사상 찾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적 주장의 진실 여부는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에서 사용된 과학적 원리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허위성이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판단 이유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면, 정상인의 경우 프리온 유전자 129번 코돈 부위에서 유전자 다형성(MM형/MV형/VV형)을 나타내는 사실, 영국에서 발생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인간광우병) 환자 13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이 모두 엠엠(MM)형을 보유한 사실, 국내 정상인 529명에 대한 조사결과 그 중 94.33%에서 코돈 129번의 유전자형이 엠엠(MM)형으로 밝혀진 사실, 2003. 5. 경 한림대 의대 김용선 교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프리온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코돈 129번에서 유전자 다형성이 나타나는데, 영국의 경우는 정상인의 42%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형 유전자를 의미한다)를 가지는 데 반하여 영국에서 발생된 모든 새로운 인간광우병 환자들은 100%가 코돈 129번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므로 코돈 129번의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는 광우병에 걸린 소를 섭취했을 때 인간광우병에 대한 감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전인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립보건원과의 공동 연구로 국내 정상인 500명을 대상으로 프리온 유전자의 코돈 129번의 다형성을 분석한 결과 95%에서 메티오닌 동질접합체가 나타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메티오닌 동질접합체를 가지고 있는 민족으로 보고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학계에 보고된 인간광우병의 경우 코돈 129번 다형성은 100% 메티오닌 동질접합체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 정상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전세계적으로 제일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내용의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사실, 원고 또한 스스로 2007. 9. 11.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한국인이 인간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 가량 된다”,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 및 맥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④보도는 코돈 129번 유전자 엠엠(MM)형과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 한국인 및 영국인, 미국인의 각 국민별 엠엠(MM)형 유전자 보유 비율에 주목하여 한국인의 94%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엠엠(MM)형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낮은 다른 국민들보다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에 보도의 핵심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

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부분이 허위라고 보려면 그것이 근거로 삼은 과학적 증거에 과학적 원리에 반하는 심각한 불합리성이 있거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현저히 부실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로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 추측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허위성 판단의 증거로 거시한 갑11호증 내지 갑15호증은 모두 이 사건 방송 후 인간광우병 발병과 엠엠(MM)형 유전자 보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도한 언론 보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엠엠(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것은 영국인에 대한 연구 결과일 뿐이고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취약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거나 또는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과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정도뿐이다.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영국인에 한하여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일 뿐이어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높은 한국인이 그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④보도가 근거로 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

정만을 들어, 한국인의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다른 국가의 국민들보다 높아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이 사건 제④보도의 핵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제④보도가 허위보도라는 이유의 하나로, 사실과 허위 어느 쪽으로도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과학적 사실을 그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정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위 여부가 미확정 상태인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보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에 그 사실이 진위 여부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자(시청자)들에게 사실 여부의 미확정 상태와 사실로 확인된 상태 양자의 대비 관계에서 후자에 속한다는 취지를 전달하거나, 그 보도된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의견의 주장과 같이 연구의 한계나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하게 사실의 보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도된 사실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오랜 관행과 독자(시청자)들이 보도내용을 이해하는 통례에 비추어 부당하고 무리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대부분의 언론보도가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로 되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도가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단정적 보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제④보도는 송일준 PD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

약하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었다고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정은 아나운서가 이 사건 제④보도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간광우병 환자와 한국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이로써 그 보도사실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그 추론에 일정한 한계 또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그 보도의 표현 중에 연구의 한계나 진위 불명 상태라는 점을 명시적인 문구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단정성 측면에서 허위인 보도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표현방식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정도의 보도를 단정적인 보도로서 허위성이 있다고 본다면 정정보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도가 얼마나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이 사건 보도를 한 “PD수첩” 프로그램은 이른바 시사고발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주제에 관하여 기획취재와 분석을 거쳐 문제제기와 비판, 감시와 방향제시 등 역할을 목표로 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은 비판과 문제제기를 그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고발성 프로그램이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보도를 할 때에는 비판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점을 부각시켜 강조하고, 책임추궁, 비난, 시정요구 등 대립적이고 공격적인 표현과 논조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과장, 편향, 오류 등 크고 작은 잘못이 개재될 가능성 또한 높다. 언론기관의 잘못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가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지만, 그 구제수단은 정부나 사회 주도세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다양한 여론형성, 소수자·반대자들의 의사표현의 통로 등 언론기관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행하

는 중요한 역할과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 그 중에서도 고발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 통용되고 있는 이론과 다른 이론(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에 불과한 이론)에 근거한 비판·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재되는 일부 과장이나 오류에 무게를 두어 통상적인 사실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나 사후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고발성 프로그램의 비판·감시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정보도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보도가 허위보도였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를 보는 독자(시청자)들에게 종전에 제시한 사실보도나 주장과 견해가 근거 없고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효과를 동반하게 될 것인데, 언론보도 중 그와 같이 취급해도 좋을 정도로 신뢰성 없는 자료에 기초하였거나 완전히 외면될 정도의 가설에 따른 보도가 아닌 한 정정보도를 선불리 허용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고발성 프로그램의 보도는 사실의 보도라기보다는 의견과 주장의 측면이 강한 보도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 보도는 전체적으로 쇠고기 섭취에 따른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사건 제④보도는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위험인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것이다.

인간광우병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발병하기만 하면 치유가 불가능하여 죽음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것도 우리가 식생활에서 음식으로 광범위하게 섭취하고 있는 쇠고기로부터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인간광우병이 발병하는 기전(機轉)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된 것이 거의 없어 더욱 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질병이다. 따라서 인간광우병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감염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감염이라는 결과 자체가 더 이상 돌이킬 여지없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의 감염위험인자가 될 만한 사정에 관하여는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경우에만 보도를 통하여 정보로서 제공될 수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과학적으로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감염위험인자가 될 수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기 전까지는 언론시장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질병 감염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적어도 이러한 질병에 관해서는, 어떠한 사정이 감염위험인자로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인자로서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조차 제공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그것을 예방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었다가 설사 그것이 나중에 가서 틀린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에 비하여도 더욱 끔찍한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에 관한 보도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틀림없다’고 무조건 단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인의 유전적 특성이 인간광우병의 감염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것이라면, 이러한 내용의 정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능동적으로 나서서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제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기관이 그 정보를 제공한 언론 보도에 대하여

관련된 정보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터무니없는 것임을 내세워 정보제공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심한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④보도 중 한국인에게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거나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에 이른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수치를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보도의 핵심 내용인 한국인이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점에서도 그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 6. 이 사건 제⑤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이견

가. 이 사건 제⑤보도 부분이 의견의 표명이라는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동할 수 없다.

나.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이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⑤보도의 요체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한 내용에 집약되어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본 대로 그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터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보도의 표현으로 볼 때 과연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바로서, 이를 오로지 종전의 수입위생조건과 개정된 수입위생조건과의 차이점을 평가하고 이를 비판하는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⑤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은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원고가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

는 부분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및 미국 모두 WTO 협정 가입국으로서 그 부속협정인 GATT 제20조b항과 WTO SPS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인간 등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치는 원칙적으로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과학적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국은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회원국은 관련 국제기구로부터의 정보 및 다른 회원국이 적용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 입수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GATT 제20조b항, SPS 협정 제2조, 제3조, 제5조 제7항 등)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우리 정부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계없이 GATT 제20조 및 SPS 협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⑤보도는 문언 자체에서 보도의 객관적 입증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계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⑤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 7. 이 사건 제⑦보도에 관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대한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병대의 반대이견

가. 이 사건 제⑦보도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동할 수 없다.

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있어서 표현내용이 일반 평균적인 시청자의 이해에 따라 객관적 설명과 입증에 가능하고 그 표현으로부터 증거에 의해 접근 가능한 사실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비록 그 표현이 평가적인 요소로 윤색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보도와 정정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보도는 일응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13. 2002다490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⑦보도 중 원고가 정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와 관련하여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부분은 비록 피고가 그 말미에 가치평가적인 어휘인 '의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과 공간이 특정된 구체적인 과거 시점의 원고의 행위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표현으로 입증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⑦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게재를 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제⑦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함은 명백히 드러난다. 즉 이 사건 제⑦보도는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나 원고가 계재를 구하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은 ‘원고가 2007. 6. 30.부터 7. 8.까지 두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제⑦보도와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계재를 구하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문은 그 당시 상황에 관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고 있다.

다. 의견은 대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사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의견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설사 이 사건 제⑦보도에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거기에 전제된 사실의 내용이 달라지면 의견 표현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원고가 미국 도축시스템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보려 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점검하기는 하였지만 미흡하다거나 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은 일반의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객관적인 진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의견의 표명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 사건 제⑦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의견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제도는 그 본래 취지가 허위인 사실적 주장이

담긴 보도로 인한 피해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보도가 어떤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제된 사실이 허위라면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바까지도 의견 표명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⑦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견에 찬동하지 아니 한다.

#### 재판장

대법원장 : 이용훈

대법관 : 박시환

대법관 : 김지형

대법관 : 김능환

대법관 : 전수안

대법관 : 안대희

대법관 : 차한성

#### 주 심

대법관 : 양창수

대법관 : 신영철

대법관 : 민일영

대법관 : 이인복

대법관 : 이상훈

대법관 : 박병대

**[별지 1]****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에 관한 보도 부분**

미국 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나 물대포로 주저앉은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은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위 동영상을 제작한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가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 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의 보도, 이어 2008. 4. 16.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린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방영하면서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라는 내레이션의 보도, 이어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 마이클 핸슨이 “(미국산)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저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한 뒤, 송 일준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 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라는 내용의 보도, 끝.

**[별지 2]****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에 관한 보도 부분**

미국 와이.에이.브이.와이(WAVY) 텔레비전 방송이 2008. 4. 8.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펠트 야콥병(vCJD,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병은 뇌질환으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광우병입니다”라고 방송한 부분을 인용한 보도,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사실은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엠.알.아이(MRI) 검사결과 아레사가 인간광우병(v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인터뷰한 내용의 보도,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 바루이 “일반 크로이펠트 야콥병(CJD)은 엠.알.아이(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변종 크로이펠트 야콥병(vCJD)이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pulvinar)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의 보도, 끝.

**[별지 3]****특정위험물질 수입에 관한 보도 부분**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바로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이라고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다섯 가지는 들어 오게 된다”라는 내용의 보도, 끝.

**[별지 4]****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위험성에 관한 보도 부분**

“한국인 500여 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 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엠엠(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엠엠(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 끝.

### [별지 5]

####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시 우리정부 대응조치에 관한 보도 부분

“이춘근 PD! 과연 대통령이 협상 내용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특히 문제가 생겨도 우리나라가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라는 송일준 PD의 질문에, 이춘근 PD가 “그전에는 등뼈 같은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두 차례나 등뼈가 나와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보도 끝.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의 인터뷰 내용, 미국에서 도축 되는 4천만 마리 내외의 소 중 광우병검사를 받는 소는 0.05%에 불과하고 미국 농무부 조사관의 소에 대한 검역은 형식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다음, “김보슬 피디(PD)! 쪽 보면 말이지요, 그간 광우병이 너무 과장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라는 송일준 PD의 질문에, 김보슬 PD가 “사실 협상팀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 끝.

### [별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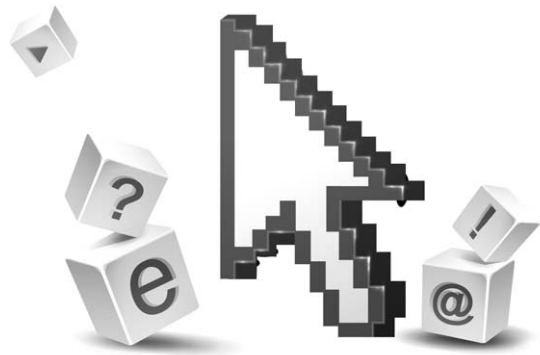
#### 라면스프 등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위험에 관한 보도 부분

“이춘근 PD! 쇠고기만 또 안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라는 송일준 PD의 질문에, 이춘근 PD가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뿐만 아니라 라면스프, 알약캡슐, 심지어는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보도 끝.

### [별지 7]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협상태도에 관한 보도 부분

미국 도축장에서 다운너 소가 억지로 일으켜 세워지는 장면, 아레사 빈슨의 사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영향을



## [일본판례]

**자살한 고교생의 어머니와 그의 수임변호사가  
고소 또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  
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지불하고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원 고 : 고오노 타로 (甲野太郎)

피 고 : 오토야마 하나코 (乙山花子)

헤이가와 마츠오 (丙川松夫)

사건명 :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대상사건 : 나가노(長野)지법 우에다(上田)지부

2009(7)140호

판결내용 : 일부 인용(항소)

참조조문 : 민법 709조, 710조, 710조의1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만엔 및 이에 대한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 乙山花子は 원고에 대해 시나노마이니치(信濃毎日)신문의 전현판(全縣版) 조간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1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3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3. 피고 丙川松夫는 원고에 대해 전기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의 전현판 조간 사회면 광고란에 별지2 기재의 사죄광고를 별지3 기재의 조건으로 1회 게재하라.

4. 원고의 다른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해 가집행할 수 있다.

## 사실 및 이유

## 1.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만엔을 지급하고,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가산금리에 의한 금전을 지불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전기 시나노마이니치신문의 전현판 조간에 별지4 기재의 사죄광고를 1회 실되, 제목은 17포인트의 고딕체 활자로 하고, 원고 및 피고들의 이름은 14포인트의 활자로 하며 기타 부분은 12포인트의 활자로 각각의 활자를 사용하여 게재하라.

3.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丁原고교 집단괴롭힘 자살사건」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이하 「본건 블로그」로 한다) 모두부분(1항)에 별지5 기재의 사죄광고를, 제목은 17포인트의 고딕체 활자로, 원고 및 피고들의 이름은 14포인트의 활자로, 기타 부분은 12포인트의 활자로 하여 1년 6개월간 게재하라.

## 2. 사안의 요지

나가노(長野)현 丁原고등학교 (현재는 戊田고등학교, 이하「본건 고교」로 한다) 학생인 고오다타케오(甲田竹夫·이하「竹夫」로 한다)가 2005년 12월 6일 자택에서 자살했는데, 竹夫의 모친인 피고 乙山花子(이하「피고花子」로 한다) 및 피고花子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인 피고 丙川松夫(이하「피고丙川」로 한다)는 ①본건 고교의 교장인 원고가, 竹夫에 대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고소장(이하「본건 고소장」으로 한다)을 나가노현 마루코(丸子)경찰서장에게 제출했으며(이하「본건 고소」로 한다) ②본건 고소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지고(이하「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으로 한다) 기자들에게 본건 고소장 등을 배포하는 등 본건 고소에 대해 설명하고 ③본건 블로그에 본건 고소장을 게재했으며 ④본건 소송에서도 원고가 전기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본건은 피고들의 전기 ①~④의 행위 모두가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불법행위(민법709조, 715조 <원고는 피고花子와 피고丙川가 위임관계 혹은 위임유사(類似)의 관계에 있으며, 또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사무를 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피고花子가 피고丙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19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금 600만엔을 연대해 지급하고 이에 대한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가산 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동법 723조에 근거하여 사죄광고의 게재를 청구한 사안이다.

## 3. 전제사실

(증거에 의해 인정된 사실은 말미에 그 증거를 적시한다)

### 1. 당사자 등에 관하여

(1) 원고는 1974년 나가노현에 교원으로 채용되어, 2005년 4월부터 본건 고교의 교장으로 재임중인 자이다.

(2) 피고花子는 학생인 竹夫의 모친이다.

(3) 피고丙川는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이며, 본건 고소에서 피고花子의 대리인이다.

(4) 竹夫는 2005년 4월 본건 고교 건설공학과에 입학, 1학년 9반(이하「1학년 9반」으로 한다)에 편성되었으며, 본건 고교의 배구부(이하「배구부」로 한다)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5년 12월 6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2. 竹夫의 가출 및 不登校 등에 관하여 (2005년의 경우)

(1) 피고花子는 5월 29일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 竹夫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한 후 竹夫에게 집을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竹夫는 5월 30일 가출했으나 본건 고교에는 등교하지 않았다.(이하「5월 하순의 가출」로 한다)

(2) 竹夫의 담임교사인 오토노우메오(乙野梅夫·이하「乙野교사」로 한다)는 5월 30일 오전의 자율학습시간에 竹夫가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 오전 9시 경 모친인 피고花子에게 연락했으며, 피고花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竹夫는 그날 밤 가족들 몰래 자택에 돌아왔다가 다음날인 5월 31일 아침 가족들 몰래 다시 가출했다.

(3) 乙野교사와 피고花子 및 배구부 부원들은 5월 31일 竹夫를 찾아 나섰는데, 竹夫는 오후 1시 30분경 佐久시내의 서점에서 발견되었다. 피고花子는 당시 5월 하순의 가출에 관한 사정을 본건 고교에 설명했다.

(4) 竹夫는 8월 30일 본건 고교에 등교하지 않았으며, 오후 8시 3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었다.(이하「8월 하순의 가출」로 한다) 피고花子는 9월 1일부터 乙野교사와 함께 竹夫를 찾아 나섰는데, 竹夫는 9월 5일 도쿄도 내의 경찰서에서 보호를 받

고 있었다. 竹夫는 9월 26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3. 보호자 간담회의 실시 및 竹夫의 첫 번째 정신과 수진(受診) 등에 관하여

(1) 피고花子は 竹夫의 8월 하순 가출에 대한 본건 고교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품고,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이에 본건 고교의 보호자들에게 竹夫의 가출 등에 관한 본건 고교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했으며, 메일을 수신한 보호자들로부터 본건 고교에 문의가 잇달았다. 본건 고교는 9월 15일에 1학년 9반의 현황 설명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9월 16일 오후 7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건 고교는 1학년 9반 학생들의 보호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한편, 피고花子택의 우편포스트에도 그 취지문을 넣어두었다.

(2) 竹夫는 9월 15일 오후 8시부터 피고花子에 끌려 'むねの(무네노)木公園클리닉' (정신과, 이하「본건클리닉」으로 한다) 을 수진(受診)했다. 본건클리닉의 의사는, 竹夫에 대해「우울증」,「8월 30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출 등의 행동이 있었으며, 발성장애, 불안, 어지럼증, 복부불쾌감, 안면통 등의 신체증상과 함께 희사연려(希死念慮)도 출현하고 있다」는 진단서(이하「9월 15일자 진단서」로 한다)를 작성했다. 이어 9월 22일에 다시 진찰을 받기로 하였으나, 竹夫는 진찰을 받지 않았다.

(3) 피고花子は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나가노현(長野縣)교육위원회 직원인 丙川春夫(이하「현교육위의 丙川」로 한다)에게 전화를 걸어, 9월 16일 개최 예정인 보호자간담회를 중지하고, 피고花子와 竹夫가 참가할 수 있는 일정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는 한편 9월 15일에 취득한 진단서를 팩스로 송신했다.

(4) 원고는 9월 16일 현교육위의 丙川로부터 피고花子が 보호자간담회 개최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花子에게 전화를 걸어 보호자간담회의

개최를 연기할 수 없음을 알리고, 예정대로 9월 16일 오후 7시부터 1학년 9반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자간담회가 개최되었다.

(5) 竹夫는 9월 22일 본건 클리닉을 수진하지 않았으나 피고花子は 9월 15일자 진단서를 본건 고교에 팩스로 송신했다.

4. 竹夫의 등교 등에 관하여

竹夫는 9월 26일 나가노현 의회의원인 丁川夏子(이하「丁川縣議」로 한다)를 따라 본건 고교에 등교하여 오후수업을 받은 후 귀가했다. 竹夫는 9월 27일에도 등교하여 수업을 받았으나 오후 1시 30분경 교사에 게 몸이 불편하다며 조퇴하고, 그 후 등교하지 않았다.

5. 竹夫의 그 이후의 정신과 진찰 및 원고의 서신 등의 우송 등에 관하여

(1) 竹夫는 9월 27일 본건 고교에서 조퇴한 후 본건클리닉에서 수진 중 가슴부위가 이상하다며 호소했다. 본건클리닉의 의사는「8월 30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출 등의 행동이 있었으며, 발성장애, 불안, 어지럼증, 복부불쾌감, 안면통 등의 신체증상과 함께 희사연려도 출현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통원치료가 필요함을 진단한다」는 우울증 진단서(이하「9월 27일자 진단서」로 한다)를 작성했다. 이 때 竹夫는 6일분의 약처방을 받고, 10월 3일에 진찰예약이 되어 있었으나 끝내 진찰을 받지 않았다.

(2) 피고花子は 9월 28일 오전 8시 10분경 9월 27일자 진단서를 본건 고교에 팩스로 송신했다.

(3) 원고는 피고花子が 10월 26일 밤 9시 竹夫를 데리고 본건 고교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다.

(4) 원고는 11월 4일 나가노현 교육위원회와 상담한 후 ①「甲田竹夫씨」 및 「보호자 甲田花子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그동안 나(학교장)와 학급담임선생은 竹夫군이 하루 빨리 등교하도록 종용해왔습니다」 「竹夫

군의 결석일수, 결과(缺課) 등은 별지와 같습니다. 결석이 계속되면 결과시수(缺課時數)가 규정을 초과하여 2학년 진급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서면 ②竹夫의 결과상황을 기재한 서면 ③학습성적의 평정 및 학점인정을 설명한 서면(이하「11월 4일자 서면 등」으로 한다) 등을 봉투에 넣어 피고花子댁에 우송했다.

(4) 竹夫는 11월 6일 본건클리닉을 수진했다. 담당 의사는 「신경쇠약상태로 8월 30일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가출 등의 행동이 있었으며, 발성곤란, 불안, 현기증, 복부불쾌감, 안면통 등의 증상과 함께 회사(希死)염려도 나타났다. 이러한 증상 때문에 현재 통원가료중이나 현재도 정신증상은 동요경향을 보여 학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당분간 휴학하면서 계속 가료가 필요함을 진단한다」는 진단서(이하「11월 6일자 진단서」를 9월 15일자 진단서 및 9월 27일자 진단서를 합쳐 「본건진단서 3통」으로 한다)를 작성했다. 이 때 竹夫는 7일분 투약처방을 받고 11월 13일 검진이 예약되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5) 본건 고교는 11월 14일 피고花子로부터 11월 6일자 진단서의 우송을 받았다.

(6) 원고는 11월 15일 ①「甲田竹夫씨」 및 「보호자 甲田花子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4월 입학이래 학교생활에서 竹夫과 관련한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으로 개선에 노력해왔다. 일례로 배구부 2학년생들이 하급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프라스틱행거로 하급생을 구타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등의 서면과 함께 ②竹夫의 결과상황을 기재한 서면(이상의 서면을 합쳐, 이하「11월 15일자 서면 등」으로 한다)을 피고花子 앞으로 된 봉투에 넣어 피고花子집에 우송했다.

(7) 원고는 11월 28일 ①「甲田竹夫씨」 및 「보호자 甲田花子씨」를 수신인으로 하여 「11월 4일에도 통지했습니다만 그 후에도 계속 결석하여 결과시수(缺課時

數)가 규정을 넘는 과목도 있어 2학년 진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등교시켜주기 바랍니다」라는 서면과 함께 ②竹夫의 결과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11월 4일자 서면 및 11월 15일자 서면을 합쳐 「본건 각 통지서면등」으로 한다)을 피고花子 앞으로 된 봉투에 넣어 피고花子집에 우송했다.

6. 12월 3일의 논의에 관하여

(1) 나가노현 교육위원회 고교 교육과의 戊原秋夫(이하「현교육위의 戊原」로 한다), 본건 고교의 교감인 甲川冬夫(이하「甲川교감」으로 한다) 및 乙野교사는 12월 3일 오후 5시경 피고花子집을 방문하여 의논한 끝에 竹夫는 12월 5일부터 등교하겠다고 말했다.

(2) 피고花子は 12월 4일 竹夫가 등교할 때 1학년 9반 학생 38명에게 배포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경과에 관한 피고花子の 주장을 기재한 내용과 함께 「아직 클럽의 일에 대해 이야기는 없었지만, 1학년 9반의 몇몇 학생과 부모들로부터 격려로 용기를 얻어 등교할 결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기재한 서면(이하「피고花子の 12월 4일자 서면」으로 한다)을 작성하여 봉투에 넣었다.

(3) 佐久경찰서 안전과 과장은, 피고花子로부터 竹夫를 학교에 데려다 달라는 의뢰를 받고 12월 5일 아침 피고花子댁을 방문했으나 竹夫는 등교를 거부했다.

7. 竹夫의 자살에 관하여

竹夫는, 12월 6일 오전 5시경 자기방의 옷걸이에 자전거용 체인을 걸어 목을 매달았다. 피고花子は 동일 오전 6시 40분경 竹夫를 발견, 소방본부에 통보했으며, 竹夫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전 7시 28분 사망했다.

8. 원고의 보도관계자에 대한 발언에 관하여

원고는 12월 6일 오후 4시 40분경 본건고교에서 기자회견(이하「원고의 기자회견」으로 한다)을 가지고 「등교 거부나 자살에 연관될만한 괴롭힘이나 폭력은 없었다. 피고花子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 竹夫군은 8월 하순 외에 5월 하순에도 가출한 일이 있으며, 그

때 모친인 피고花子の 지갑에서 竹夫군이 돈을 훔쳤다고 의심을 받고, 그 일로 아마 모친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은 것 같다(이하「원고의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로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 9. 본건 고소 등에 관하여

(1) 피고花子は 2006년 1월 10일 피고丙川을 대리인으로 하여 별지6 기재의 내용으로 본건 고소를 했다. 고소의 개략은 ①원고가 우울증이 있는 竹夫에게 등교를 강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며, ②竹夫가 피고花子の 지갑에서 2만엔을 훔친 일로 피고花子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가출했다는 원고의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은 竹夫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2) 피고丙川은, 본건 고소를 한 당일, 피고花子の 대리인으로서 나가노현청에서 본건 기자회견을 갖고 본건 고소장 등의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본건 고교의 교장인 원고가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은 허위이며, 원고는 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그 결과 이날의 시나노마이니치(信濃毎日)신문 석간에 본건 고소사실이 보도되었으며, 다음날에는 추니치(中日)신문, 산케이(産経)신문, 마이니치(毎日)신문, 시나노마이니치신문 조간 및 아사히(朝日)신문 등에도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3) 원고는 본건 고교의 교장으로서 본건 고교의 동창회나 PTA의 회합 등에서 본건 고소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또한 원고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익명의 전화가 본건 고교로 300회 이상 걸려오기도 했으며, 원고의 딸 혼처로부터도 본건 고소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기도 했다.

(4) 본건 고소와 관련하여 나가노지방검찰청 우에타(上田)지부는 원고를 약 3주간 9회에 걸쳐 조사한 후 2007년 10월 4일 살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불충

분으로 원고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처분했다. 시나노마이니치신문사는 다음날「상급생 가재(家裁) 송치, 교장은 불기소」라는 제목으로 검찰청의 결정내용과 함께「실행행위성이 없고, 살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이유를 기사화하여 보도했다.

(5) 본건 블로그에는, 2006년 3월 5일부터 2009년 3월 17일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2006년 3월 15일 이후「竹夫군의 마음을 상하게 한, 丁原고교로부터 받은 갖가지 행동과 살인죄의 이유」라는 제목의 문서가 기재되어, 그 중에는 원고가 竹夫를 압박하여 자살로 내몰았으므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기재도 있었다. 2007년 5월 12일경부터 2008년 12월 말까지는 본건 고소장이 게재되었는데 이와 같은 게재는 피고들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터넷상에는 원고를 비방, 중상하는 내용이 기재된 일도 있었다.

#### 10. 본건 소송의 제기 등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2008년 12월 9일자 서면으로 본건 소송과 동일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동 청구서면은 피고丙川에게 동월 12일, 피고花子에게 동월 10일에 각각 도달했다.

(2) 원고는 2009년 4월 15일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3) 피고丙川은 2009년 12월 7일 본건 소송과 관련, 다음과 같이 기재된 준비서면(이하「본건 준비서면」으로 한다)을 제출하고 2010년 2월 5일 본건 구두변론 기일에 진술했다.

(가) 「원고가 甲田竹夫를 자살로 내몬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하며」(1페이지)

(나) 「竹夫의 사망 직후에 진행된 원고의 기자회견 발언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1페이지)

(다) 「등교를 강요함으로써 자살로 내몰았다는 사실 및 그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사실」(2페이지)

(라) 「원고는 竹夫의 자살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추궁됨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10페이지)

(마) 「원고의 상기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11페이지)

#### 4. 쟁점

1. 본건 고소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쟁점1 ·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2.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적시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되느냐의 여부 (쟁점2 ·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

3. 피고들의 본건 소송 활동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쟁점3 ·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4. 본건 고소,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본건 블로그 및 본건 준비서면 (이하 「본건 고소 등」으로 한다) 과 관련한 적시사실 (이하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적시사실」로 한다) 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부정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인정되느냐의 여부 (쟁점4 ·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 여부)

(1) 피고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관련이 있고,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

(2)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적시사실들이 진실인지의 여부

(3) 전기 (2)에서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

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

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 (쟁점5)

6. 원고의 손해 (쟁점6)

7. 사죄광고 등의 게재 필요 여부 (쟁점7)

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 (쟁점8)

#### 5. 쟁점1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竹夫의 살해를 의도한 일이 없으며, 실행한 일도 없다.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은 모두 진실이며, 사자인 竹夫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본건 고소는, 원고의 명예에 관한 것으로 확실한 증거에 근거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竹夫의 살해를 의도하고 실행했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竹夫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공모하였기에 본건 고소를 했다. 그 결과 원고는 본건 고소로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의 피의자가 되어 명예 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의 주장

(1) 전기1(1) 중 원고는 기자회견에서의 적시사실에 관련한 발언을 진실로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한 것이며, 그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원고는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

(가) 竹夫는 배구부에서 부원들로부터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했다.

(나) 그러나 2005년 본건 고교에 부임한 원고에게 있어서는 배구부내에서의 괴롭힘이나 폭력의 존재를

부인하고 배구부를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배구부에 속한 학생으로부터 배구부의 활동과 관련, 「희사염려」(希死念慮)를 수반하는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어도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여 배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학생에게 등교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최악의 경우 당사자가 자살을 해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건의 실패는 이러한 원고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에게 질타(叱咤)격려나 의사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무리하게 외출이나 출근 또는 등교를 촉구하면 자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원고는 전기 우울증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희사염려」가 우려된다는 본건 진단서 3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竹夫의 보호자인 피고花子の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건 보호자회의 개최를 강행하고 竹夫의 등교를 강요하는 본건 각통지서 등을 피고花子와 竹夫에게 우송했으며, 부하인 甲川교감, 乙野교사에게 竹夫와의 면회를 명해 竹夫에게서 등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라) 전기(가) 내지 (다)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본건 고소장에 기재된대로의 방법으로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됨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2) 전기1(2)중 피고들은 본건 고소를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부인 내지 다툰다. 전기(1)과 같이 본건 고소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모두 진실이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6. 쟁점2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

### 1.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6년 1월 1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피고花子是, 피고丙川와 게재 여부를 상담한 후 본건 블로그에 전기 제3과 같은 기사를 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3)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관련한 각 적시사실은 모두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이며,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2. 피고들의 주장

전기1(1)은 인정하나, 동(2)중 피고花子が 피고丙川와 게재 여부를 협의했다는 점은 부인한다. 전기와 같이 원고는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한 것이며 그 행위는 살인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

## 7. 쟁점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본건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여 본건 소송에서 그 취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신용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2. 피고들의 주장

본건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을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부인 내지 다툰다.

## 8. 쟁점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여부

###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에 의한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적시사실은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적시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고의, 과실이 부정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사실의 공공성 및 목적의 공익성에 관하여

(가) 본건고소 등에 관련한 각 적시사실은 본건 고교의 학생, 학부모들에게 중대한 관심사이며, 竹夫의 자살 직후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들간에 논쟁될 정도로 공공의 이해에 관련한 사실이다.

(나) 피고들은, 마스크에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동종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본건 고소 등을 한 것이며,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적시사실을 공표했다.

(2) 적시사실의 진실성 및 진실상당성에 관하여

(가) 전기와 같이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모두 진실이다.

(나) 설령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한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1) 전기1(1)은 부인한다.

피고들의 본건고소 등에 관련한 각 행위는 나가노 지법에서의 민사소송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도모이라 할 수 없다.

(2) 전기1(2)는 모두 부인한다.

(가) 원고는 竹夫의 살해를 의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竹夫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으므로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각 적시사실은 모두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이하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들에게 있어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도 없다.

(ㄱ) 피고花子は 竹夫의 자살원인에 대해 처음에는 학교에서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 괴로움 때문에 자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엔가 竹夫의 우울증을 전제로, 원고가 본건 각 통지서면 등을 송부했고, 12월 3일의 대화에서 竹夫에게 등교를 촉구한 것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변천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花子が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12월 3일에 이야기를 나눌 때는 피고花子도 竹夫에게 등교를 독촉했다. 그렇다면 원고가 竹夫에 대해 등교를 재촉한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면, 피고花子도 竹夫에 대한 살인을 범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ㄴ) 피고花子は 실제적으로는 竹夫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때문에 竹夫에 대해 본격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

(ㄷ) 이러한 사정 등이 있는데도 피고丙川는 법률전문가로서 본건 고소와 관련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본건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을 작성했다.

## 9. 쟁점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

1. 피고丙川의 주장

변호사에게는 사건의 진행에 상응하여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태가 생겨도 면책의 여지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본건에서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피고丙川의 행위는 정당하며 책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丙川의 본건에 있어서의 각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업무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면책될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1) 위자료

(가) 원고는 본건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2007년 10월 4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살인죄와 명예훼손의 피의자로 취급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수사에 협력하지 않은 피고花子の 행위는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게 장기간 고통을 주었으므로 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원고는, 본건 고교의 동창회 등의 회합뿐만 아니라 장녀의 결혼상대방으로부터도 본건고소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는 것에서 큰 굴욕감을 느꼈다.

(다) 잡지나 인터넷상에서도 원고에 대한 비난과 중상이 기재되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으며, 본건 고교에는 보도관계자들의 계속적인 방문과 300회를 넘는 비난전화가 걸려왔다.

(라) 위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액은 500만엔으로도 부족하다.

(2) 변호사비용으로 100만엔

(3) 합계 600만엔

2. 피고들의 주장

전기(1) 가운데, 원고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피고花子が 검찰의 호출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11. 쟁점 7 사죄광고 등 게재의 필요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기자회견으로 본건 고소 등에 관한 각 적시사실 등이 지방지뿐만 아니라 전국지에도 보도되었다. 또한 본건 블로그에서도 1년반 이상, 불기소처분 후에도 그대로 본건 고소장이 계속 게재되었다. 이러

한 사정에 기반한 피고들의 악질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전기 제1의 2 및 3 기재의 사죄광고를 신문과 본건 블로그에 게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사죄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툰다.

12. 쟁점 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2006년 1월 10일에 행하여진 본건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본건 소송이 제기된 2009년 4월 15일은 이미 불법행위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다. 피고들은 민법 724조에 근거한 소멸시효를 원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2008년 12월 9일자 서면으로 본건 소송에서의 청구와 동일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으며, 피고丙川에 대해서는 동월 12일에, 피고花子에 대해서는 동월 10일에 각각 서면이 도달했다. 전기 서면에 의한 청구는 민법 153조 소정의 최고(催告)에 해당하는 바, 본건 소송은 그 최고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

13. 쟁점 1 본건 고소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기준에 관하여

고소는, 피소자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줄 위험을 수반하므로, 특정인을 고소하려고 하는 자는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의 혐의에 상당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고

소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

2. 본건 고소 중 살인죄와 관련한 고소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고소는, 별지6과 같은 것이나 그 골자는 ①원고는, 竹夫의 우울증과 희사(希死)염려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한 원고의 행위에 의해 竹夫가 자살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면서, ②배구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竹夫의 등교를 강력하게 독촉하고, 최악의 경우 竹夫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① 및 ②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③본건 각 통지서면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④12월 3일, 부하인 교감과 담임교사에게 명령하여 가진 회합자리에서 竹夫에게 등교를 약속하게 하고(③ 및 ④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 ⑤그 결과 竹夫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하 본건 고소장 기재의 방법에 의해 원고가 竹夫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고소내용인 ① 내지 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竹夫의 정신상태에 대한 원고의 인식 등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①과 같이,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竹夫를 자살로 내몰게 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분명히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의하면, 竹夫는 본건 클리닉에 통원하고 있었고, 본건 진단서 3통의 기재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정신상태에 일정한 문제가 있었음을 추인할 수가 있으며, 그 후 12월 6일에 자살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花子は 예약한 날에 竹夫를 본건 클리닉에서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았다. 특히 전기고소내용에 의하면 11월 6일 이후 竹夫가 사망한 12월 6일까지의 약 1개월간 竹夫가 정신적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정신과 진찰을 받게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花子は 竹夫가 사망하기 3일 전에 있었던 12월 3일의 회합에 竹夫를 동석시켜 강하게 발언을 재촉하는 등 竹夫의 병세

등에 대해 걱정하는 취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피고花子の 행동은 결국 피고花子 자신도, 본건 고교에서의 문제로 竹夫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금방이라도 자살하리라고 예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추인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인 피고花子조차도 竹夫의 자살을 예견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竹夫이 금방이라도 자살할 것 같은 상태였다고 인식하거나, 자살을 예견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竹夫를 자살로 몰아갈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하지 않는다.

(2) 원고의 竹夫살해의 동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에 대해, 전기②와 같이 원고가 배구부를 육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竹夫의 등교를 강요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竹夫가 자살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교장으로서는 배구부의 유지, 존속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 배구부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배구부의 명예가 손상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이를 은폐하려는 행동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방법으로 배구부 소속 학생을 자살로 내모는 것은 합리적일 수 없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본건에 있어서의 마스크 등 의 보도경위를 보면 명백하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특수한 사정이 따로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원고의 본인신문 결과 등에 의하면, 竹夫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하려고 했다는 동기 등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

(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배구부를 지키기 위해

竹夫가 자살하는 일이 있어도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花子 등에게 송부한 본건 각 통지서면 등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전기③과 같이 원고가 본건 진단서 3통을 수령했음에도 굳이 피고花子택에 본건 각 통지서면등을 송부한 것은 살인행위의 실행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본건 각 통지서면 등에는 竹夫를 염려하는 표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취지는 竹夫가 건강하게 본건 고교에 등교할 것을 원하는 것이었으며, 그 표현은 극히 온당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본건 진단서 3통을 받고도 본건 각 통지서면등을 송부한 것을 가지고 굳이 竹夫의 우울증 증세를 악화시키려 했다든가 자살로 내몰 의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추인할 수가 없다. 오히려 본건 각 통지서면등의 내용으로 볼 때 원고는 교장으로서 竹夫의 진급여부를 걱정하면서 사후대책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용이하게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전기 주장은, 본건 각 통지서면등의 의의를 현저히 곡해한 것이며, 도저히 채용할 수가 없다.

(4) 12월 3일의 회합에 관하여

(가) 피고들은 전기④와 같이 부하인 교감과 담임교사에게 명령하여 12월 3일에 회합을 갖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竹夫에게 등교하도록 약속을 받아낸 것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2월 3일의 회합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더하여 <증거생략>에 의하면 이하의 사실이 인정된다.

(ㄱ) 피고花子は, 12월 2일 오전 1시 30분 나가노현 부지사에게 본건 고교의 대응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내고, 본건 고교 관계자들에게 다음날 오후 5시에 피

고花子택에 와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신하여 거쳐 12월 3일의 회합약속이 이루어졌다.

(ㄴ) 甲川교감, 乙野교사, 나가노현 교육위의 戊原는 3일 오후 5시 피고花子택을 방문, 上田교육사무소의 乙原一郎 및 丁川나가노현의원 입회하에 회합을 가졌다. 피고花子は 이 회합에서 동석한 竹夫에게 「진실을 말해봐. 말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말들을 하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강하게 발언을 재촉했다.

또한 피고花子は 본건 고교, 배구부, 나가노현 교육위원회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괴롭힘이나 폭력이 없도록 지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竹夫가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배구부의 학생들이 竹夫를 무시하지 않도록 해줄 것, 전교생에게 괴롭힘이나 폭력을 못하도록 해줄 것, 2가지를 요구했다. 甲川교감, 乙野교사, 현교육위의 戊原는 이를 승낙하고 12월 5일부터 대응하기로 약속했으며, 竹夫는 5일부터 등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이상의 사실을 전제로 피고들의 전기④의 주장을 검토한다.

우선 12월 3일의 회합은 피고花子の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가 부하에게 명령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12월 3일의 회합에서 피고花子도 竹夫의 등교를 희망했고, 등교조건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이상에 의하면 12월 3일의 회합과 관련한 피고들의 전기 주장은 실태(實態)가 없으며, 원고에게 있어서는 전혀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5) 결론

(가) 이상과 같이 본건 고소 중 살인죄와 관련한 사실경과에 관해 ①원고로서는 竹夫가 곧 자살할 것 같은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자살을 예견하는 일은 극히 어려웠다는 것. ②원고에게는 竹夫를 살해할 동기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③본건 각 통지서

면 등은 竹夫의 진급 가부(可否)를 걱정하고 그 선후책을 검토할 취지로 송부했음이 인정된다는 것. ④피고 花子도 竹夫의 등교를 찬성했다는 것 등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竹夫를 살해했다고는 도저히 추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고소 중 살인죄와 관련한 고소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 더욱이 이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즉 피고들은 원고가 본건 진단서 3통을 받고 竹夫의 정신적 상황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살인죄를 주장하는데 이를 객관적 근거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범죄의 혐의를 걸기에 상당한 객관적 근거의 확인 없이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본건 고소 중, 원고가 살인죄를 범했다고 하는 본건 고소는, 피고들에게 사실관계의 신중한 조사를 요한다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또한 그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기 고소는 피고들이 의논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 3. 본건 고소 중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고소에 관하여

(1)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피고 花子가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 문제로 竹夫와 다툼 끝에 竹夫가 가출한 사실, 피고 花子가 경찰에 竹夫의 수색원을 내고 乙野교사와 배우부 부원들과 竹夫를 찾아 다녔다는 사실, 竹夫가 5월 30일 밤 가족들 몰래 귀가했다가 다음 날 아침 다시 집을 나간 후 오후 시내의 서점에서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이상의 5월 하순 가출 경과에 의하면, 竹夫의 행동은 피고 花子와의 알력에 의한 가출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진실이었다.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5월 하순의 가출에 관한 발언은, 전체적으로 허위사실을 지적한 것이 아니며, 본건 고소 중 竹夫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고소는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객관적 근거는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범죄혐의에 상당한 객관적 근거의 확인 없이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또한 본건 고소 중 竹夫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본건 고소는, 피고들에게 사실관계의 신중한 조사를 요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본건 고소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기 고소는 피고들이 의논하여 행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할 수가 있다.

## 14. 쟁점 2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및 본건 블로그에 있어서의 명예훼손 유무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의 내용 및 본건 블로그의 게재 경과에 대해서는, 전제사실과 같다.

더욱이 피고 丙川은 본건 블로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나가노지법의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 花子는 블로그의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피고 丙川에게 확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진술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피고 丙川의 전기진술은 신용할 수가 없다.

2. 이상의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 내용에 의하면, 피고 丙川은 본건 고소장 등의 자료를 배포한 다음 본건 고소내용을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본건 고소내용이 그대로 회견 결과가 되었다고 인정된다. 이는 각 신문에 보도되어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전기 제13에서 검토한 본건 고소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본건 기자회견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 명예 등을 훼손했음이 인정된다.

3. 또한 본건 블로그는 피고花子が 개설한 것으로, 전기 2와 같이 본건 고소장 등을 게재한 본건 블로그를 일반인들이 통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보았을 경우,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인상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본건 블로그에 의해서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4. 피고들의 본건 기자회견에 의한 설명 및 본건 블로그에 의한 게재는, 모두 피고들이 의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15. 쟁점 3 소송활동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은 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당사자간의 이해와 개인적인 감정의 대립이 심해 관련자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쟁점들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판단됨으로 훼손된 명예나 신용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복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재판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소송활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여기에서 본건을 검토해 보면, 본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한 소송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리고 본건 준

비서면의 기재내용은,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그 명예 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 준비서면에 관련한 주장은, 원고가 竹夫를 살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16. 쟁점 4 피고들의 명예훼손에 관한 항변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고 공익을 도모할 목적인 경우,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입증되면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검토해 본다.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는, 피고들이 竹夫의 자살에 관한 본건 고고 등 행정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학생의 자살문제는 분명히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안으로 인정되며, 피고들로서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은,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적시사실이 진실인지, 혹은 피고들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면, 원고가 竹夫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며 본건 고소 등에 관련한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전기와 같이, 원고가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사실의 근거에 대해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든가 혹은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

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없음은 명백하며, 피고들의 항변은 부당하다.

## 17. 쟁점 5 피고丙川의 행위가 정당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의뢰자의 의뢰 취지에 따라 위임된 법률사무를 처리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바, 의뢰자의 의뢰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라든가, 그 의뢰내용을 실현할 경우 초래되는 위법한 결과에 대해 변호사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될만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의뢰자의 의뢰에 의해 행한 행위는 정당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丙川는 본건 고소의 내용 및 본건 고소 등과 관련한 각 적시사실이 진실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기와 같다. 또한 피고丙川에게는 본건 고소를 한 사실 및 원고의 명예 등을 훼손한 사실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丙川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정당업무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 18. 쟁점 6 원고의 손해에 대한 판단

### 1. 피고들의 불법행위

이상에 의하면, 피고들은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 및 명예훼손죄라는 범죄혐의를 거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나 확인도 없이 본건 고소를 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본건 고소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고 본건블로그에도 본건 고소의 내용을 게시했음이 인정된다.

### 2. 위자료

전기와 같이 본건 고소 등에 의한 각 적시사실의 내용은, 피고들에 의한 본건 기자회견으로 매스컴에 설명되

고 본건 블로그에 게재되었다. 그 결과 전국의 보도사가 보도했고, 본건 블로그도 언제든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은 광범위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굴욕적인 입장에 몰리는가 하면 익명의 다수인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으며, 딸의 혼례와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등 필요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본건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위자료는 150만엔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 3. 변호사비용

본건 사안의 내용, 본건 소송의 심리경과, 본건의 인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비용으로는 15만엔이 상당하다.

### 4.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변호사비용 중 합계 165만엔의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나, 나머지 위자료 및 변호사비용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 19. 쟁점 7 사죄광고 게재의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

1. 전기 제18과 같이 원고가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받은 것이 인정되며,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의하면, 본건 고소사실이 전국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사실, 본건 블로그에 장기간 게재된 사실, 동창회 등으로부터 설명을 요구받은 사실,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익명의 전화를 300회 이상 받은 사실, 인터넷상에서도 원고를 비방·중상하는 기제가 다수 올라 있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한편 전기 제3의 전제사실에 의하면, 본건 고소에서, 2007년 10월 살인에 대해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음날 신문에 보도된

사실, 나가노지법에서의 민사소송사건에서도 2009년 3월 피고花子が 원고가 되고, 원고 등을 피고로 하여 竹夫의 자살에 관해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청구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러한 판결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되고 본건 블로그에도 소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전기1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본건 고소만으로도 충분한데 그 이상으로 매스컴에 고소내용이 보도되는 것을 용인하고, 본건 블로그와 인터넷상에도 공개했으며, 피고들이 이러한 수단을 취함으로써 위법한 본건 고소내용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본건 고소에 의해 지대한 정신적 손해를 받게 되었다. 신문보도와 본건 블로그의 독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 2와 같이 본건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과 이에 대한 신문보도와 본건 블로그 게재 등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는 사후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잃은 명예가 회복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복조치로, 피고들에 대해 주문계기(主文掲記)의 각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4. 더욱이 원고는 본건 블로그에도 사죄광고를 게재하도록 청구하고 있으나, 시나노마이니치(信濃毎日) 신문은 나가노현내에서 널리 구독되고 있는 신문이므로, 이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하면 원고가 잃은 명예 등의 회복조치로서는 충분하다고 하겠으므로 본건 블로그에까지 사죄광고를 게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 20. 쟁점 8 소멸시효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불법행위시부터 본건 소송의 제기까지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민법724조 소정의 소멸시효에 의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전기 제3의 전제사실과 같이 원고는 최초의 불법행위(본건 고소가 있었던 2006년 1월 10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년 12월 9일자 서면으로 본건 소송과 동일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청구를 했으며, 동 서면은 그 때 당시 도달하여 동법 153조 소정의 최고(催告)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최고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09년 4월 15일에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최고가 있었던 시점(피고花子は 2008년 12월 10일, 피고丙川는 동월 12일)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소송과 관련한 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있으며, 아직 소멸시효는 성립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 21.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165만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다음날인 2006년 1월 11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 소정의 연 5부의 가산 금리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구하고, 주문 제 2 및 제3기재대로의 사죄광고 게재를 명하는 한도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認容)하며, 다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1 사죄광고(생략)

### 별지2 사죄광고

「나는 2006년 1월 10일 乙山花子の 대리인으로서 甲野太郎씨를 형사고소한 후, 長野縣 丁原고등학교(현재는 戊田고등학교) 교장이었던 甲野太郎씨가 동고교에 재학중이던 甲野竹夫(乙山花子の 아들)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甲野竹夫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甲野太郎(교장)씨가 甲野竹夫(고교생)를 자살로 내몰아 살해했다는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甲野竹夫(고교생의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 형사고소 및 기자회견에 의해 甲野太郎씨의 명예 및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한데 대하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丙川竹夫

- 출처 : 『判例時報』 No. 2109호, 103~117
- 번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 [미국판례]

\* 일러두기: 문장의 자연스런 번역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역자가 보충한 문구는 []안에 넣거나 각주로 표시하였음.

### 살인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세세한 정보들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플로리다주(State of Florida) 對 돈태 라숀 모리스(Dontae Rashawn Morris)  
미국 플로리다 법원 제13순회부  
결정일 : 2011. 3. 22.  
플로리다주 측 대리인: 스코트 하몬 (Scott Harmon), 검사보, 주 검찰청 소속, 탐파, 플로리다  
피고인 측 대리인: 바이론 하일만(Byron Hileman), 보조지역변호사, 바토우, 플로리다  
참가인 미디어 제너럴 측 대리인: 그레그 디 토마스(Gregg D. Thomas)와 폴 알 맥카두(Paul R. McAdoo), 토마스 앤 로키케로 소속, 탐파

## 주 문

플로리다주법 제119장의 조항에 따라 공개하게 되는 증거개시 자료들에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 및 그에 대해 보완하고 논점을 명확히 한 추가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명령을 허가한다.

## 이 유

이 사건은 2011년 1월 26일, 증거개시 자료들에 대해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본법원에 제기되었다. 2011년 2월 1일, 앞의 신청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는 추가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리고 2011년 2월 3일, 미디어 제너럴 운영사(Media General Operations, Inc.) 이하 ‘미디어 제너럴’ 로 약칭)가 플로리다주법 제119장의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하게 되는 개시증거 자료들에 대해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한 피고인의 신청에 반대하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와 법률의견서를 심사한 후, 본법원은 이하에서와 같이 결정한다.

### 사건의 배경

10-CF-010203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개의 일급 살인(소인(誦因) 1,2), 호송 중 도주(소인 3), 그리고 총기소지 중범죄(소인 4)로 기소되었다. 2010년 7월 22일, 주는 소인 1과 2에 대하여 사형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0-CF-010373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급 살인(소인 1)과 총기소지 중범죄(소인 2)로 기소되었다.

10-CF-010744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급 살인(소인 1), 총기소지 강도(소인 2)로 기소되었다.

11-CF-000896 사건에서, 피고인은 일급 살인(소인 1), 총기소지 강도(소인 2), 그리고 총기소지 중범죄(소인 3)로 기소되었다.

2011년 1월 26일, 피고인은 법원의 즉각적인 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했고, 2011년 2월 2일에 추가 신청을 하였다.

2011년 2월 3일, 미디어 제너럴사(社)가 법률의견서(Memorandum of Law)를 제출했다. 법원은 동사(同社)가 참가인 적격이 있고, 피고인의 신청에 관하여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했다(비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더 이상 뉴스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제한하는 명령의 유효성을 다투던 뉴스매체에게 참가인 적격을 인정한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McIntosh, 340 So. 2d 904 [2 Med.L.Rptr. 1328] 참조). 따라서, 법원은 이하에서 피고인의 신청과 미디어 제너럴의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실시한다.

### 피고인의 신청

신청서에서, 피고인은 우리 법원에, 증거개시를 통해 특정의 문서, 비디오 자료, 디지털 녹음·녹화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는 잠정적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증거개시를 통해 문서 등이 공개되면 플로리다주법(the Florida Statutes) 제119조에 따라 [다른 이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막을 것을 구하는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피고인은 법원이 개시증거 자료들을 비밀심리(in camera review) 절차를 의해서 조사하도록 요청하고, 비밀심리 절차를 거친 후에는, 그 개시 자료들이 플로리다주법 제119조에 따라 공개하게 되는 공문서로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잠정적 보호명령을 구했다. 그 잠정적 보호기간은 (1) 그 자료들이 법원에 의해 비밀절차에 의해 심리되었고 그 후 일반에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때까지, 혹은 (2) 이 사건 피고에 대한 기소가 판결, 기각, 혹은 기타 종국 처분에 의해 종결될 때까지, 혹은 (3) 적어도 여기의 기소사건들에 대한 배심원이 선정되어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외부와의 격리[역자: 배심원의 판단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가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신청 계속(繫屬) 중 그리고 신청결과로 발해질 잠정적 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탐파 경찰국(Tampa Police Department), 힐스보로우 보안청(Hillsborough Sheriff's Office), 의약검사소(Medical Examiner's Office), 공공 변호인 사무소(Public Defender's Office), 주 검찰청(State Attorney's Office), 플로리다주 법무부(the Florida

Department of Law Enforcement), 지역상담소 제 2부(the Regional Counsel's Office 2nd District)의 모든 담당자와 직원들 및 사건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들, 참가인들(미디어 제너럴과 기타)과 그 변호인은 모두 위에 서술한 세 개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혹은 법원의 다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 보호명령이 작용하는 대상이 되는 특정 증거와 이 사건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공적으로 발표하거나 언급하는 것을 금지해 주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아래에 열거하는 개시 증거 자료들이 보호명령에 의해 잠정적으로 봉인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에 따라 그 증거항목들의 디지털 오디오 녹음·비디오 녹화물을 포함하는 자료들도 공문서로서 공개되기 전에 편집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a. 안젤라 머피(Angela Murphy)의 진술의 일부
- b. 마커스 옥레스비(Marcus Oglesby)의 진술의 일부
- c. 애슐리 프라이스(Ashley Price)의 진술의 일부
- d. 퀴니샤 맥밀란(Quineshia McMillan)의 진술의 일부
- e. 상당한 이유의 제시를 위한 선서진술서(the probable cause affidavit)<sup>역자주1)</sup>상의 진술들
- f. 세드릭 휴(Cedric Hough)의 진술의 일부
- g.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비디오(“dash-cam” video)의 녹취록
- h.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The “dash-cam” video)
- i. 총기발사 뒤에 이루어진 라디오 교신의 녹취록 (The transcript of radio traffic following the

shooting)

- j. 비디오에서 뽑은 정지 사진들과 그 사진들의 동일성을 기술하고 있는 경찰 보고서들
- k. 형사 듀란(Duran)이 10-CF-010373 사건의 피고인에게 한 전화[내용]
- l. 경찰 보고서들—두 개의 사건에 관한 총기류 시험 결과(ballistics testing results)에 대한 전문 보고서들(hearsay reports)을 포함하여—에 담겨 있는 주장들
- m. 10-CF-010744 사건의 상당한 이유 제시를 위한 선서진술서

피고인은 열거한 개시 자료들의 비공개 혹은 공개 유보를 요청하는 두 개의 주요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그가 주장하기에는, 그가 반대하는 개시 자료의 많은 부분이 플로리다주법 제119.071(2)(e)조에서 규정된 예외에 해당한다. 동조는 “체포된 피의자의 자백의 실질(the substance of a confession)을 드러내는 정보는... 형사사건이 판결, 기각, 혹은 기타 중구 처분에 의해 종결될 때까지” 법에 따라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은 어떤 진술이 자백인가를 결정할 때 법원으로 하여금 “자백의 실질”이라는 문구를 넓게 해석해 적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백을 함축하고 있지만 범죄의 모든 요소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 진술들도 [동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길거리 속어, 암호를 사용한 얘기, 완곡어법, 깡단이 쓰는 표현들, 그리고 “그 새끼 대가리를 따부렸다” (“I pops’ em”)와 같은 말들도 [아마도 범죄를 은연중 암시하기 때문에]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역자주1) 보통은 경찰관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선서에 의한 진술이 담겨져 있다. 이 문서는 판사에게 체포나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체포나 수색이 필요가 근거, 즉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특정의 개시 증거들—분명한 혹은 명백한 “자백”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이 공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의 것이다. 미연방헌법 수정 제5조, 제6조, 제14조 및 플로리다주헌법 제1장 제9조, 제16조, 제22조에 따른 불편부당한 배심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바로 그 근거이다.

피고인은 적절한 사법(administration of justice)에 대한 압박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공개[폐쇄](closure)가 필요한데, 그렇게 이 기소 사건들의 계속 중 개시 증거를 잠정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빼고는, 편파적이지 않은 배심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판지(법정지)를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잠정적 보호 명령에 의한 비공개[봉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보다 부적절하게 넓지는 않은 방식으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내세운다.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피고인은 이 사건들이 심각하고 과도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 특히 경찰관의 장례식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그랬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공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치유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편견이 쏟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사건들이 많은 피해자 수와 [여러 사건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겹치는 증거로 인해 힐스보로우 카운티에서 있었던 앞선 다른 모든 “유명한” 사건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배심원에 대한 개별적인 예비심문(voir dire)<sup>역자주2)</sup>이나 격

리(sequestration)<sup>역자주3)</sup>로는 [배심원의 편견을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고, 장차 윌리엄스 법칙(Williams rule)<sup>역자주4)</sup>의 적용을 받을 앞선 범행[으로 주장되는 행동들]에 관한 증거자료들은 [이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므로] 유능한 배심원들[의 판단]을 오염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세운다. 그는 많은 개시 자료들이 심판에서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으며, 대중적으로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 흘러나간 뉴스정보에 더하여] 앞에서 언급한 개시 자료들을 더 공개할 경우 이미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평판을 더욱 크게 불리하게 할 것이다.

#### 미디어 제너럴의 법률의견서

잠정적인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에 반대하면서, 미디어 제너럴은 법률의견서에서, 피고인이 구하는 개시 자료 중 개별적인 부분의 폐쇄 총 578쪽, 그리고 그보다 더 분량이 많은 전체문서의 폐쇄는, 불필요하고 너무 범위가 넓다.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 그리고 그에 관한 녹취록과 녹음·녹화물의 폐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발설 금지” 명령(“gag” order)<sup>역자주5)</sup>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총 578쪽의 개시 자료와 기타 문서들에 관해 미디어 제너럴은 다투면서, 그 자료들이 플로리다주법 제 119.071(2)(e)조에 따라 비공개를 향유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먼저 그것이 “자백의 실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분리가능한 부분은 공개될 수

역자주2) 배심원에 대해 편견이나 당사자, 증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이 하는 심문절차

역자주3) 배심원을 격리시켜, 배심원 이외의 자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함. 배심원이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로, 보통은 배심원이 사건의 평의에 들어갈 때부터 평결에 이르기까지 행해지지만, 떠들썩한 사건 등에는 심리의 개시시부터 종결시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있다.

역자주4) 병행사건의 관련 증거를 배심재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칙이다. 윌리엄스 대 플로리다주 판결에서 유래했다. Williams v. Florida, 110 So. 2d 654 (Fla., 1959)

역자주5) 스캔들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과도한 보도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변호인, 기타 관계자들에게 대해서 신문기자 등에게 사건의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미디어 제너럴은 만약 법원이 자료들의 어느 부분이 자백의 실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결정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공문서법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에 관하여, 미디어 제너럴은 비디오의 비공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 제너럴은 주장하기를, 비디오의 전부공개를 인정하기보다는, 비디오와 관련 자료들이 일반인들의 열람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비디오와 관련자료들을 기록 관리인의 점유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더 나아가 미디어 제너럴은 주장하기를, 만약 비디오와 관련물들을 심사한 후, 일반 공중이나 대중매체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열람을 위한 다소 제한적인] 접근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정부의 책임을 평가, 비판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에는] 자료전체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미디어 제너럴은, 만약 법원이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를 심사해서 피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그 특정부분을 편집할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제너럴은 법정 밖의 언론을 제한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사(同社)는 플로리다주 변호사회 규칙 제4-3.6 규칙은, 법정 밖에서의 언론을 금지하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풍부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역사: 이 규칙에 의해 이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발설금지명령 신청은 불필요하고 과도하다는 의미이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단 주(the State)가 문서들을 증거개시를

통해 형사피고인에게 공개하면, 그 문서들은 일반의 열람과 복사에 제공된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해둔다 (Times Publ. Co. v. State, 827 So. 2d 1040, 1042 [31 Med.L.Rptr. 1044](Fla. 2d DCA 2002) 참조; §119.011(3)(c)(5) Fla. Stat. (2010) 참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법원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신청과 법률의견서를 심사하면서, 법원은 루이스 판결(Miami Herald Publishing Co. v. Lewis, 426 So. 2d 1[8Med.L.Rptr. 2281](Fla.1983))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형량하였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그러한 제한이 사법(administration of justice)에 대한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가 (2) 재판지를 바꾸는 것 이외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3) 그러한 제한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효과적인가(Florida Freedom Newspapers, Inc. V. McCrary, 520 So. 2d 32, 35 [14 Med.L.Rptr. 2374](Fla. 1988)). 이 판결은 “루이스 판결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이유의 발견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원의 공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혹은 연기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더욱이, 플로리다주 형사소송 규칙(the Florida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 3.220(l)과 (m)조에 따라, 본법원은 증거개시기간 중 특정부분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충분한 이유의 제시가 있으면 잠정적으로 일반에의 공개를 제한할 권한을 보유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의 신청에서, 신문과 텔레비전 매체들이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특히 경찰관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미 널리 알려버렸음을 지적하였다.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수많은 신문 기사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는 개시증거자료의 상당

부분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공개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청을 통해 제기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한 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세상에 알려진 정도를 가지고 사법에 심각하고 압박한 위험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판단한다. 재판 전에 그 사건이 세상에 크게 회자되었다는 것을 사법에 대한 중대하고 압박한 위험이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의 부인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Provenzano v. State, 497 So. 2d 1177(Fla. 1986); Bundy v. State, 471 So. 2d 9(Fla. 1985)). 법원은, 다른 작은 카운티와는 달리, 힐스보로우 카운티는 큰 도시공동체로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심원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힐스보로우 카운티의 대도시적인 성격이 앞의 루이스 판결에서 제시된 3개의 엄격한 기준에서 요구하는 입증 필요 없게 만든다. 일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이 사건들이 대단한 관심과 토론의 대상일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잠시 주목받다가 곧 잊혀졌을 것이다. 또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이들의 불편부당성 심사는 예비심문(voir dire)에 의해 가장 잘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법원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피고가 구하는 비공개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적 방법을 통해 보장할 수 있고, 또 보장하려 한다.

더 나아가, 법원은 심사를 위해 제출된 증거개시 자료들을 비밀심리 방식으로 심사하고, 루이스 판결의 기준을 그 자료들에 적용해 보고, 어떤 진술이 “자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a substantial and immanent threat to a fair

trial) 때문에, 플로리다주법 제119.071(k)조에 따라 아래 제시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또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잠정적으로 유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탐파경찰국 보고서 14쪽<sup>1)</sup>의 강조된 부분.
  2. 애슐리 프라이스의 인터뷰 26-31, 36, 41-42, 53, 58-59쪽의 강조된 부분. 416-421쪽은 26-31쪽의 복사본이고, 426쪽은 36쪽의, 430-431쪽은 41-42쪽의, 442쪽은 53쪽의, 447-448쪽은 58-59쪽의 각 복사본이다. 따라서, 26-31, 36, 41-42, 53, 58-59쪽에서 배제되어야 할 진술은, 각 복사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제되어야 한다.
  3. 탐파경찰국 보고서 62쪽의 강조된 부분.
  4. 애슐리 프라이스의 인터뷰 95-97, 104, 106, 109, 112쪽의 강조된 부분.
  5. 힐스보로우 카운티 보안관 보고서 128쪽의 강조된 부분.
  6. 애슐리 프라이스의 인터뷰 130, 132-135쪽의 강조된 부분.
  7. 퀴니샤 맥밀란의 인터뷰 168-169, 186-187, 195쪽의 강조된 부분. 295-296쪽은 168-169쪽의 복사본이고, 313-314쪽은 186-187쪽의, 322쪽은 195쪽의 각 복사본이다. 따라서, 168-169, 186-187, 195쪽에서 배제되어야 할 진술은, 각 복사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제되어야 한다.
  8.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 녹취록의 시간 2:18:55에 뒤이어 바로 나오는 문장.
  9. 탐파경찰국 보고서 390쪽의 강조된 부분.
  10. 상당한 이유의 제시를 위한 선서진술조서 392쪽의 마지막 단락.
- 마찬가지로, 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와

1) 신청서에서 피고인은 “개시증거 원본의 페이지 수(Master Discovery Page Numbers)”로 기재했다. 그러나 법원은 종종 그것들이 일관되지 않고, 알아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명확성을 위해 숫자 스탬프를 써서 일련의 번호를 다시 부여했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 신청서의 첨부자료 C는 1에서 392로 새로이 페이지 번호를 부여했고, 추가 신청서에 첨부된 개시증거 자료는 393쪽에서 450쪽까지로 번호를 찍었다. 원래 목록상에 MDP 166-208로 기재되어 있던 자료는, 451-513으로 찍었다. 이하에서 언급되는 페이지 수는 바로 이렇게 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숫자 스탬프로 새로 찍은 페이지수를 말한다.

그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때문이고, 둘째로는 피해자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신에, [공개 가능한 나머지 부분의]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와 그 관련 자료들은 일반의 열람에 제공될 것이지만, 기록 관리인-이는 힐스보로우 카운티 주 검찰청이 될 것인데-의 점유를 떠날 수 없다.

거기에 더하여, 법원은 법정 밖에서의 언론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발설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서 그들의 윤리적 의무와 플로리다주 변호사회 규칙 제4-3.6규칙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동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재판전 법정 밖에서의 언설 금지)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하는 자신의 언급이 재판절차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쳐 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편견을 조장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의해 퍼져 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말을 법정 밖에서 하여서는 안된다.

(b) (제3자의 언설) 변호사는 다른 사람이 그러한 언설을 행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상담을 통한 조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법정 변호사는 자료조사자, 직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규칙에 따라 금지되는 법정 밖 언설에 도움을 주거나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변호사들에게는 이로써 여기 제시된 규칙4-3.6의 내용을 고지하는 바이다. 변호사들은 특히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여, 법정 밖에서 이 규칙의 문언과 취지에 어긋나는 어떠한 언급도 삼가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주(the State)도 역시, 주검찰청, 힐스보로우 카운티 보안청,

플로리다주 법무부, 의약검사소,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주를 보조하는 다른 법집행기관들을 포함하여, 주 소속 담당자들과 직원들에게 규칙4-3.6의 내용에 대해 주지시키고 훈계하여야 한다. 나중에라도 피고인이나 주 측에 의해 계속되는 법정 밖 언급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피고인이나 주가 믿게 된다면, 이 문제나 혹은 여기의 다른 문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증거개시 자료에 대한 잠정적 보호 명령을 구하는 피고인의 신청은, 앞에 제시한 1번에서 10번까지 목록에 기재된 자료들의 범위에 한정하여 일반에의 공개로부터 잠정적으로 유보됨을 인용한다.

더 나아가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는 전부 다 공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다.

또한 이로써 힐스보로우 카운티 주 검찰청을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차량용 블랙박스” 비디오와 관련 자료들은 기록관리인-힐스보로우 카운티 주 검찰청-의 점유를 떠나지 않도록 한다.

법원은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변호인들이 규칙4-3.6을 준수하고, 동 규칙의 문언과 정신을 위반하는 일체의 법정 밖 언급을 삼가도록 권고한다. 더 나아가 주(the State)도 마찬가지로 주검찰청, 힐스보로우 카운티 보안청, 플로리다주 법무부, 의약검사소,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주를 보조하는 다른 법집행기관들을 포함하여, 그 소속 담당자들과 직원들에게 규칙4-3.6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한다.

이상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Media Law Reporter

■ 번역: 양태 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

## 공원 내 촬영사진의 상업적 이용 금지

**1. 특정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과 정원을 사진 촬영하는 경우, 그 촬영과 사진의 사용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2. 공용토지의 소유자는 위와 같은 사진의 촬영 및 사용을 허락할 의무를 질 수도 있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에 있는 프로이센시대의 성과 정원을 관리하는 공공재단이 해당 성과 정원에 대한 상업적 목적의 사진촬영과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허락할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 2010년 12월 17일자 판결 - VZR 45/10 (항소법원: OLG Brandenburg)

관련조문: 민법 제1004조 제1항

##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와의 계약(Staatsvertrag, StV)을 통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 소재하는 프로이센시대의 성과 정원을 관리하는 공공재단이다. 이 재단은 양도받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역사적·문화적·기념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보호하고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 공공재단은 Sanssouci, Cecilienhof, Rheinsberg 공원 및 성, Charlottenburg 성, Grunewald Jagdschloss, Pfaueninsel 등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 150개 이상의 역사적인 건축물과 약 800 헥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건축물과 정원 중 대부분이 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

지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피고는 주로 언론사와 같은 제3자의 위탁에 의해 활동하는 사진작가이지만, 그 외에도 자신의 사진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전체 사진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판매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안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조각품 그리고 역사적 건축물의 모습 등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본 사안에서 얻지 못한) 원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사진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문화재 사진이 관리시설 외의 비공개 장소나 사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촬영된 경우 이러한 사진의 촬영, 사용 또는 공개적 배포를 금지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사진의 수와 그에 따라 얻은 수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미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의무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ZUM 2009 S. 430). 반면,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GRUR 2010 S. 927). 항소법원에 의해 허용된 상고심에서는 지방법원 판단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 판단이유

### I.

항소법원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문화재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었으나, 반면 특정 물건의 순수한 촬영은 이후 제기하는 사진의 사용과 마찬가지로 소유권 침해가 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유재산과 달리 원고는 자신의 주거권을 근거로 자신의 토지에 대한 접근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사진촬영의 허가

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내걸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세계적 문화유적지에 대한 공익성은 오히려 다양한 표현을 요구하는 만큼 원고의 독점적인 관리권이 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TV화면을 녹화하기 위해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때, 여기에서는 그러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계약상 그리고 원고에 의해 제시된 공원관리 규정에 따른 요구가 공원의 순수한 입장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의사표시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다.

## II.

상고신청은 허용된다. 상고이유가 정보공개청구와 손해배상의무에 대한 확인에 대한 논의 없이 오로지 부작위청구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고심은 특별히 규정상 민사소송법 제551조 제3조 1문 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청구권의 병합이 요구된다(BGHZ 22 S. 272 [278]; BGH, NJW 1991 S. 1683 [1684]; MuenchKomm-ZPO/Wenzel, 3. Aufl., § 551 Rdn. 20). 항소법원이 부작위청구권에 근거 없음을 이유로 곧바로 이외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추론하였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청구권의 병합이 문제되지 않는다.

## III.

상고에서도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1. 항소법원에 의해 제기된 논거에 의하면 원고에 의해 주장된 부작위청구권은 부인될 수 없다. 원고가 관리하는 공원시설과 정원이 항소법원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속하는 경우, 원고는 민법 제1004조 제1항 2문에 의해, 원고의 관리 하에 있는 토지 내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a) 이러한 사진들의 사용은 결국 항소법원의 판단과 달리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

aa) 타인 토지 특히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사진 촬영하는 것이 해당 물건을 접촉하거나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토지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다.

bb) 토지소유권은 소유권자가 건립한 건축물, 그가 조성한 정원시설 그리고 공원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사진의 촬영과 사용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

b)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정원을 허가 없이 촬영한 사진과 그러한 사진의 사용이 곧바로 소유권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BGHZ 150 S. 6 [9 f.] = AfP 2002 S. 219). 건축물이나 정원이 그 존재하는 토지와 다른 위치에서 촬영되고 이러한 사진이 사용된 경우에는 침해로 볼 수 없다(BGH, AfP 1989 S. 660 = NJW 1989 S. 2251 [2252]; AfP 2003 S. 543 = NJW 2004 S. 594 [595]; OLG Duesseldorf, AfP 1991 S. 424 [425]; OLG Koeln, AfP 2003 S. 447 = NJW 2004 S. 619 f.; LG Freiburg, NJW-RR 1986 S. 400 [401]; LG Waldshut-Tiengen, AfP 2000 S. 101 = ZMR 2000 S. 522 [524]). 이러한 점을 연방대법원은 저작권법 제59조의 병행가치에 근거를 두었다. 저작권법상의 예외는 소유권에 있어

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c) 본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이나 정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곳에서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고 그것이 존재하는 토지에서 촬영된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정원이 촬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출입을 허용해 주고 또한 어떠한 조건 하에 이것이 허용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 판단은 민법 제903조에 의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출입을 완전히 허용하거나 완전히 거부하도록 강요당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진촬영과 그러한 사진의 사용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지시킬 수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이러한 권한을 판례를 통해 계속해서 인정해 왔다 (BGHZ 44 S. 288 [295]; AfP 1989 S. 660 = NJW 1989 S. 2251 [2252]; BGHZ 165 S. 62 [70] = AfP 2006 S. 56).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OLG Koeln, AfP 2003 S. 447 = NJW 2004 S. 619 [620]; LG Freiburg, NJW-RR 1986 S. 400 [401]; Erman/Hefermehr, BGB, 10. Aufl., §1004 Rdn. 13; RGRK/Pikart, BGB, 12. Aufl., §1004 Rdn. 144; Soergel/Muehl, BGB 12. Aufl., §1004 Rdn. 71; Prengel, Bildzitate, S. 214 ff.; KG, OLGE 20 S. 402 [403])과 이를 비판하는 견해(Soergel/Muench, BGB, 13. Aufl., §1004 Rdn. 62; Staudinger/Gursky, BGB, 2006, §1004 Rdn. 80; Dreier, in: Dreier/Schulze, UrhG, 3. Aufl., §59 Rdn. 14, S. 938; Kuebler, in: FS Baur 1981 S. 51 [61 f.]; Lehment, in: FS Raue, 2006, S. 515 [520 f.]; Loehr, WRP 1975 S. 523 [524]; Schmieder, NJW 1975 S. 1164; MuenchKomm-BGB/Medicus, 4. Aufl., §1004 Rdn. 32; Beater,

JZ 1998 S. 1101 [1106])가 있다.

d) 이러한 판례와 다른 논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aa) 판례가 민법상의 소유권규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물건에 대한 초상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과 무체재산권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사진을 제작하고 사용하는 독점적 권한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정원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 한해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 여기서 소유권 외에 발생하는 그 밖의 독립적인 권리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사용권한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토지소유권 자체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과실에는 민법 제99조 제3항에 따라 영화촬영 세트장으로 성을 사용하기 위한 임대수익과 마찬가지로 토지 위의 건축물과 정원의 사진 이용도 여기에 포함된다(Prengel, Bildzitate, S. 217 f.). 토지의 위치와 활용 측면에서 볼 때 사진들이 공공용지나 다른 토지가 아닌 오로지 토지소유자의 전용구역에서 촬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러한 사진의 독점적 사용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에 해당한다.

bb) 항소법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작품에 있어 그 복제 및 배포권은 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주어진다(저작권법 제16조·17조).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은 상호 연관성이 없고 서로 병존한다(BGHZ 129 S. 66 [70]). 따라서 소유권자의 권한은 그 행사에 있어 존재하는 저작권이 침해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을 받게 된다(BGHZ 33 S. 1 [15]; Prengel, Bildzitate, S. 205 f.). 처음부터 저작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작품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상의 관점에서 소유

권자에 의한 물건 외관의 사용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이 존재한다.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문화재에 대한 타인의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cc) 원고의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과 정원의 사진이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법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사진들은 토지소유자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귀속이 설사 저작권자가 토지 위의 건축물과 정원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러한 침해가 토지에 대한 손상(훼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훼손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는 경우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BGH, NJW 2003 S. 3702; NJW-RR 2006 S. 1378; OLG Dresden, NJW 2005 S. 1871). 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과 정원의 사진을 허가 없이 촬영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 허가 없이 촬영한 사진을 허가 없이 이용함에 따라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는데다 토지소유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제3자에 의한 사진의 사용을 토지소유권자가 아닌 저작권자가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이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e) 원고의 사용권이, 상고이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공원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지 여부, 이러한 공원시설이 빈틈없이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여부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언급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사진이 공개된 공간이나 토지 밖의 다른 곳에서 촬영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진의 사용을 저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공원시설은 항소법원이 당연히 인정한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장소는 아니다. 이러한 공원시설의 사실적 자유로운 출입은 원고의 결정에 근거하며, 원고는 해당시설을 기반으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와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도 있다.

aa) 원고에게 있어서 공익에 기초하는 재단이라는 상황이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bb) 원고는 공공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과 관계된 모든 권리를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Maunz/Duerig/Papier, GG, Art. 14 Rdn. 212; BVerfGE 98 S. 17 [47]). 그렇지만 원고가 공공의 임무를 인식하는 경우 동시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지에서도 민법 제903조와 제1004조에 의해 공법상의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BGHZ 33 S. 230 [231 f.]; BGHZ 153 S. 93 [98]; Palandt/Bassenge, BGB, 70. Aufl., §903 Rdn.1). 이러한 상황이 본 사안에도 존재한다. StV 제2조 제1항과 정관 제1조에 의하면 원고는 특히 자신에게 양도된 문화재를 보호하고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문화재가 학문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cc) 이러한 의무나 관련 법 규정으로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공원시설 내에서 피고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반대의견으로는 Ernst, ZUM 2009 S. 434 f.).

dd) 원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가 다른 공용도로와 공원처럼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중의 관심을 받고 활용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목적상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기념비와 문화재로 볼 수 있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StV 제2조에서 이러한 목적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해당 토지에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할지 여부와 어떠한 조건하에 허용될지 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ee) 국가계약에 있어 두 개의 주는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대지를 결코 무제한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공공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지는 않았다. 이들 주는 오히려 원고의 대지를 국가계약을 통해 설정된 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한편으로 해당 대지를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나 예술사적 그리고 문화재 보호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공익 특히 학문적·교육적으로 문화재들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원고가 자신에 의해 관리하는 대지의 입장을 전적으로 제한 없이 허용한다든지 특히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입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자신에게 양도된 문화재 관리를 StV 제2조 제1항과 약관 제1조에 의해 계획·준비하여 상이한 목표치에 맞게 부응하며 실효성있는 일치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방문자와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참가를 허용해야 할 목적을 갖기보다는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이 원고가 일반인들에 의한 박물관으로서 문화재를 기념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정관 제2조 제2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f) 이러한 점들은 공원시설들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들은 우선 문화재로서 보존 및 보호되어야 한다. StV 제2조 제2항 4문과 약관 제2조 제2항에서

는 원고가 공내 정원과 공원시설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의무 범위 내에서 휴양지로서의 이용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관 제2조 제3항 1문에 의하면 공내 정원과 공원시설의 이용을 위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두 규정은 해당 대지에 입장할 수 있는 공공의 정신적인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내 정원과 공원시설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2조 제3항 1문에서 유료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원고는 약관 제2조 제3항 2문에 의거하여 입장자율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StV 제2조 제6항에서는 성과 공공용지의 위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휴양목적으로 공공용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선 이와 같은 이용은 그 내용상 유적지 보존을 위한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StV 제2조 제6항 34문에 의하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g) 상업적 이용을 위한 사진촬영은 국가계약으로 공익에 부응하는 측면의 제한을 넘어선 특별한 사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고에 의해 수인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BGHZ 33 S. 230 [232]). 원고는 기본법 제3조의 관점에서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 일정 요금을 징수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사진촬영을 허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넘어 원고에게 영업상의 촬영을 허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aa) 항소법원이 언급한 바와 달리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문화재가 UNESCO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문화적·자연적 유산의 보호를 위한 합의문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UNESCO의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

되었다 해서 해당 국가가 국민에게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합의문 제4조에 의해 UNESCO가 해당 국가로 하여금 영토 내 존재하는 문화재를 파악하고 보호하도록 하면서 합의문 제19조에 의거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 국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정과 존경심을 강화시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건축물과 해당 시설의 사진 촬영을 위해 토지 내 입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권리를 이러한 사진의 이용에 제한시키는 것은 아니다.

bb) 피고의 견해와 달리 원고의 동의 없는 공원시설 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영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진작가로서 기본법 제5조의 보호를 받느냐는 의미가 없다(OLG Muenchen, OLGZ 1985 S. 466 [469] = AfP 1985 S. 222; OLG Frankfurt, OLGR 2009 S. 334 [335]).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침해에 대한 방어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객관적인 원칙규범으로서(BVerfGE 20 S. 162 [175]; 117 S. 244 [258 f.] = AfP 2007 S. 110) 공동사용의 한계를 넘어 공용물에 대한 접근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적절한 가격인하와 면제를 통해 공공의 알권리에 상응한 관점에서 고려하면 된다.

cc)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 침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BGH, NJW 2007 S. 432, Rdn. 9). 그 외 필요한 재발위험성 역시 존재한다. 피고가 사진을 위임자에게 넘긴다든지 인터넷 사진포털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1회의 위법한 사용만 가지고도 침해를 반복할 수 있는 사실상의 개연성이 충분하다(BGH, NJW 2004 S. 1035 [1036]).

e) 원고는 자신이 관리하는 문화재의 소유권자로서 유효한 부작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따라서 원고에 의해 주장된 손해배상 의무의 확인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의 부존재를 이유로 배제될 수는 없다.

#### IV.

촬영된 대지에 대한 원고 소유권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그 밖의 전제조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이 바로 판단에 이를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그 외의 절차를 위해 재판부는 아래 사항에 대해 지적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에 대한 원고 소유권을 전체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StV 제2조 제2항 1문에 의해 해당 토지가 원고에게 법률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료사용을 위해 양도되었다. 원고가 자신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한 목록은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입증을 위해 충분치 못하다. 따라서 원고는 부작위 의무가 미치는 모든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자신의 소유권 발생 근거가 되는 토지등기부 또는 편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소유권입증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경우 사용계약의 체결 및 내용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BGHZ 21 S. 319 [333]).

3. 부작위 청구가 사적 목적으로 협소한 범위 내에서 촬영된 사진에 대해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결여된다(ZPO 제253조 제2항 2호). 이러한 제한을 통해 특정 행위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수소법원(Prozessgericht)

의 판단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으며(BGHZ 156 S. 1 [8 f.] = AfP 2003 S. 545; BGHZ 158 S. 174 [186] = DB 2004 S. 1555), 이것은 집행법원(Vollstreckungsgericht)에게 위임된다. 어쨌든 사적 목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피고가 재판부에서 주장한 내용과 달리 오로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해당된다는 점은 충분히 표명되었다. 추가적인 제한은 필요치 않다.

#### 4. 원고의 부작위청구는 내용상 인정된다.

a) 제소이유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맞춰 부작위판단은 오로지 원고의 토지 내에서 원고의 허락 없이 촬영된 사진의 이용에만 적용된다.

b) 청구에서는 사진이 촬영된 시점과 무관한 사진의 이용과 1994년 8월 23일 원고의 시설에 대한 국가계약 체결 전 시점에 촬영된 사진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원고가 이전 소유권자의 권리 침해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된 바도 없으며 명확하지도 않다. 이 점에서 토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국가계약체결에서부터 소유권의 실질적 양도시점까지 존재하는 모든 청구권을 본건의 재단에게 양도시켜야 하는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BGH, NJW 2009 S. 847 [848]).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포괄적인 양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5. 저작권침해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추정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청구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BGB 제242조)에 따라 가해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배상을 위한 자신의 청구권의 존재 또는 범위에 대해 명확해야 하며 이러한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해자와 달리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BGHZ 95 S. 274 [278 f.]; NJW 2010 S. 2354 [2357 f.], Rdn. 43). 이러한 기본원칙은 물건의 외관 사진의 사용을 위한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6. 이미 발생하고 또 장차 발생할 손해보상의 확인에 있어 갖는 원고의 이익은 단계소송(Stufenklage)의 가능성에 의해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BGH, NJW 2003 S. 3274 [3275]; Thomas/Putzp/Reichold, ZPO, 31. Aufl., §256 Rdn. 14). 이에 필요한 피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원고의 공내 정원과 정원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의 관점에서 이를 방문하는 자의 사용권 범위가 지금까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출처: AfP 02-2011, 158-162면

■ 번역: 남기연(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영국 사례 1]

범죄 관계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언론사가 그 이야기를 기사에 실기 위해 범죄 관계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청인 : Donna Fleming

언론사 : Pick Me Up

인용된 조항 : 1조 정확성 (Accuracy), 5조 슬픔과 충격에 대한 자극 (Intrusion into grief and shock), 16조 기사정보를 위한 범죄관계자 매수 (Payment to criminals)

#### 개요

신청인 Donna Fleming은 언론불만처리위원회 (PCC)에 2010년 7월 8일 Pick Me Up이 게재한 보도 중 “Forensics tore my flat apart”라는 제목의 보도가 윤리강령 16조 기사정보를 위한 범죄 관계인 매수 (payment to criminals)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 신청내용

해당 기사는 Scott Riley가 신청인의 어머니를 살해하던 날 밤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Emma Cooke를 통해서 기사화 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Emma

Cooke와 Scott Riley는 하룻밤의 관계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 사이라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기사에서 신청인의 어머니의 죽음으로 언론사와 Emma Cooke가 얻을 경제적 이익외의 공익적인 것들은 찾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Emma Cooke을 윤리강령 16조의 범위에 들어가는 관계인(associate)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지 하룻밤을 함께 보낸 경우에는 관계인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며, Emma Cooke 역시 피해자로서 그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 판단

표현의 자유는 범죄의 가담정도나 관계 정도 여부를 불문하고 개개인이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잡지사나 신문사 역시 그들의 이야기를 출간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인의 윤리강령에 따르면, 신문사나 잡지사가 범죄 관계자에게 정보를 위해 사례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윤리강령 16조 (Payment to criminals)는 자백하거나 죄가 확정된 범죄자 또는 관계인(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사례를 지급하여 특정한 범죄를 노출시키는 것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PCC는 Cooke과 Riley의 관계에서 일방의 당사자

를 관계자라 할 만한 사이였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들 사이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는 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바로 직후의 Riley와 Cooke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위원회의 견해로는 언론사가 그 사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해서 이용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Cooke는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얘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언론사가 그 경험을 기사화하기 위해 사례를 지급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 [영국 사례 2]

**병원의 병동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인터뷰를 할 경우에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병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 Malcolm Stamp

언론사: Essex Chronicle

인용된 조항 : 8조 병원에 관한, 병원에서 작성된 보도 (hospital)

### 개요

Mid Essex 병원의 경영자인 Malcom Stamp는 2011년 2월 3일 Essex Chronicle이 ‘범죄의 희생자, 의식불명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하였다며 불만을 제기하였고, 인용되었다.

### 사실관계

기사는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상황

의 진전에 대해서 보도했다. 이 보도는 병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과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기사는 피해자 부모님의 직장을 찾아간 적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환자나 그의 가족으로부터는 어떠한 불만도 접수하지 않았다.

###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기자가 병원이나 병원의 직원에게 자신의 직업이 기자라는 것, 그리고 병원 방문 목적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원측 규정에 따르면 병약한 환자에 대한 보도는 반드시 병원의 홍보팀을 통해야 하며, 사전 협의를 거쳐 보도되어야 한다. 방문객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는 여성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기자에 대해 물어봤으나,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대답했으며,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필기도구나 녹음기 등을 보지 못했다). 또한, 병동의 선임간호사는 피해자가 기자에게 말한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병원의 직원이 그 기사에 대해서 알렸을 때 크게 화를 냈었다고 진술했다.

### 언론사의 주장

언론사는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술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폐해에 대한 기사를 쓰는 것에 협조적이었고, 기사는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초대되어 피해자 병문안을 간 것이기 때문에 언론사는 환자가 취재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을 법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간호사에게도 자신의 소속과 기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의문이 드는 점은 병원 직원인 한 진술이다. 그가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카메라(사용하지 않았다)와 필기도구를 들고 가는 것을 간호사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명의 간호사는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함께 있었고, 다

른 간호사 한 명은 기사가 어떤 형식으로 보도되어야 하는지 조언까지 해주었다. 이런 정황들은 언론사가 병원의 홍보팀과 협력을 통하여 기사를 작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판단

위원회는 이 기사와 관련하여 피해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불만도 접수하지 않았다. 신청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뷰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부모님의 요청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기사의 내용은 일반적 사항이더라도 사건의 중요성과 대중의 관심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윤리강령 8조는 “기자가 병원과 같이 사적인 장소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는 신분을 밝히고 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인터뷰가 이루어진 장소는 뇌졸중 전문병동으로 환자가 간섭과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다. 비록, 위원회 역시 병원 방문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에 이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자의 행동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에 부정의 여지가 없다.

윤리강령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가 감수해야할 부분이다. 위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사는 환자가 치료를 하는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신분에 관한 애매 모호한 점들은 없앨 수 있었고, 책임자에게 촬영이나 인터뷰에 필요한 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에 먼저 연락을 하고 취재를 하러 갔다면 이러한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취재 대상의 건강이 위급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사가 신분을 병원에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기자가 병원의 직원과 대화했던 장소는 사적인 공간이었다. 윤리강령 8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안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기 전에 벌써 허락을 받았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조차 행하지 않았던 기자가 병원의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명확히 밝혔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는 이 기사를 얻게 된 경로마저 정당화하기에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한다.

## [호주 사례]

**재판의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피의자의 직장과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1497

신청인: McGregor

언론사: Geelong Adv

## 결정내용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개요

2011년 6월 1일 호주 언론평의회(Australian Press Council)는 2010년 12월 10일 Geelong Advertiser가 게재한 기사에 대하여 McGregor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심사하였다. 기사에는 신청인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의 공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 신청인의 주장

McGregor는 그의 직장, 성을 포함한 이름, 나이,

그리고 주소뿐만 아니라 그가 레게머리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그가 의학적 치료와 금전적 이익이 관계된 민감한 결정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의 직장에서 직원들이 사적인 위협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스태프들의 이름이 제3자에게 밝혀지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그 기사로 인하여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McGregor는 “그가 주먹을 들어 경관을 향해 계속 휘둘렀고, 경관은 그를 향해 한 번의 주먹을 휘둘렀다”라는 검찰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주장했다.

### 언론사의 주장

언론사는 법정에 관한 기사를 게재할 때에는 그 정확성을 위하여 피고인의 이름, 나이, 주소, 직장 등이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유죄판결에 대한 보도 시,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보도하였을 때 피고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에는 경찰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고, 이후에 신청인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명확히 게재했다. 또, 레게머리(dreadlocked)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신청인을 경멸적으로 비유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결정 이유

평의회는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확인하였는데, 목격자 중 한 사람이 기사에 인용된 상황과 흡사한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검사에 의해 작성된 조서에서도 흡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평의회는 유죄판결 기사에서 피의자의 직장을 밝힌 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청인의 고용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

는 신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평의회는 신청인의 머리스타일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 역시 불공정한 보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기사 내의 인용부분 역시 진술이 법정에서 문서로 제출되었거나 언급된 적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 [뉴질랜드 사례]

**과거 해당 언론사에서 반대 의견을 수차례 실었다 하더라도, 하나의 기사 내에서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면 반론보도를 해야한다.**

사건번호 : 2188

신청인 : John Bates

언론사 : Sunday Star-Times

### 개요

John Bates는 Sunday Star-Times가 지난 4월 24일에 게재한 기사의 제목과 부제목이 공평성, 정확성, 균형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2명의 위원은 그의 의견에 반대했다.

### 사건 배경

기사는 “나쁜 땅 뉴질랜드; 범죄자에 딱 맞는 영토 (Badlands NZ; A Land Fit for Criminals)”라는 제목을 가진 책의 개요를 서술했다. 이 책의 저자인 David Fraser는 뉴질랜드 정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 반면, 범죄자에게만 이로운 법률과 규칙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였다.

첫 페이지에 나간 기사에는 저자의 견해가 요약되

어 있었고, 몇 차례의 인용과 통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폭력적인 나라 뉴질랜드, 그리고 범죄를 촉진하는 법 시스템”이란 소재목이 두꺼운 서체로 인쇄되어 있었다.

### 신청인의 의견

Bates는 2011년 5월 2일 이메일을 보내 신문에 항의했지만, 5월 23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언론평의회(Press Council)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신청인은 저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학자이지만, 기사에 언급된 통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나라마다 범죄에 대한 기록과 보고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통계는 의미가 없다는 취지이다.

특히 ‘법 시스템이 범죄를 촉진시킨다’라는 제목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며, 기사를 접한 사람들이 분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은 그 책에 관한 기사는 Sensible Sentencing Trust(더 높은 형량을 판결하게 하기 위한 뉴질랜드의 로비그룹)를 위한 선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사는 저자의 의견이 사실인 것과 같이 기술하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독자로서는 저자에 대한 의견이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 언론사 주장

편집자는 기사가 언론사의 견해가 아니라 저자의 견해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언론사가 또 다른 전문가인 Kim Workman의 의견을 실었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Workman의 의견은 정기적으로 기사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의 저자인 David Fraser는 국가범죄정보원의 분석

가이며, 영국 법원의 보호감찰부에서 25년간 일하면서 법학 분야의 명성을 쌓아왔으므로, 그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과 결정

언론평의회는 신청인이 제기했던 불만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는다. 부제목은 그 책의 표지 바로 아래에 실려 있으므로 당연히 저자의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제목은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라 할 수 있으며, ‘법 시스템이 범죄를 촉진시킨다’라는 문구에 표시된 인용 표시는 이것이 언론사의 의견이 아니라 저자의 의견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평의회 규정을 따르자면, 그 기사가 논평인지 의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기사의 일부는 책에 대한 서평으로, 다른 일부는 저자의 의견이나 책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 독자에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사가 단지 저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다. 광범위한 인용부호 사용으로 독자의 혼란을 덜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의 저자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저명한 이의 의견을 실어 보도의 균형을 맞추어야 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에 따라 평의회는 반론의 내용이 없어 독자들이 왜곡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한다.

저자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짧게 만들어진 책의 소개에 불과할지라도 독자들에게 저자의 명성이나 통계, 견해에 대해서 균형성 있는 비판을 제시하여야 했다.

언론사가 저자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실을 때에는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평의회는 언론사측에서 Kim Workman의 의견을 과거 수차례 실었었다 하더라도, 평의회 원칙에 대한 규정 중 “기사에서 충돌하는 의견이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면 이들은 반드시 같이 실려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평의회는 해당 기사가 균형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인용한다.



## 언론법제관련문헌

- 권현영 (2011. 9. 20).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대한 ISP의 책임범위 및 한계 : 최근 소위 섯다운 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김기태 (2011. 8. 17). 미디어교육으로서의 NIE 활성화 방안. 한국미디어교육학회 ·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연구분과 공동주최, '제15회 미디어교육전국대회 - 미디어교육으로서의 NIE 활성화를 위한 이론과 현장의 만남' 세미나 발제문.
- 김도훈 (2011. 9. 2). 스마트TV 도입에 따른 네트워크 정책이슈. 정보통신정책학회 · 한국방송학회 · 한국통신학회 공동주최, '스마트TV: 기술, 미디어 및 정책' 심포지엄 발제문.
- 김연식 (2011). 방송저널리스트의 PD저널리즘 인식 연구. 『언론과학연구』, 11권 2호, 69~96.
- 김영주 (2011. 7. 19). 한국 신문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 뉴스 미디어 지평의 확대 혹은 축소.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 II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김정탁 (2011. 8. 25). 현행 피해구제제도문의 크기 · 위치 분석과 발전적 운영을 위한 제언. 언론중재위원회주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정기세미나 발제문.
- 김창숙 · 김용주 (2011). 진보적 성향의 판결에 대한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의 뉴스 구성 비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21호, 165~205.
- 김철우 (2011. 9. 6). 군 비상사태 시 취재 및 보도 발전 방안.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전시-비상상황에서의 취재보도' 토론회 발제문.
- 김태현 (2011. 8. 25). 통계 데이터로 보는 소셜 네트워크 이슈 흐름. 미디어오늘주최, '미디어 빅뱅 이후 언론활용 전략' 컨퍼런스 발제문.
- 김형일 (2011. 7. 22). 한국 방송의 현주소 : 비판적 방송저널리즘의 위기와 전망. 한국PD연합회 · 한국 언론정보학회 공동주최, '한국방송의 현주소' 세미나 발제문.
- 류정호 · 이동훈 (2011). 소셜 미디어로서 마이크로 블로그 공론장의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09~330.
- 마동훈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방송 시청자의 형성과 성격: 1962년~1964년의 국민, 공민, 그리고 소비자의 경험.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문재완 (2011. 9. 20).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 세미나 발제문.
- 박경신 (2011. 9. 20). 인격과 명예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헌법적 한계.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박선희 (2011. 7. 19). 한국정치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정치 역설.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Ⅱ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박중순 (2011. 8. 25). 손해배상소정의 활성화가 언론소송에 미치는 영향. 언론중재위원회주최, ‘언론조정중재제도의 현황 및 발전적 운영 방안’ 정기세미나 발제문.
- 박중현 (2011. 9. 20).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최근의 소위 섹스다운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박준석 (201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창작과 권리』, 통권 63호, 106~133.
- 박창희 (2011. 9. 2). 스마트TV의 수용이슈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학회 · 한국방송학회 · 한국통신학회 공동주최, ‘스마트TV : 기술, 미디어 및 정책’ 심포지엄 발제문.
- 백미숙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교육, 계몽적 역할의 역사적 구성과 내용규제: 방송가요, 방송언어, 방송광고를 중심으로, 1963~1987. 한국언론학회주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백선기 · 이옥기 (2011. 9. 17).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양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신문의 내용 분석과 보도양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주최, ‘제17회 한 · 일 국제심포지엄 - 한일 양국의 재난보도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안’ 발제문.
- 신영호 (2011). ‘종속형’ 인터넷 신문기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용을 통해 본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해석론 및 대법원 판례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 52권 3호, 137~165.
- 양재규 (2011. 7). 법을 알고 기사쓰기 72 - 범죄 발생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7호, 94~97.
- 양재규 (2011. 8). 법을 알고 기사쓰기 73 - 주인 승낙 없이 들어갔다면 주저 침입에 해당. 『신문과 방송』, 통권 488호, 86~89.
- 양재규 (2011. 9). 법을 알고 기사쓰기 - 사진 촬영 때 주최 측 말보다 당사자 동의의 더 중요. 『신문과 방송』, 통권 489호, 82~85.
- 원용진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50년과 대중문화: 텔레비전과 대중음악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Ⅲ -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윤주성 · 이오현 (2011). 지방정부의 지역언론 통제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358~381.
- 윤지희 · 이건호 (2011). 한국 5개 종합일간지 오보 정정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27~53.
- 이연 · 송중현 (2011. 9. 17). 한국에 있어서 재난방송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 공영방송, 스마트폰, 인터넷, DMB 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 공동주최, '제17회 한 · 일 국제심포지엄 - 한일 양국의 재난보도 시스템의 문제와 발전방안' 발제문.
- 이영주 (2011. 8. 30) 자율심의 체제에서 운용되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주최, '광고의 자유와 광고심의' 세미나 발제문.
- 이희은 (2011). 텔레비전 버라이어티쇼의 사적인 이야기 서술. 『언론과 사회』, 19권 2호, 2~48.
- 임영호 · 김은미 (2011. 7. 19). 소셜 미디어의 등장과 언론학의 과제: 정보관계망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임정수 (2011. 7. 19).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 진화와 콘텐츠 생산양식.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 - 한국 사회의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세미나 발제문.
- 임종섭 (2011). 온라인 뉴스 홈페이지 머리글 기사의 차별화와 표준화 분석. 『한국언론학보』, 55권 3호, 82~102.
- 장철준 (2011. 8. 30). 정치광고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한국언론법학회주최, '광고의 자유와 광고심의' 세미나 발제문.
- 조소영 (2011. 9. 20). 인터넷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학술세미나 발제문.
- 최이숙 (2011. 8. 30). TV 방송 50년의 자화상: 한국 TV 저널리즘의 변천.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I -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최윤정 · 이종혁 (2011).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기사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54~75.
- 최진순 (2011. 8. 25). 콘텐츠 플랫폼의 분화와 주류 언론의 위기. 미디어오늘주최, '미디어 빅뱅 이후 언론 활용 전략' 컨퍼런스 발제문.
- 한진만 (2011. 8. 30). 한국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편성 추이와 특성. 한국언론학회주최, '기획연구III -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 50년: 과거, 현재, 미래' 세미나 발제문.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사무처 및 서울중재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팩스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 - 0020~1   팩스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 - 0360~1   팩스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 - 0778~9   팩스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 - 9022, 9027   팩스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 - 2878~9   팩스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 - 8081, 8083   팩스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 - 0010, 0981   팩스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 - 1780, 1787   팩스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 - 3328, 3352   팩스 064) 726 - 3201